

2018~2019

사회복지대학원 요람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건학이념

홍익인간의 기본이념에 바탕을 두고, 대한민국의 교육정신을 준봉하여 인류문화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고 아울러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시민으로서 품격을 도야함으로써 조국번영의 역군이 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이처럼 홍익인간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인 동시에 본 대학교 건학의 근본이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교육방침을 정하고 있다.

- 첫째. 신체의 건전한 발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르며, 아울러 견인 불발의 정신을 가지게 한다.
- 둘째. 민족적 독립과 자존의 기풍, 그리고 국제적 신의 협조의 정신이 건전한 국민의 품성을 도야한다.
- 셋째. 실천궁행과 근로역작의 정신을 강조하고 충실한 책임감과 상호애조의 공동덕심을 발휘케 한다.
- 넷째. 고유문화를 순화양양하고 과학과 기술의 독자적 창의로써 인류문화에 공헌함을 기한다.
- 다섯째. 심미적 정서를 함양하여 숭고한 예술을 감상, 창작하고 자연 의미를 즐기며 여유의 시간을 유효하게 사용하여 화해 명량한 생활을 하게 한다.

그리고 본 대학교는 교시로 자유·진리·정의를 받들고 있다. 학생은 자유의 전당인 학교에 들어와서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뜻이다.

대학이념

홍익인간의 교육이념 아래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교육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자주정신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품격을 함양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복지사회 실현 및 인류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

교육목적

자유·진리·정의의 교시 아래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자유로이 탐구하고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길러, 고도 산업사회 및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고 국가 및 인류사회의 발전과 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목표

1. 물질만능 풍조와 인간소외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과 문화를 구현할 수 있는 인간존중의 가치관을 확립한다.
2. 사회와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민족의 자존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자세를 기른다.
3.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품성을 기른다.
4.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고 환경 친화적 태도를 기른다.
5. 세계화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국제적 식견과 외국어 구사능력을 기른다.
6.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정보처리 능력을 기른다.
7. 고도 산업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게 한다.
8. 개방적인 산학협동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차 례

I. 연 혁	1
1. 동아대학교 역사	3
2. 사회복지대학원 연혁	25
II. 기 구	29
1. 동아대학교 기구표	31
2. 사회복지대학원 기구	32
III. 학칙 및 규정	33
1. 대학원 학칙	35
2.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	66
3.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규정	70
4. 대학원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72
5.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규정	81
6.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규정	85
7. 대학원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96
8.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	98
9. 대학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101
IV. 교과과정 및 교과목 개요	103
1. 교과목 이수학점 체제	105
2. 교과과정	105
3. 교과목 해설	110
V. 학위논문 작성 지침	119
1. 연구내용	121
2. 표현 및 구성	121
3. 논문의 체제	121
4. 논문내용 작성상의 유의사항	122

5. 인용 및 참고문헌 기재시 유의사항	124
6. 논문의 표지 및 초록 작성 예시	133
VI. 부 록	147
1. 학위수여자 현황	149
2. 학과 및 전공 영문명	150

I. 연혁

1. 동아대학교 약사
2. 사회복지대학원 연혁

1. 동아대학교 약사

자유·진리·정의의 교시로 1946년 11월 1일에 개교한 동아대학교는 1947년 8월 석당 정재환 선생을 중심으로 한 동아대학 설립 기성회가 부산시 수정동 1의 21번지에서 재단법인 동아학숙의 설립허가와 동아대학의 설립인가를 문교부에 신청하여 동년 12월 30일에 재단법인 설립허가 및 대학설립인가를 받아 법학부와 문리학부 등 2학부 5학과의 4년제 대학으로 정식 개교하였으며, 초대 이사장에는 정재환 선생이, 초대 학장에는 정기원 선생이 각각 취임하였다.

해방 직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홍익인간’의 기본이념을 건학이념으로 하여 자유·진리·정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민족 백년대계의 가치를 우뚝 세웠다.

1949년 4월 교사를 부산시 범1동 365번지로 옮기고, 7월 20일에는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1950년 6·25동란으로 교사를 다시 동대신동 3가 1번지로 이전하여 전시 가교사에서 수업을 속행하는 한편, 전시 문화·과학강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1953년에 정재환 학장의 취임으로 보다 발전적 계기가 마련되었다. 1954년에 농학부가 1955년에 공학부가 증설되고, 1956년에 임시 2부 대학의 설립과 1958년에는 대학원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계속해서 본관을 비롯한 중요건물의 준공을 보게 되어 구덕산록에 백악의 대전당을 구축하는데 확고한 기반을 닦았다.

개교 후 10년간은 창설기적 건설단계에 불과했으나 1959년 종합대학교의 승격과 정재환 초대 총장의 취임 이후, 외곽시설의 확충과 내적 충실을 기하여 교세는 확장 일로를 걸었다.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등 각종 부속기관의 건물이 준공 또는 증축되고 각종 부설 연구소의 설치인가를 받아 명실상부한 사학의 대전당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1956년 이후 10년간은 연구분위기의 기반 조성 및 내실 있는 성장기로서 기록되어지며 1967년 이후 실질적인 발전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1968년 제1본관의 준공을 보았고, 1969년에 경영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고 가정관이 준공되었으며, 1970년에 대학원 건물을 신축하였다.

1973년에 교육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았고, 제2본관 및 공과대학 별관을 준공하였다. 1971년부터 3년간에 사회보장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중요 연구소가 대거 설치인가되었다.

1975년 6월 26일 설립자이자 이사장이며 초대 총장이었던 석당 정재환 박사가 명예 총장으로 취임하고 한림 정수봉 박사가 제2대 총장에 취임하였다.

1976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명문사학의 정상을 향한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1977년 9월 대학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법경대학을 실험대학으로 개편하고, 1978년 10월에 문리과대학, 농과대학 및 공과대학을 실험대학으로 확대 승인 받음으로써 2부 대학을 제외한 전 대학을 실험대학체제로 개편하게 되었다.

1979년 4월에 사회개발연구소를 설치하고, 도시문제연구소 등 4개 연구소를 통합, 폐지하여 부설연구소를 정비하는 한편, 공과대학을 사하구 하단동 신축 제2캠퍼스로 이전하였으며, 9월에는 문리과대학을 문과대학과 이과대학으로, 법경대학을 정법대학과 상경대학으로 각각 분리하는 대학편제 개편의 인가를 받아 7개 단과대학으로 확충하게 되었다.

1980년 10월에 정법대학을 법정대학으로 대학명칭을 변경하고 전일수업제 실시에 따라 2부 대학을 폐지하여 야간강좌 개설학과로 개편하였고, 동년 11월에는 공과대학 제3호관의 준공을 보았다.

1981년 8월 29일 조성중이던 제2캠퍼스에 이과대학, 농과대학을 이전함과 동시에 제2도서관을 개관하였다.

1982년 2월 18일 중전의 어학연습실을 어학연구소로 개편하였고,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였다. 10월 5일에는 체육대학을 설치하였으며, 12월 30일에는 사하구 다대동에 야구장과 축구장 및 운동선수 합숙소가 갖추어진 종합운동장의 준공을 보아 체육동아의 터전을 다졌다.

1983년 8월 1일에 교수회관을 준공하고, 9월 8일에는 예술대학을 설치하였으며, 9월 9일에는 제2캠퍼스에 체육관의 준공을 보았다.

1984년 2월 16일에 기초과학연구소를 설치하고, 8월 29일에는 독일학연구소, 해양자원연구소 및 재료실험실을 설치하였으며, 10월 5일에는 법정대학과 상경대학을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으로 조정 개편하는 한편, 이과대학에 의예과를 신설하였다.

1985년 3월 28일에 법학연구소를 설치하고, 8월 5일에는 제1캠퍼스를 대신동캠퍼스, 제2캠퍼스를 하단캠퍼스로 캠퍼스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8월 15일에는 하단캠퍼스에 대학본부와 문과대학건물을 준공·이전하였고, 11월 1일에는 하단캠퍼스에 제1학생회관의 준공을 보았다.

1986년 4월 10일에 여학생교양실을 설치하고, 11월 6일에는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이과대학을 자연과학대학으로 대학명칭을 변경하였다.

1987년 3월 31일에 하단캠퍼스를 승학캠퍼스로, 대신동캠퍼스를 구덕캠퍼스로 캠퍼스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8월 21일에는 승학캠퍼스에 경영대학건물을 준공·이전하고, 10월 23일에는 문과대학을 인문과학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88년 8월 16일에 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을 승학캠퍼스로 이전하고,

10월 29일에는 공과대학 야간강좌 개설학과를 폐지하여 주간학과로 통합 개편하였으며, 11월 30일에는 산업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았다.

1989년 2월 27일에 제2, 3, 4대 총장을 역임한 정수봉 총장이 이임하고, 3월 1일에 신순기 제5대 총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3월 31일에는 관광레저연구소 및 생명과학연구소가 설치인가 되고 새마을연구소를 폐지하였으며, 5월 15일에는 공과대학 제4호관 및 기초과학실험실습실의 준공을 보아 국제적 수준의 공과대학으로서 그 면모를 갖추었다.

1990년 1월 19일 여학생교양실을 폐지하고, 2월 7일에는 의과대학에 산업의학연구소 및 종합실험실습실을 설치하였으며, 3월 26일에는 구덕캠퍼스에 첨단시설과 최신 의료기기를 갖춘 동아대학교 병원을 준공·개원하였다.

1991년 2월 28일에 신순기 총장이 이임하고, 3월 1일에 손병규 제6대 총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3월 9일에 경영정보교육원과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을 설치하고, 10월 22일에는 생활과학대학을 자연과학대학에서 분리 설치하고 예술대학에 기악과를 신설하였다.

1991년 12월 31일에 손병규 총장이 이임하고, 1992년 1월 24일에 이태일 제7대 총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4월 16일에는 공과대학에 생산기술연구소, 정보통신연구소 및 예술대학에 조형연구소가 설치 인가되었다.

1993년 2월 28일 이태일 총장이 이임하고, 3월 1일에 이상윤 제8대 총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3월 25일 유전공학연구소 및 인문과학대학에 인문과학연구소, 생활과학대학에 생활과학연구소, 의과대학에 임상의학연구소가 설치 인가되었다. 8월 19일에는 경기지도자연수원이 설치 인가되었다.

1994년 10월 21일에 언론홍보대학원을 설치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경영정보교육원을 경영정보연구소로 개편하였다.

1995년 1월 25일 동아대학교 병원이 동양의료원으로 승격되었고, 2월 1일 산학협력연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월 8일에는 종합문화예술공간인 석당홀과 석당갤러리를 개관하였다.

1995년 2월 28일에 이상윤 총장이 이임하고, 3월 1일에 이태일 제9대 총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6월 1일에는 경영정보연구원을 경영정보연구소로 개편하고, 9월 12일에는 한국자원개발연구소를 건설기술연구소로 개편하였으며, 10월 4일에는 농과대학을 생명자원과학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학부제 실시에 따라 생명자원과학부, 건설공학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체육학부를 설치하였으며, 의과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하였고, 12월 21일에는 인구문제연구소를 인구 및 지역발전연구소로 개편하였다.

1996년 2월 1일에 전자계산소를 종합정보센터로 개편하였고, 6월 21일에는 교육대학원 부설 중등교원연수원을 개설하였고, 10월 9일에는 진해시와 보배캠퍼스(가

칭) 구성에 따른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 24일에는 학부제 추가실시에 따라 인문학부, 한국어문학부, 외국어문학부, 자연과학부, 식품과학부, 의상섬유학부, 법학부, 사회과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관광경영 및 무역학부, 경영정보 및 통계학부, 도시조경학부, 지구환경공학부, 미술학부, 음악학부 등 16개 학부를 설치하였고, 11월 2일에는 정책과학대학원을 설치하였다.

1997년 11월 5일에 경영대학의 관광경영 및 무역학부를 국제관광통상학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1월 12일에는 국제관광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부의 지방대학 특성화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다.

1998년 3월 11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대학종합평가인정을 받았으며, 4월 22일에는 경영대학 부설 관광레저연구소를 동아대학교 부설 아·태관광연구소로 소속 및 명칭을 변경하였고, 5월 1일에는 국제관광정보센터와 동년 4월 4일에 과학기술부·한국과학재단의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선정된 지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10월 19일에는 인문과학대학 외국어문학부를 서양어문학과와 중국·일본학과,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를 정치행정학과와 사회언론광고학과 등으로 분리하였으며, 경영대학 경영정보 및 통계학부를 경영정보과학부, 공과대학 건설공학부를 토목·해양공학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9년 1월 14일에 고가 공동기자재의 사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동기기센터를 설치하였고, 2월 12일에는 윈스톱 산학협력 연구지원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산학협력관을 준공하였으며, 2월 24일에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상담 및 경영자문 등을 제공·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였다.

1999년 2월 28일에 이태일 총장이 이임하고, 3월 1일에 엄영석 제10대 총장이 취임하였다. 7월 23일에는 부산시로부터 부산테크노파크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었으며, 8월 11일에는 농업자원연구소와 유전공학연구소를 통합하여 농업생명과학연구소로, 생명과학연구소와 임상의학연구소를 통합하여 의과학연구소로 기구 개편하였으며, 8월 24일에는 정보통신연구소와 경영정보연구소를 통합하여 정보기술연구소로 기구 개편하였다.

한편 11월 1일에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11월 2일에는 동북아국제대학원을 설치하였고, 12월 21일에는 인터넷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였다.

2000년 1월 19일에 고용산재보험교육센터를 설치하였으며 5월 19일에는 법학도서관을 설치하였고, 6월 13일에는 동북아연구소를 설치하였다. 7월 18일에는 경찰법무대학원을 교육부로부터 설치인가를 받았으며 8월 8일에는 인문과학대학 한국어문학부의 한문학전공을 폐지하고 문예창작전공을 신설하였으며,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건축학부로 변경하여 건축학전공과 건축공학전공으로 각각 신설하였고 9월 26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1999년 학문분야(법학분야, 건축공학분야) 평가에서 법학부가 최우수로, 건축공학과가 우수로 선정되었으며, 9월 29일에는 고

용산재보험교육연구센터를 지식자원개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1년 2월 26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00년 학문분야(전기전자정보통신분야, 컴퓨터공학분야, 재료금속분야) 평가에서 공과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와 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가 최우수 그룹으로, 공과대학 재료금속·화학공학과와 대학원 금속공학과가 우수 그룹으로 선정되었다. 3월 1일에는 어학연구소를 언어교육원으로 개편하였으며, 7월 26일에는 인문학부의 서양어문학부를 영어영문학부와 유럽어문학부로, 미술학부를 미술학과와 디자인학부로 분리 개편과 도시조경학부를 도시계획·조경학부로 학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정보통신대학원과 예술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았다. 9월 8일에는 교육대학원의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을 공통과학교육전공으로 통합개편 및 사회교육전공을 청소년사회교육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2년 1월 30일에 구덕 제2캠퍼스에 예술대학을 준공하고 이전하였다. 2월 27일에는 동의의료원을 동아대학교 의료원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4월 29일에는 인구 및 지역발전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동북아연구소를 동아시아연구원으로 통합 개편하였으며, 첨단과학기술연구단을 설치하였다. 5월 21일에는 과학기술부·한국과학재단의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가 선정되었으며, 6월 19일에는 승학캠퍼스에 한림생활관을 준공하였다. 7월 19일에는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를 수학·신소재물리학부와 화학·생명과학부로 분리 및 생물학전공을 생명과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자원과학부를 식물생명공학과와 응용생명공학과로 분리 및 생물자원학전공을 식물유전공학전공으로, 원예과학전공을 원예식물생명공학전공으로, 응용생물학전공을 응용생물공학전공으로, 생물공학전공을 생명공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공과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에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을 신설하였고, 예술대학 디자인학부를 조형디자인학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동년 7월 31일에는 구덕캠퍼스에 예술대학 실습동이 준공되었으며, 8월 1일에는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실험실습실을 기초과학실험실습실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8월 20일에는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를 설치하였고, 9월 2일에는 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에 생명공학과를 신설하였으며, 10월 18일에는 법과대학, 동북아국제대학원, 경찰법무대학원, 사회교육원, 동아시아연구원, 지식자원개발센터가 부민캠퍼스 이전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10월 21일에는 암분자치료연구센터가 신설되었다.

2003년 1월 15일에 의과대학 종합실험실습실을 의과학실험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월 28일에는 법과대학, 동북아국제대학원, 경찰법무대학원, 사회교육원, 동아시아연구원, 지식자원개발센터를 부민캠퍼스로 이전하였다.

2003년 2월 28일에 엄영석 총장이 이임하고, 3월 1일에 최재룡 제11대 총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3월 25일에는 부민동 소재 캠퍼스를 부민캠퍼스로 명하고, 언어교육

원을 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신설하였다. 7월 14일에는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부에 영어영문학전공, 영어영문학부 야간강좌에 영어전공을 신설하였고, 공과대학 재료금속·화학공학부를 신소재·화학공학부로, 금속공학전공을 신소재공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를 기계공학과와 산업경영공학과로 분리하였으며, 경영대학 경영정보과학부의 경영정보학전공을 폐지하였고,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에 예술학과를 신설하였으며, 대학원 및 산업대학원의 도시조경학과를 도시계획·조경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정보통신대학원의 정보공학과를 컴퓨터공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예술대학원 미술학과를 아동미술학과로, 디자인학과를 조형예술학과로, 음악학과를 컴퓨터실용음악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대학교 부설 아·대관광연구소를 대학교 부설 관광·레저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대학교 부설 국제관광정보센터를 폐지하였다. 10월 17일에는 의과학연구소와 산업의학연구소를 통합하여 의과학연구원을 설치하였으며, 11월 13일에는 중소기업협력단 및 기술이전센터를 설치하였다.

2004년 3월 16일에 (재단법인)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였다.

2004년 9월 1일에는 승학캠퍼스에 한림생활관 증축공사를 착공하고, 동년 10월 1일에는 승학캠퍼스에 산학협력관 증축공사를 착공하였다.

2004년 10월 1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하였다.

2004년 10월 4일에는 인문과학대학 한국어문학부 문예창작전공을 문예창작학과로 전환하였고, 법과대학에 국제법무학과를 신설하였으며, 사회과학대학 사회언론광고학부를 사회·사회복지학과와 신문방송학과로 분리하였고, 사회·사회복지학부에 사회학전공과 사회복지학전공을 두었으며, 경제학부를 경제학과와 금융학과로 분리하고, 경영대학 국제관광통상학부를 국제관광학과와 국제무역학과로 분리하고, 국제관광학부에는 관광경영학전공과 국제관광학전공 및 호텔외식경영학전공을 두었으며,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생명공학부를 분자생명공학부로 식물유전공학전공을 유전공학전공으로 원예식물생명공학전공을 환경생명공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를 전자컴퓨터공학과와 전기공학과로 분리하고, 전자컴퓨터공학부에 전자공학전공과 컴퓨터공학전공을 두었으며, 기계공학과를 기계공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계공학전공과 자동차공학전공을 두었고, 대학원 박사과정에 사회학과를 신설하고, 동북아국제대학원에 박사과정(국제학과)을 신설하였으며, 교육대학원에 영양교육전공을 신설하고, 산업대학원과 정보통신대학원을 산업정보대학원으로 통합하고, 해양공학과를 폐지하며 산업시스템공학과를 산업경영공학과로, 제어정보학과를 전기공학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경찰법무대학원의 경찰법학과를 폐지하며, 부동산법학전공을 신설하고, 정책과학대학원을 사회복지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사회복지학전공과 행정학전공을 폐지하고 사회복지학과를 신설하였다.

2004년 11월 17일에는 공학교육인증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동년 11월 23일에는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동년 12월 16일에는 (재단법인)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미디어디바이스연구센터를 설치하였고, 동년 12월 30일에는 인터넷창업보육센터를 창업보육센터에 편입 통합하였다.

2005년 2월 28일에는 승학캠퍼스 산학협력단 2개층 증축공사를 준공하였다.

2005년 7월 22일에는 인문과학대학 한국어문학부를 국어국문학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생활과학대학 식품과학부의 식품영양학전공과 식품과학(식품학)전공을 식품영양학전공으로 통합하고 의상섬유학부 섬유공학전공을 섬유산업시스템전공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경영대학 국제관광학부의 호텔외식경영학전공을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공과대학 토목·해양공학부의 토목공학전공, 해양토목공학전공을 폐지하고, 토목·해양공학부를 토목공학부로 명칭을 변경하며, 전자컴퓨터공학부 전자공학전공을 전자공학과로 명칭 변경하고 전자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을 컴퓨터공학과로 명칭 변경하며, 신소재·화학공학부 신소재공학전공을 신소재공학과로 명칭 변경하고, 신소재·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을 화학공학과로 명칭 변경하고, 체육대학을 스포츠과학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육학부(체육학전공, 경기지도학전공, 사회체육학전공, 무용학전공, 무도학전공)를 스포츠과학부(체육학전공, 경기지도학전공, 사회체육학전공)와 스포츠문화학부(무용예술학전공, 무도학전공, 태권도학전공)로 분리하였으며,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에 문예창작학과를 신설하며, 응용미술학과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고 조형디자인학과로 학과명칭을 변경하며, 농학과를 유전공학과로 명칭 변경하고, 생명자원과학과를 식물생명공학과로 명칭 변경하며, 학·연·산협동과정에 석·박사학위과정의 의학과(의과학연구원)를 신설하고 학과간협동과정에 석·박사학위과정의 나노공학과를 신설하며, 산업정보대학원의 신발산업공학과를 폐지하였다.

2005년 8월 1일에는 (재단법인)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나노기술연구센터를 설치하고, 동년 10월 1일에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설치하였다.

2005년 11월 7일에는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동년 12월 30일에는 교양교육원을 설치하였다.

2006년 2월 16일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설치(2009년) 승인을 받았으며, 동년 2월 21일에는 승학캠퍼스 한림생활관 증축공사를 준공하였다.

2006년 3월 1일에는 학생복지처를 학생·취업지원처로 변경, 도서관의 수서과와 정리과를 통합하여 학술정보지원과로 개편하며, 열람1과를 학술정보봉사1과로, 열람2과를 학술정보봉사2과로 개편, 의과학실험지원센터를 본부 부속기관에서 의과대학 부속기관으로 변경, 공과대학부속공장을 폐지, 첨단과학기술연구단 폐지, 지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 암분자치료연구센터를 본부 부설연구기관에서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2006년 4월 27일에는 멀티미디어연구센터를 설치하였다.

2006년 5월 12일에는 석당전통문화연구원 및 인문과학연구소 통폐합하여 석당학술원을 설치하였다.

2006년 7월 18일에는 인문과학대학 인문학부(철학전공, 윤리문화학전공, 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를 인문학부(철학전공, 윤리문화학전공)와 역사문화학부(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로 학부를 분리, 신설하고 전공을 분리하였으며, 중국·일본학부(일어일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를 일어일문학과와 중국학부로 분리하였고 공과대학 지구환경공학부의 자원공학전공을 에너지·자원공학전공으로 전공 명칭 변경, 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 자동차공학전공)를 기계공학부로 전공 통합하여 단일 학부로,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과학부의 무도학전공을 무도경찰학전공으로 전공 명칭 변경하였으며,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의 의생명과학과를 신설하고, 동북아국제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국제학과(중국지역전공, 일본지역전공, 동북아통상전공, 아·태관광전공)를 국제학과(동북아지역및통상전공, 아·태관광전공)로 전공 통합하였고, 산업정보대학원 전자상거래학과를 폐지하였으며, 예술대학원 조형예술학과를 문화예술매니지먼트학과로 명칭 변경을 하였다.

2006년 7월 31일에는 미국 위스콘신 로스쿨(Wisconsin Law School)과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6년 11월 9일에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였다.

2007년 2월 15일에는 전력변환시스템기술연구센터를 설치하였다.

2007년 2월 28일에는 최재룡 제11대 총장이 이임하였다.

2007년 3월 2일에는 심봉근 제12대 총장이 취임하였다.

2007년 5월 3일에는 호주 라트로브대학교(La Trobe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7년 6월 28일에는 중국의 2개 대학 중국해양대학(中國海洋大學), 서남정법대학(西南政法大學)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7년 7월 1일에는 삼성경제연구소와 “혁신을 위한 경영진단 및 경쟁력 제고 전략 수립”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2007년 7월 2일에는 중국 심천대학(深川大學)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7년 8월 1일에는 역사문화학부의 사학전공은 사학과로, 고고미술사학전공은 고고미술사학과로, 수학·신소재물리학부의 수학전공은 수학과로, 신소재물리전공은 신소재물리학과로, 화학·생명과학부의 화학전공은 화학과로, 생명과학전공은 생명과학과로, 의상섬유학부의 패션디자인전공은 패션디자인학과로, 섬유산업시스템전공은 섬유산업학과로, 정치행정학부의 정치외교학전공은 정치외교학과로, 행정학전공은 행정학과로, 사회·사회복지학부의 사회학전공은 사회학과로, 사회복지학전공은 사회복지학과로, 분자생명공학부의 유전공학전공은 유전공학과로, 환경생명공학전공은 분자생명공학과로, 응용생명공학부의 응용생물공학전공은 응용생물공학과로,

생명공학전공은 생명공학과로, 지구환경공학부의 환경공학전공은 환경공학과로, 에너지·자원공학전공은 에너지·자원공학과로 변경하고, 스포츠과학부의 체육학전공은 체육학과로, 경기지도학전공은 경기지도학과로, 사회체육학전공은 생활체육학과로, 스포츠문화학부의 무용예술학전공은 무용학과로, 무도경찰학전공은 무도경찰학과로, 태권도학전공은 태권도학과로, 미술학부 조소전공은 조각전공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다.

2007년 8월 1일에는 미국 UNCP대학교(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embroke)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지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를 설치하였다.

2007년 8월 28일에는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테라스 증축공사를 준공하였다.

2007년 9월 11일에는 대학원 응용경제학과를 금융학과로, 산업시스템공학과를 산업경영공학과로, 자원공학과를 에너지·자원공학과로, 경영대학원 경영정보전공과 인터넷비즈니스전공을 경영정보전공으로 통합하고,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과 교육상담전공을 교육심리및상담전공으로 통합하고, 교육방법전공을 폐지하였으며, 산업정보대학원의 건설사업관리학과를 신설하고, 언론홍보대학원 및 소속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를 폐지하였다.

2007년 10월 17일에는 일본 노스아시아대학(North ASIA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7년 12월 27일에는 중국 대련대학(大连大学) 체육학원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8년 2월 4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2008년 3월 1일에는 대외협력부총장을 폐지하고, 교학부총장을 부총장으로 변경, 학생·취업지원처를 학생처로 명칭변경, 대외협력실과 국제교류교육원을 통합하여, 대외협력처로 신설·통합하며, 건설관리분부를 신설하여, 기획처의 건설과와 사무처의 관리과 업무를 통합하며, 정보통신처를 정보전산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부속기관에 두며, 체육부 및 복지시설관리부를 대학본부에서 부속기관으로 소속변경하고, 학보사와 방송국을 다우미디어센터로 통합하며, 직장예비군연대를 사무처 산하로 소속 변경하며,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 및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을 신설한다.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경영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스포츠과학대학의 부학장 직제를 폐지하고, 공과대학 및 의과대학의 2개의 부학장제를 1개의 부학장제로 축소한다. 동북아국제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경찰법무대학원, 예술대학원의 부원장 직제를 폐지한다. 석당학술원, 교양교육원, 사회교육원, 생활체육지도자연연구원, 교육대학원부설중등교원연수원의 부원장 직제를 폐지하며 공학교육인증지원센터를 공학교육혁신센터로 변경하였다.

2008년 7월 1일에는 사회교육원을 평생교육원으로, 국어상담소를 국어문화원으로 개편하였다.

2008년 7월 7일에는 몽골 국립사범대학 학술교류협정체결하였고, 인문대학 인문학부(철학전공, 윤리문화학전공)를 철학과, 윤리문화학과로, 영어영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 영어전공)를 영어영문학과로, 유럽어문학부(독어독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를 독어독문학과, 프랑스문화학과로, 중국학부를 중어중문학과로, 중국학과를 신설하며, 식품과학부(식품영양학전공)을 식품영양학과로, 경영학부를 경영학과로, 국제관광학부(관광경영학전공, 국제관광학전공,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를 관광경영학과로, 경영정보과학부를 경영정보학과로, 토목공학부를 토목공학과로, 도시계획·조경학부(도시계획학전공, 조경학전공)를 도시계획학과, 조경학과로, 기계공학부를 기계공학과로, 사회과학대학에 국제거래관계학과를 신설하며, 무도경찰학과를 경찰무도학과로, 미술학부(회화전공, 공예전공, 조각전공)를 회화학과, 공예학과, 조각학과로, 조형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전공, 섬유조형디자인전공)를 산업디자인학과, 섬유조형디자인학과로, 음악학부(음학전공, 기악전공)를 음악학과, 기악학과로, 법과대학 및 법학부, 국제법무학과를 폐지하였다.

2008년 8월 1일에는 조규향 제13대 총장이 취임하였다.

2008년 9월 2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통보(정원 80명) 받았다.

2008년 10월 8일에는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학위과정, 교육대학원 유아영어교육전공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을 신설, 공통과학교육전공을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으로 분리, 경영대학원의 생산e-business전공을 운영관리전공으로 변경하고, 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신설하였다.

2008년 10월 31일에는 경찰법무대학원을 법무대학원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신축공사, 부민캠퍼스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보수정비 및 박물관 내부시설공사를 준공하였다.

2008년 11월 13일에는 영국 하트퍼드셔대학교(University of Hertfordshire)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2월 1일과 5일에 대만 국립고웅사범대학(國立高雄師範大學), 중국 수도경제무역대학(首都经济贸易大学)과 각각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8년 12월 15일에는 교육대학원 부설중등교원연구원을 교육대학원 부설교육연수원으로 명칭변경하였다.

2008년 12월 22일에는 고기능성벨브기술지원센터, SK telecom 산학협력 차세대 디스플레이연구센터를 신규 설치하였다.

2009년 3월 1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를 설치하였다.

2009년 3월 30일에는 중국 가목사대학(佳木斯大學)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4월 24일에는 미국 볼주립대학(Ball State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6월 11일에는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를 생물·의생명과학로,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를 아동가족학과로 변경하였고, 생명자원과학대학에 의약생명공학과를 신설하였으며,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및 건축공학전공을 건축학과(5년제) 및 건축공학과로 개편하였다. 석당인재학부를 신설하였고, 사회과학대학 국제거래관계학과, 인문과학대학 중국학과 및 일어일문학과를 국제학부로 신설하여 각각 국제학전공, 중국학전공, 일본학전공으로 개편하였다.(2010.3.1시행)

2009년 6월 26일에는 대만 국립정치대학(國立政治大學)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7월 8일에는 중국 감숙성(甘肅省)정부와 인재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8월 6일에는 호주 서호주대학교(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8월 10일에는 호주 퀸즐랜드공과대학교(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8월 10일에는 대만 국립중정대학(國立中正大學)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8월 25일에는 중국 란주대학(蘭洲大學)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9월 1일에는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부원장 직제를 신설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부원장을 교무부원장과 학생부원장의 2개의 직제로 변경하였다.

2009년 9월 15일에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가정관리학과를 아동가족학과로 변경하고,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 건축학과 및 태권도학과 신설하였다. 해양공학과를 폐지하고, 박사학위과정에 간호학과 신설하였으며, 학·연·산 협동과정 법학과를 국제법무학과로 변경하였다. 동북아국제대학원을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으로 변경하였고, 산업정보대학원 화학공학과를 폐지했으며, 뉴에코시티학과 및 그린에너지시스템학과를 신설하였다.(2010.3.1시행)

2009년 10월 12일에는 미토콘드리아허브제어연구센터를 설치하였다.

2009년 10월 26일에는 일본 무사시노대학(武蔵野大學)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10월 27일에는 일본 테이쿄대학(帝京大學)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11월 5일에는 영국 카디프웨일즈대학(University of Wales, Institute of Cardiff)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12월 7일에는 공과대학과 중국 계서대학 안전환경공정과(鸡西大学 安全与环境工程系)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12월 9일에는 중국 대련외국어대학(大连外国语大学)과 중국 산둥대학 위해분교(山东大学威海分校)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12월 9일에는 중국 대련외국어대학(大连外国语大学)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 1월 12일에는 사회과학대학과 베트남 사회과학원(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 1월 25일에는 중국 산둥경제학원(山东经济学院)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 3월 1일에는 교무·연구처 교무·연구과를 교무처 교무과로, 산학협력단 기획조정실을 산학연구지원실로 변경하였으며,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진흥실 신설하였고, 산학협력단의 중소기업협력단 및 전자상거래지원센터 폐지하였으며,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 지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를 본부 직할 부설연구기관으로 변경하였다. 석당인재학부 행정지원실 및 국제학부 행정지원실 신설하였다. 동북아국제대학원 행정지원실을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로 변경하였고, 일부 대학(원)에만 운용되던 부학(원)장 직제를 전 대학(원)으로 확대하였다.

2010년 3월 5일에는 공과대학과 카자흐스탄 카자흐 리딩 아카데미(Kazakh Leading Academy of Architecture and Civil Engineering)와의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되었다.

2010년 4월 22일에는 스포츠과학대학 경기지도학과를 스포츠지도학과로 변경하였다.(2011.3.1시행)

2010년 5월 26일에는 중국 곡부사범대학(曲阜师范大学)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 6월 2일에는 일본 후쿠오카대학(福岡大学)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 6월 26일에는 미국 웨스턴미시간대학(Western Michigan University)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 7월 2일에는 캐나다 탐슨리버스대학(Thompson Rivers University)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 7월 7일에는 미국 하와이퍼시픽대학(Hawaii Pacific University)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 7월 19일에는 Medi-Farm 산업화연구사업단을 설치하였다.

2010년 8월 20일에는 한림생활관 구덕관을 준공하였다.

2010년 8월 27일에는 교직부를 설치하였다.

2010년 9월 1일에는 입학사정관실, 평가·감사실, 국제교류과 설치를 설치하고, 산학연구지원실을 연구지원실로, 산학협력진흥실을 산학협력실로 변경하였다. 나노기술연구센터를 폐지하였다.

2010년 10월 4일에는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1층 일부를 증축하였다.(사회과학대학 영상방송실습실 설치공사)

2010년 10월 5일에는 대학원 학·연·산 협동과정 신소재물리학과 석·박사 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생명의료윤리학과 석·박사 과정 신설하였다. 교육대학원 독어교육전공, 중국어교육전공, 한문교육전공, 식물자원·조경교육전공, 상업정보교육전공 폐지하였다. 산업정보대학원 전기공학과, 전자정보통신학과, 컴퓨터공학과 폐지, 기술·경영컨설팅학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신설하였다.(2011.3.1. 시행)

2010년 10월 25일에는 영어교육연구소, 에코디자인사업단을 설치하였다. 공과대학 부학장을 교학부학장과 산학부학장의 2개의 직제로 변경하였다.

2010년 11월 26일에는 중국 화남농업대학(华南农业大学)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 12월 9일에는 호주 선샤인코스트대학(University of Sunshine Coast)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 12월 9일에는 영국 앵글리아러스킨대학(Anglia Ruskin University)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 12월 15일에는 호주 모나쉬대학(Monash University)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1년 1월 7일에는 중국 동화대학(东华大学)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1년 1월 24일에는 중국 서안외사대학(西安外事大学)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1년 2월 18일에는 교육대학원 철학교육전공, 관광교육전공, 전기·전자·통신교육전공, 정보·컴퓨터교육전공을 폐지하였다.(2011.3.1. 시행)

2011년 3월 1일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 교육연구소, 동아향노화연구소,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신재생에너지전력변환시스템연구소를 설치했다. 멀티미디어연구센터, 전력변환시스템신기술연구센터를 폐지했다.

2011년 4월 21일에는 건축·디자인·패션대학을 설립해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예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생활과학대학 패션디자인학과를 각각 건축·디자인·패션대학 건축학과, 산업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로 소속을 변경했다. 또 관광경영학과를 국제관광학과로, 섬유조형디자인학과를 섬유미술학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으며, 무용학과를 폐지하고 실용음악학과를 신설했다. 아울러 음악학과와 기악학과를 음악학과로 통합했다.(2012.3.1. 시행) 그리고 창업지원단 및 국제통상연구소를 설치했으며, 지식자원개발센터를 글로벌인재개발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2011년 6월 22일에는 미국 랜더대학(Lander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2011년 6월 24일에는 캐나다 알고마대학(Algoma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2011년 7월 20일에는 계약학과를 신설했다.(2011.9.1. 시행)

2011년 8월 8일에는 캄보디아 Cambodian University for Specialties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2011년 8월 30일에는 승학캠퍼스 창업보육센터 공장식 건물을 착공했다.

2011년 9월 9일에는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영유아보육학과 석·박사과정을 신설했으며, 산업정보대학원 뉴에코시티학과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선물거래전공을 폐지했다. 또 일반대학원 생물학과를 생명과학과로,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증권/금융전공을 재무전공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2012.3.1. 시행)

2011년 9월 14일에는 호주 커틴대학(Curtin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2011년 9월 30일에는 암분자치료연구센터를 폐지했다.

2011년 12월 6일에는 독일 Friedrich-Alexander University Busan Campus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2012년 1월 5일에는 건축·디자인·패션대학 행정지원실을 설치했다.

2012년 1월 9일에는 미국 테네시대학(The University of Tennessee)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2012년 2월 1일에는 필리핀 아테네오대학(Ateneo de Manila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2012년 2월 2일에는 인도네시아 비누스대학(BINUS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2012년 2월 3일에는 인도네시아 프레지던트대학(President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2012년 2월 14일에는 인문과학대학 철학과와 윤리문화학과를 철학·윤리문화학과로, 예술대학 회화학과와 조각학과를 미술학과로 각각 통합했으며, 자연과학대학 생물·의생명과학과를 생명과학과로, 스포츠과학대학 경찰무도학과를 경찰경호학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또 생활과학대학을 폐지했으며,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와 아동가족학과를 각각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와 인문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로 소속을 변경했다. 그리고 생활과학대학 섬유산업학과를 공과대학 유기재료고분자공학과로 소속 및 명칭을 변경했다.(2012.3.1. 시행)

2012년 2월 23일에는 부민캠퍼스 국제관(가칭) 부분 임시사용을 승인했다.

2012년 2월 29일에는 법과대학 행정지원실을 폐지했다.

2012년 4월 9일에는 베트남 빈중대학(Binh Duong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5월 24일에는 대만 국립동화대학(National Donghua University) 및 대만

봉갑대학(Feng Chia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5월 29일에는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University of Malaya)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5월 30일에는 필리핀 라살대학(University of St. La Salle)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6월 5일에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신설하였다. 공동기기센터를 본부 직할 부속기관에서 산학협력단 산하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맑스엥겔스연구소, 전력기기융합설계연구센터, 융합디자인연구소, 지식서비스·컨설팅연구소, 천연물신약개발연구센터 등 5개 연구기관을 신설하였으며, 조형연구소, 신재생에너지전력변환시스템연구소, SK telecom 산학협력차세대디스플레이연구센터 등 3개 연구기관을 폐지하였다.

2012년 6월 8일에는 영국 이스트런던대학(University of East London)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6월 13일에는 대만 보인대학(Fen Jen Catholic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6월 26일에는 부민캠퍼스 국제관을 준공하였다.

2012년 6월 27일에는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Friedrich Alexander University Erlangen Nurnberg)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6월 27일에는 미국 안젤로주립대학(Angelo State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6월 29일에는 태국 카셋삿대학(Kasetsart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7월 10일에는 승학캠퍼스에 창업관을 준공하였다.

2012년 7월 31일에는 조규향 총장이 이임하고, 8월 1일에는 권오창 제14대 총장이 취임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8월 6일에는 호주 스윈번대학(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8월 15일에는 캐나다 네브라스카주립대학교 커니캠퍼스(University of Nebraska at Kearney)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9월 1일에는 산학협력단을 대학교 본부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대외협력처를 단일과(대외협력과) 체제로 변경하였으며, 국제교류교육원을 신설하여 종전 대외협력처 국제교류과를 국제교류교육원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2012년 9월 1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신설하였다. 교육대학원 청소년사회교육전공, 도덕·윤리교육전공 석사과정을 폐지하고, 다문화교육전공 석사과정을 신설하였다.(2013.3.1.시행)

2012년 9월 25에는 대학발전 기획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2012년 9월 28일에는 일본 다이도대학(Daido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10월 9일에는 베트남 호치민기술사범대학(Uneversity of Technical Education, Ho Chi Minh C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10월 12일에는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이 국제전문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2013.3.1. 시행)

2012년 10월 19일에는 베트남 호치민기술사범대학 한국어센터(Uneversity of Technical Education, Ho Chi Minh City, Korean Language Center)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호치민기술사범대학 내에 동아대학교 한국어센터를 개원하였다.

2012년 11월 1일에는 학생처를 학생·취업지원처로, 취업정보실을 취업지원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다. 면역네트워크파이오니어연구센터를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으로 신설하였다.

2012년 12월 5일에는 베트남 한·베 친선 IT대학(Korea-Vietnam Friendship IT College)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12월 13일에는 미국 휴스턴대학(Uneversity of Houston)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12월 18일에는 태국 아시아공과대학(Asian Institut of Technolog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3년 1월 14일에는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3년 1월 18일에는 호주 맥쿼리대학(Macqurie Une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3년 1월 21일에는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를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으로 신설하였다.

2013년 2월 15일에는 생활과학연구소를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3년 3월 1일에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을 총장 직속기관으로 변경하였다.

2013년 3월 7일에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2013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서 부산울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2013년 3월 27일에는 창업지원단을 총장 직속기관으로 변경하였다.

2013년 5월 9일에는 미국 현대디지텍과 학생인턴십협정을 체결하였다.

2013년 7월 12일에는 본교 국제전문대학원과 인도 KIIT대학교, 인도 켈커타대학교 간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3년 7월 17일에는 베트남 동방대학교 및 하노이공대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

였다.

2013년 9월 1일에는 평가·감사실을 부총장 직속기관으로 변경하고 법무·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학술정보봉사1, 2과를 학술정보서비스1, 2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국제교류교육원을 국제교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부직할 부속기관으로 언어교육원을 신설하였다. 박물관을 석당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본부직할 부속기관으로 동아대학교 공자아카데미를 신설하였다,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으로 태권도건강문화연구소를 신설하였다.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으로 동남권건설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를 신설하였다.

2013년 9월 17일에는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부산사하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2013년 10월 4일에는 승학캠퍼스 공과대학2호관 증축공사(승강기 설치공사)를 준공하였다.

2013년 10월 17일에는 승학캠퍼스 예술대학 및 학생기숙사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2013년 11월 15일에는 일본 나고야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2013년 12월 5일에는 경찰법무대학원을 법무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 천연물신약개발센터를 폐지하였다.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BK21Plus총괄사업단을 신설하였다.

2013년 12월 23일에는 스페인 말라가대학(University of Malaga)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3년 12월 27일에는 한국대학평가원이 주관한 2013년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였다.

2014년 1월 2일에는 2014년 시무식에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윤리적 사명과 규범 인식, 대학 구성원의 사회적 책임 및 자기규제 윤리 정착 등을 목적으로 동아인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2014년 1월 8일에는 캐나다 레이크헤드대학(Lakehead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4년 2월 13일에는 (가칭)국제교류관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2014년 3월 1일에는 예술대학원을 문화예술대학원으로, 교수학습개발센터를 교육혁신센터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다.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R&D전략기획센터, 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였다. 또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인증을 획득하였다.

2014년 3월 4일에는 프랑스 에싸드 미술학교(Ecole Supérieure d'Art et Design Grenoble-Valence)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4년 3월 12일에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2014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서 창업선도대학 사관학교식 육성사업대학으로 선정되었다.

2014년 3월 13일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부설어학센터(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English Language Programs)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4년 3월 17일에는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매센터를 개소하였다.

2014년 3월 18일에는 총장 직속기관으로 부산지역통일교육센터를 신설하였다.

2014년 4월 15일에는 미국 동북아 경제 포럼(Northeast Asian Economic Forum)과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간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동아대학교와 중국 광주 성건직업학원(Guangzhou City Construction College)간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4년 5월 9일에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2단계 참여대학으로 선정되었다.

2014년 6월 11일에는 중국 섬서공상직업대학(陕西工商职业学院)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4년 7월 1일에는 교육부 주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에 생명산업 통합 연계교육 사업단, 생명의료윤리전공 특성화 사업단, 동남권 지역사회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新교육문화콘텐츠 창출을 위한 통섭형 인재양성 사업단, 기능성재료 특화 화학교육 사업단 등 총 4개 사업단이 선정되었다.

2014년 7월 31일에는 승학캠퍼스 스포츠과학대학 리모델링 증축공사를 착공하였다.

2014년 8월 1일에는 산학협력단 연구지원실과 R&D전략기획센터를 폐지하였다. 교무처에 연구지원실을 신설하였고 본부직할 부속기관인 국제교류원의 명칭을 국제교류처로 변경하고 본부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교육부 주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 선정에 따라 총장 직속기관으로 특성화총괄사업단을 신설하였고, 동아대학교와 중국 보계문리대학(宝鸡文理学院)간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4년 8월 19일에는 필리핀 파티마대학교(Our Lady of Fatima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4년 8월 31일에는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Medi-Farm산업화연구사업단과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영어교육연구소를 폐지하였다.

2014년 9월 1일에는 부총장 직속기관으로 교육혁신원을 신설하고, 교육혁신센터 부속기관으로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신설하였다. 교무처 부속기관인 교육혁신센터와 교직부, 학생취업지원처 부속기관인 학생상담센터를 교육혁신센터 부속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본부직할 부속기관인 체육부를 스포츠단으로, 체육과를 스포츠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4년 9월 26일에는 인도네시아 바탐국제대학교(International University Batam)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4년 10월 7일에는 핀란드 아시아 익스체인지(Asia Exchange)와 방문학생 유치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4년 10월 16일에는 베트남 국립경제대학교(National Economics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4년 10월 28일에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조선기술대학(Shipbuilding Institute of Polytechnic Surabaya)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교육부 주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 특성화 우수학과로 생명의료윤리 전공 특성화 사업단에 참여중인 철학·윤리문화학과가 선정되었다.

2014년 11월 1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한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2단계 사업에 에너지·자원공학과가 선정되었다.

2015년 1월 6일에는 말레이시아 테일러스대학교(Taylor's University) 국제관광학과와 동아대학교 국제관광학과 간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1월 14일에는 중국 산둥이공대학(山东理工大学)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1월 15일에는 중국 제남대학(济南大学)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2월 6일에는 중국 서안번역대학(西安翻译学院)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인도네시아 트리삭티 관광대학교(Trisakti Institute of Tourism), 트리삭티 경영대학교(Trisakti School of Management), 트리삭티 물류&운송대학교(Institute of Transportation & Logistics Management of Trisakti), 국제여자대학교(International Women University), STMIK WIDYA UTAMA, STMIK BANI SALEH, 하라판 버사마 폴리테크닉(Polytechnic Harapan Bersama), 픽시 인풋 세랑 폴리테크닉(Poltechnic Piksi Input Serang)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2월 26일에는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Yokohama National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2월 27일에는 승학캠퍼스 예술대학 임시사용을 승인 받았다.

2015년 3월 1일에는 생활과학대학을 폐지하고 건축·디자인·패션대학의 명칭을 디자인환경대학으로 변경하였다. 예술체육대학, 건강과학대학, 글로벌비즈니스대학을 신설하였다. 사무처 행정관리실과 본부직할 부속기관인 복지시설관리부(과)를 폐지하였다.

2015년 3월 17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공공정책연구소와 친환경도시농업연구소를 신설하였다.

2015년 3월 19일에는 일본 나라학원대학(Nara Gakuin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4월 1일에는 중국 중국인민대학(中国人民大学)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4월 6일에는 일본 메이조대학(Meijo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4월 14일에는 승학캠퍼스 예술체육대학 1관 리모델링 증축공사를 준공하였다.

2015년 4월 23일에는 인도네시아 스트믹위드야우타마대학(STMIK WIDYA UTAMA)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4월 28일에는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면역네트워크파이오니어연구센터를 폐지하였다.

2015년 5월 15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데이비스(University of California-Davis)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5월 26일에는 미국 네브라스카주립대학-오마하(University of Nebraska-Omaha)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6월 1일에는 교무처, 기획처, 재무처에 부처장제를 신설하였고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인 글로벌인재개발센터를 학생·취업지원처 부속기관으로 이관하였다.

2015년 6월 26일에는 터키 도쿠즈엘르윌대학(Dokuz Eylul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7월 1일에는 석당 글로벌하우스를 준공하였다.

2015년 7월 8일에는 석당인재학부와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 국제보건정책 공간연구센터(University of Texas-Dallas, Center for Geospatial in Global Health Policy)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7월 22일에는 고고미술사학과와 일본 도쿠시마대학(Tokushima University)이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7월 24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기업가정신연구소를 신설하였다.

2015년 8월 10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에너지환경응용기술연구소를 신설하였다.

2015년 9월 1일에는 사무처 내 안전관리실을 신설하였다.

2015년 9월 24일에는 라오스 수파노봉대학(Souphanouvong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10월 2일에는 터키 이스탄불공과대학(Istanbul Technical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10월 26일에는 대만 중화대학(中華大學)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10월 29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IoT연구센터를 신설하였다.

2015년 11월 12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글로벌금융연구소를 신설하였다.

2015년 11월 19일에는 중국 기남대학(暨南大學)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11월 26일에는 말레이시아 세다얏 국제대학[University College Sedayat International(U.C.S.I.)Extension]과 학생인턴십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12월 14일에는 중국 사천대학(四川大學)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6년 1월 12일에는 인도네시아 파순단대학(Pasundan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6년 1월 13일에는 인도네시아 컴퓨터대학(Indonesian Computer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6년 1월 27일에는 국제관광학과와 말레이시아 테일러대학(Taylor's University)이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6년 2월 19일에는 승학캠퍼스 한림생활관 승학2관을 준공하였다.

2016년 2월 29일에는 융합형디자인육성사업단을 폐지하였다.

2016년 3월 1일에는 융합 교양대학, 중국·일본학부, 공과대학 내 4개 학부(인간환경융합공학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기계산업경영공학부, 신소재화학공학부)를 신설하였고, 예술대학, 스포츠과학대학, 국제학부 및 본부직할 부속기관인 교양교육원을 폐지하였다.

2016년 3월 9일에는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울산근로자건강센터를 신설하였다.

2016년 3월 11일에는 중국 산서성과과학기술미디어그룹(山西科技传媒集团)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6년 3월 29일에는 구덕캠퍼스 중정부지 지하공간 개발공사를 착공하였다.

2016년 4월 7일에는 인도네시아 파드자드자란대학(Universitas Padjadjaran)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6년 4월 19일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윌밍턴(University of North Carolina- Wilmington)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6년 5월 1일에는 총장 직속기관으로 인문역량강화사업단 신설하였다.

2016년 5월 10일에는 독일 본 대학(University of Bonn)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6년 6월 8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인문학연구소를 신설하였다.

2016년 6월 8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생명의료윤리연구소를 신설하였다.

2016년 6월 8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공동가치창출혁신연구소를 신설하였다.

2016년 6월 8일에는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말초신경병증연구센터 신설하였다.

2016년 7월 22일에는 미국 노스캐롤라 주립대학, 그린스보로(University of North Carolina- Greensboro)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6년 10월 11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소를 해양도시건설·방재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6년 11월 16일에는 총장 직속기관으로 동아대학교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을 신설하였다.

2016년 12월 8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글로벌재난안전연구센터를 신설하였다.

2016년 12월 14일에는 미얀마 양곤 기술대학(Yangon Technological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6년 12월 15일에는 인도네시아 머츄 부아나 대학(University of Mercu Buana)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6년 12월 19일에는 중국 양주중국스위스호텔 직업대학(中瑞酒店職業學院)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7년 1월 10일에는 영국 미들섹스 대학(Middlesex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7년 1월 12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선박해양시스템연구소를 신설하였다.

2017년 1월 12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지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를 폐지하였다.

2017년 3월 1일에는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실을 연구개발지원실과 사업화지원실로 확대 신설, 교육혁신원 부속기관으로 교육성과관리센터 신설, 융합교양대학을 기초교양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속기관으로 표현력증진센터 및 인성체험증진센터를 신설,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인 기술이전센터를 기술경영센터로 명칭 변경, 사무처 안전관리실과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인 창업보육센터를 폐지하였다.

현재 대학교의 규모는 9개 대학원에 석사 83개 학과 및 114개 과정(전공), 박사 61개 학과 및 63개 과정(전공), 11개 단과대학 2개 독립학부 57개 학과 13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사회복지대학원 연혁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적 및 국민적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사회복지사업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증대되는 추세이다.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은 이러한 상황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이론과 실천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배출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 대학원은 1996년 11월 2일 특수대학원으로서 정책과학대학원 설립이후 지방자치, 사회복지를 비롯한 공공분야의 인력을 양성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의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2004년 7월 27일 사회복지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창조적 능력을 갖춘 휴먼서비스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보건행정, 사회복지, 상담심리치료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과목과 프로그램 설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대학원의 다양한 교과목과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전문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과 이미 사회복지를 실천하시는 분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폭과 깊이를 확장, 심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 1996.11.02. 정책과학대학원 설립인가 (3개전공 53명 정원)
지방자치전공, 도시및환경정책전공, 사회복지정책전공
- 1996.11.08. 초대 대학원장 설광석 교수, 교학과장 전상경 교수 취임
- 1997.03.01. 제2대 대학원장 이성덕 교수 취임
- 1997.03.05. 석사학위과정 제1기 24명 입학
(지방자치전공 7명, 도시및환경정책전공 2명, 사회복지정책전공 15명)
- 1997.09.05. 석사학위과정 제2기 9명 입학
(지방자치전공 3명, 사회복지정책전공 6명)
- 1998.01.31. 석사학위과정 전공 명칭 변경
지방자치행정전공, 사회복지학전공
- 1998.03.04. 석사학위과정 제3기 13명 입학
(지방자치행정전공 4명, 사회복지학전공 9명)
- 1998.09.02. 석사학위과정 제4기 5명 입학 (사회복지전공 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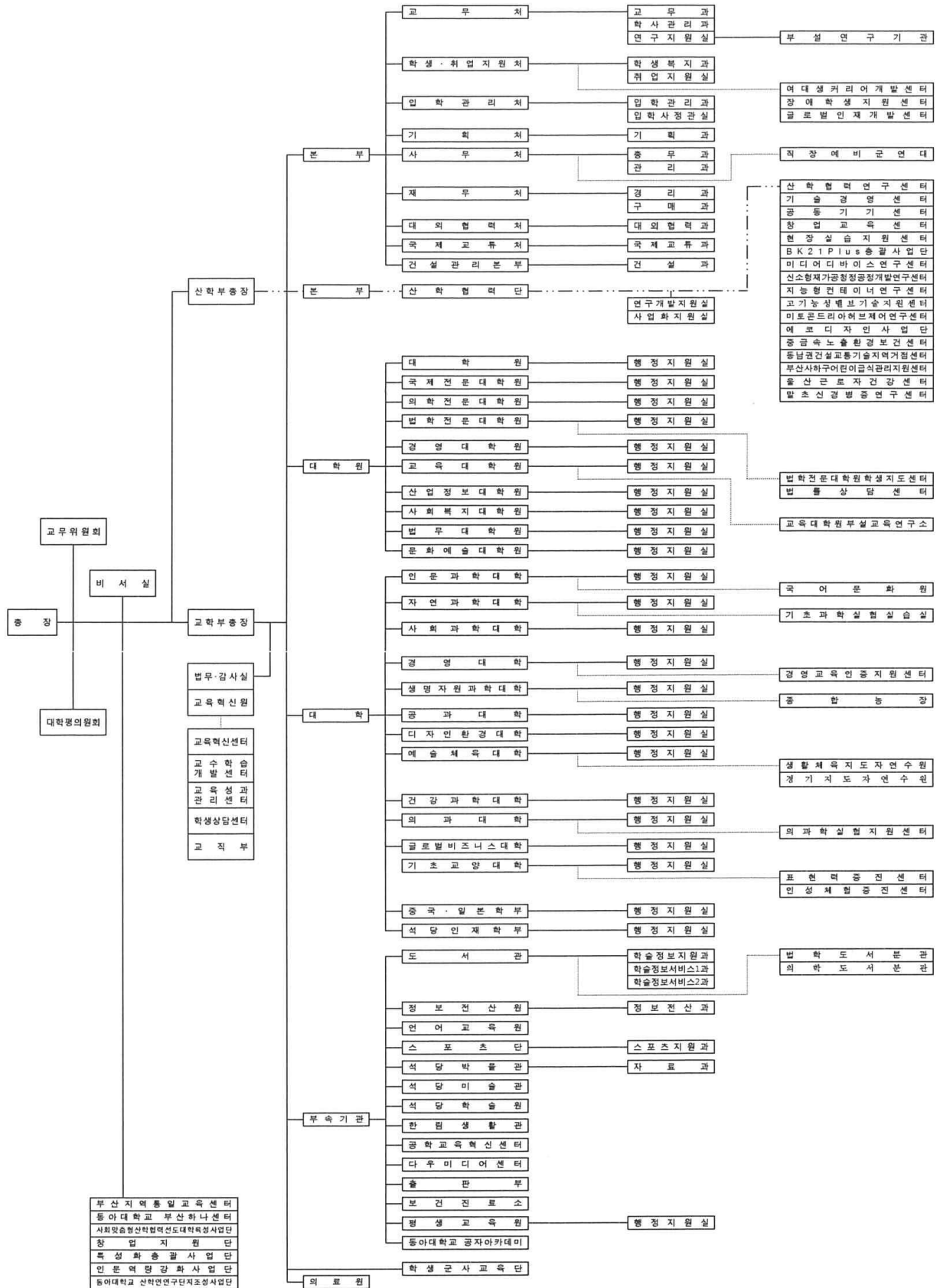
- 1998.11.13. 석사학위과정 정원조정 및 전공 명칭 변경
정원 40명, 사회복지학전공
- 1999.03.01. 제3대 대학원장 방정항 교수 취임
- 1999.03.03. 석사학위과정 제5기 40명 입학
(지방자치행정전공 7명, 사회복지학전공 33명)
- 2000.03.02. 석사학위과정 제6기 40명 입학
(지방자치행정전공 6명, 사회복지학전공 34명)
- 2001.02.01. 제4대 대학원장 신기석 교수 취임
- 2001.03.05. 석사학위과정 제7기 38명 입학
(지방자치행정전공 5명, 사회복지학전공 33명)
- 2002.03.04. 석사학위과정 제8기 42명 입학
(행정학전공 4명, 사회복지학전공 38명)
- 2003.03.01. 제5대 대학원장 박일규 교수 취임
- 2003.03.03. 석사학위과정 제9기 42명 입학
(행정학전공 3명, 사회복지학전공 39명)
- 2004.03.01. 제6대 대학원장 김민남 교수 취임
- 2004.03.03. 석사학위과정 제10기 43명 입학 (사회복지학전공 43명)
- 2004.07.27. 대학원 명칭변경 및 전공변경
명칭변경: 정책과학대학원 → 사회복지대학원
전공변경: 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 사회복지학과
- 2005.03.02. 제11기 43명 입학 (사회복지학과 43명)
- 2005.09.01. 제7대 대학원장 박홍석 교수 취임
- 2006.03.02. 제12기 43명 입학 (사회복지학과 43명)
- 2006.10.01. 입학정원변경 (사회복지학과 43명 → 50명)
- 2007.03.01. 제8대 대학원장 정덕주 교수 취임
- 2007.03.02. 제13기 50명 입학 (사회복지학과 50명)
- 2008.03.03. 제14기 50명 입학 (사회복지학과 50명)
- 2009.03.02. 제15기 50명 입학 (사회복지학과 50명)
- 2010.02.09. 제9대 대학원장 박우순 교수 취임
- 2010.03.03. 제16기 50명 입학 (사회복지학과 50명)
- 2011.03.02. 제17기 47명 입학 (사회복지학과 47명)
- 2012.03.02. 제18기 37명 입학 (사회복지학과 37명)

- 2012.08.01. 제10대 대학원장 전효정 교수 취임
- 2013.03.04. 제19기 31명 입학 (사회복지학과 31명)
- 2014.03.01. 학과 명칭변경 및 전공신설
 명칭변경: 사회복지학과 → 보건복지상담학과
 전공신설: 보건행정학, 사회복지학전공, 상담심리치료학전공
- 2014.03.03. 제20기 51명 입학
 (보건행정학전공 10명, 사회복지학전공 19명, 상담심리치료학전공 22명)
- 2015.03.02. 제21기 50명 입학
 (보건행정학전공 12명, 사회복지학전공 8명, 상담심리치료학전공 30명)
- 2016.03.01. 전공 명칭변경
 사회복지학전공 → 사회복지행정학전공
- 2016.03.02. 제22기 50명 입학
 (보건행정학전공 12명, 사회복지행정학전공 11명, 상담심리치료학전공 27명)
- 2016.08.01. 제11대 대학원장 한세억 교수 취임
- 2017.03.02. 제23기 53명 입학
 (보건행정학전공 9명, 사회복지행정학전공 14명, 상담심리치료학전공 30명)
- 2018.03.02. 제24기 48명 입학
 (보건행정학전공 11명, 사회복지행정학전공 11명, 상담심리치료학전공 26명)

Ⅱ. 기 구

1. 동아대학교 기구표
2. 사회복지대학원 기구

1. 동아대학교 기구표



※ 2017. 9. 1. 기준

2. 사회복지대학원 기구

사회복지대학원 행정부서

원	장	한	세	억
팀	장	이	희	숙
직	원	박	명	숙

사회복지대학원 보건복지상담학과 책임교수 김 형 빈

사회복지대학원 운영위원회

위	원	장	한	세	억
위		원	김	형	빈
위		원	주	인	석
위		원	윤	상	우
위		원	남	찬	섭
위		원	박	언	주
위		원	김	대	중
위		원	한	덕	희
위		원	이	승	희
위		원	이	동	규

Ⅲ. 학칙 및 규정

1. 대학원 학칙
2.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
3.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규정
4. 대학원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5.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규정
6.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규정
7. 대학원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8.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
9. 대학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1. 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자유·진리·정의의 교시 아래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 학칙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설치한 각 대학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본 대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국제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3. 특수대학원 :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무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제3조(교육목적) 각 대학원의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 :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심오하게 연찬하여 전문 연구 인력으로서의 독창적 능력을 계발하고, 지도자적 품격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국제전문대학원 : 국제통상 및 국제지역과의 교류에 관한 이론 및 실무를 연구하고 교수하여 국제화를 통한 국제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3. 의학전문대학원 : 폭 넓은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여 의학교육의 발전과 의학의 사회적 역할 다양화를 구현하도록 한다.
4. 법학전문대학원 : 폭 넓은 교양 및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며,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추므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법조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5. 경영대학원 : 경영학이론과 실재를 교수·연구함과 아울러 최고경영자로서의 지도적 인격완성과 창의력 개발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6. 교육대학원 : 교육과 전공분야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연구·교수하고, 교육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전문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산업정보대학원 : 산업정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의 양성과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가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체계적 지식을 연구하고 교수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의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9. 법무대학원 :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법무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10. 문화예술대학원 :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예술 산업에 있어서 다양하고 실천적인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과 예술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및 경영기법 개발을 연구하고 교수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학위과정, 수업연한 등 학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4조(학위과정) ① 각 대학원은 그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둔다.

1. 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2. 국제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3.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4. 협동과정 및 학·석사 연계과정

가. 학·연·산 협동과정 : 일반학위과정의 각 학위과정으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설치된 과정을 말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연·산 협동과정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나. 학과간 협동과정 : 일반학위과정 중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다. 학·석사연계과정 :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를 5년(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는 6년) 만에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각 대학원에는 학위과정 이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특별과정을 둘 수 있으며, 공개강좌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편성과 정원) 각 대학원에 설치된 학위과정의 편성과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수업) ①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수업을 제외하고 야간수업, 주말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제전문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제7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전형방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입학지원 자격)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상이한 지원자는 대학원 해당 학과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원하여야 한다.

3. 통합과정 : 통합과정 입학지원 자격은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4. 학·석사 연계과정 : 학·석사 연계과정자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지원 자격은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절차) 각 대학원에 입학할 지원자는 입학지원서 및 소정의 서류와 함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부정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합격 후 소정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2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는 당해 학년도의 입학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② 재입학이 결정된 자는 재입학금과 함께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 취득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편입학) ①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은 각 대학원 교과과정을 비교하여 전적 대학원에서의 취득한 학점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할 수 있다.

③ 편입학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위탁학생) 각 대학원은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의 입학)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게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외국인 학생의 특례입학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교과, 학점 및 수료

제16조(수업연한) ①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2년(통합과정은 4년)이상, 학·석사 연계과정의 석사학위과정은 1년 6월 이상으로 한다.
2. 특수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 : 2년 6월 이상으로 한다.
- ② 학위수여 요건을 조기에 충족시킨 사람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1학기, 통합과정은 2학기 이내를 단축하여 조기졸업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재학연한)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4년(8학기), 박사학위과정 4년(8학기), 통합과정 6년(12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2. 특수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 : 5년(10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교과과정의 운영) 각 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은 「대학원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의 2(교육과정 공동운영) 각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협정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각 대학원은 1년 2학기제로 운영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년 3학기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과(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각 대학원은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습자와 교과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점 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 교과별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정규학기에 개설한 교과목을 보충할 목적인 경우에는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정규학기 이외의 기간에도 기존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2(학점당 이수시간) 학점당 필요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20조(과정별 최소 이수학점) 각 과정의 대학원생은 다음 각 호의 교과학점과 논문 연구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1. 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

- 가. 교과학점은 석사학위과정 24학점, 박사학위과정 36학점, 통합과정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 나. 논문연구는 석사학위과정 2학점(최종학기 2학점), 박사학위과정 4학점(최종 두 학기 각 2학점), 통합과정 6학점(최종 세 학기 각 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에서 인정하는 석사논문에 상응하는 논문 대체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다. 학·석사연계과정의 석사학위과정 입학 전에 이수한 학사 및 석사학위과정 연계과목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연계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인정한다.
- 라. 박사학위과정 입학 전의 석사학위과정 초과취득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해당 책임교수의 제청을 받아 박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대학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
- 마.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생은 교내 학사학위과정 교과목을 6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교과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 특수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

- 가.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과학점을 24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고, 논문연구는 2학점(최종학기 2학점)[교육대학원은 4학점(최종학기 4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나.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무논문학위과정자”라 한다)에 대한 교과학점 및 연구보고 학점(최종학기)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수강신청학점 한도) ① 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의 수강신청학점은 매 학기 석사학위과정 9학점, 박사학위과정 12학점, 통합과정 9학점 이내로 한다.

② 특수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의 수강신청학점은 매 학기 6학점 이내로 한다.

③ 교육대학원의 경우, 제2항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과목은 학기당 4학점(학교현장실습교과목 신청학기에는 6학점), 보충과목은 학기당 6학점(총 28학점)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교직과목은 교육대학원에서 개설한 과목으로 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교육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부에서 개설한 교직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3학점(교육대학원의 경우 재학연한 동안 1회에 한함)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기졸업 신청자에 대해서는 「대학원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보충과목 이수) ① 하위 과정과 학과(전공)가 다른 사람은 책임교수가 지정하는 보충과목을 그 하위 과정의 교과목 중에서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하며, 이는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1. 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3학점, 박사학위과정 6학점 이상으로 한다.
2. 국제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3학점, 박사학위과정 6학점 이상으로 한다.
3.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6학점(경영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무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은 3학점) 이상으로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하위과정과 학과(전공)가 다르거나 유사한 사람에 대한 보충과목 이수 및 인정학점의 한도 등에 관한 결정은 학과(전공)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보충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보충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산정한다.

제23조(합동수업) 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원 학과(전공)간 및 대학원간의 합동수업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합동수업은 전 과정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학점교환 협정 및 학점인정) ① 각 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타 대학교 대학원과 학점교환을 협약 할 수 있다.

②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국내외 다른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 별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수료요건 및 시기) ① 학위과정별 최소 이수학기를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교과 및 연구) 및 전 교과목(보충과목 제외) 평균 80점 이상의 성적 취득을 학위과정의 수료요건으로 한다. 단, 보충과목 이수대상자는 해당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각 과정의 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일로 하며,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① 각 학위 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경영대학원은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학위 청구논문 또는 학과에서 인정하는 석사논문에 상응하는 논문 대체실적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학위청구논문, 논문 대체실적 및 논문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②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외국어시험은 60점 이상, 종합시험은 과목별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조기졸업 신청자격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사람은 학과(전공) 교수회의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을 받은 경우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은 재학 둘째 학기까지, 석·박사통합과정은 재학 다섯째 학기까지, 특수대학원은 재학 셋째 학기까지의 매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93점 이상인 자
2. 재학기간 중 학생 본인의 연구 실적이 공인된 국내·외 학회지에 게재되거나 확정되는 등 연구실적의 탁월성이 인정되는 자

② 조기졸업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격을 상실한다.

1. 제57조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매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93점 미만인 사람
3. 조기졸업을 포기한 사람

제 4 장 성적 및 출결

제28조(성적평가) ① 교과학점이 부여되는 교과목의 성적은 시험, 과제물, 출석상황 등을 참작하여 절대평가하고, 이에 해당되는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점수	95이상 100	90이상 95미만	85이상 90미만	80이상 85미만	75이상 80미만	70이상 75미만	70미만
등급	A ⁺	A	B ⁺	B	C ⁺	C	F
평점	4.5	4.0	3.5	3.0	2.5	2.0	0

② 교과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교과목의 성적은 P(통과) 또는 NP(불통과)로 부여한다.

③ 논문연구의 성적은 S(합격) 또는 U(불합격)로 부여한다.

④ 교과학점 및 논문연구 성적 평가 시 I(평가보류)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삭제 2009. 3. 1)

제28조2(출결) ① 수업실시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② 직계가족 사망, 학생의 입원 또는 전염성 질병 감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는 담당 교원의 승인 하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9조(이수인정) 수업실시 시간의 3분의 2이상 출석하고 교과목의 성적이 70점 이상인 경우에 교과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 5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및 퇴학

제30조(등록 및 연구등록) ① 학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 납부 등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과 국제전문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4학기 이상, 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은 5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대상자는 대학원과 국제전문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3학기 이상,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학·석사 연계과정의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정규등록 하여야 한다

④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소정의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기일 내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1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정서식에 의한 휴학원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4학기, 통합과정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한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병역으로 인한 휴학 기간
2. 출산전후 휴학 기간 : 1개 학기
3. 육아휴학 기간 : 2개 학기

④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휴학연기원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⑤ 학·석사 연계과정자는 석사과정 입학 후 첫째 학기는 군입대 및 질병을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제32조(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원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일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2.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3.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람
4.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이 결정된 사람

제34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6 장 공개강좌,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

제35조(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개강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할 수 있으며, 연구생을 받을 수 있다

②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좌에 소요되는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연구과정) ① 연구과정은 일반연구과정과 수료후연구과정으로 구분한다.

1. 일반연구과정의 연구생은 해당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책임교수의 추천과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자

2. 수료후연구과정의 연구생은 해당 학위과정 수료자로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를 희망하는 자

② 일반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청강한 과목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과정수료를 인정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37조(특별과정) 각 대학원에 전문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특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수강허가) 연구생의 수강허가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 7 장 학위수여

제39조(학위수여) ① 학위수여 요건은 다음 각 호 모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0조에 규정된 해당 학위과정 이수학점 취득한 사람

2. 제22조에 규정된 해당 보충과목학점 취득한 사람(해당자에 한함)

3. 취득학점의 평균 성적이 80점 이상인 사람

4.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경영대학원은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논문의 본심사 및 최종 구술시험에 합격하거나 학과에서 인정하는 석사논문
에 상응하는 논문 대체실적을 제출한 사람

나. 연구보고서 또는 전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심사에 통과한 사람(특수대
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에 한함)

다. 별도의 방법으로 논문대체를 인정받은 사람(특수대학원에 한함)

② 석·박사 통합과정을 퇴학한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학위논문 포함)에는 총장 승인을 받아 석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제40조(학위종별)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와 학위과정별 학위명은 [별표
1]과 같다.

제41조(학위심의) 각 대학원장은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한다.

제42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위수여대상자에게 제40조의 학위종별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 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43조(학위수여 횟수 및 시기) 학위수여는 연 2회로 하되, 시기는 2월 및 8월 말로 한다. 단, 수여식은 2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학위수여 취소) ① 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논문의 표절, 대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 교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입학허가가 취소된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한다.

제45조(명예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는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여한다.

1. 대학원장은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후보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 심의하고 수여할 학위종별은 제40조에 따르되, 이를 받을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한다.
2.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의결은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3.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명예박사 학위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수여를 확정한다.

제46조(학위기 양식)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의 학위기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제47조(학위복장규정) 석사, 박사학위복의 학위종별 후드 색상은 [별표 2]와 같다.

제48조(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 논문은 학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계에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발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8 장 대학원위원회

제4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 추천의 11명 이상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3.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각 대학원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위원의 임기) 대학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1조(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다만 입학(입학취소 제외)의 경우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과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다만 수업계획의 경우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4. 공개강좌와 특별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청구를 위한 자격시험 및 학위심사에 관한 사항. 다만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6. 이 학칙 및 각 대학원의 제규정 등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8. 기타 각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52조(소집 및 의결방법) 대학원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대학원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제53조(학부과정과 각 대학원 과정의 연계 운영) ① 각 대학원장은 해당 대학원 과정의 학사운영을 관련 각 학부(과)장에게 위임하여 학부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과)별로 대학원학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9 장 장학, 학생활동 및 상벌

제54조(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학생회) ① 학생의 자치활동기구로 각 대학원에 학생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학생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56조(포상) 각 대학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 또는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57조(징계) ①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1주일 이내)
2. 근신(근로봉사)
3. 유기정학(4주일 이내)
4. 무기정학
5. 제적

② 정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징계 해제 또는 감면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징계를 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징계처분이 결정되면 소속 대학원장은 관련부서, 학부모 및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장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설치·운영

제57조의2(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의한 학과 및 과정의 설치·운영규정」 및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 11 장 대학원 학칙 개정

제58조(학칙개정 절차) ① 대학원의 학칙 개정은 대학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안된 학칙개정안을 1주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학칙개정안은 대학원위원회,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공포한다.

제 12 장 보 칙

제59조(대학원 각 규정) 이 학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학원 규정을 따로 둔다.

제60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동아대학교 대학원 학칙」, 「동아대학교 동북아국제대학원 학칙」,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동아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칙」, 「동아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학칙」,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학칙」, 「동아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학칙」, 「동아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학칙」, 「동아대학교 예술대학원 학칙」, 「동아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동아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동아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전문·특수대학원의 학칙 통합에 따른 적용례)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소속 대학원 학칙 등 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모집단위 신설, 정원조정 및 학과명칭변경 시기) 다음의 모집단위 신설, 정원조정 및 학과명칭변경은 200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1. 대학원의 학과간협동과정에 예술학과(석사·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한다.
2.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418명을 405명으로 정원조정하고 박사학위과정 150명을 157명으로, 학과간협동과정의 예술학과 석사학위과정 3명, 박사학위과정 3명으로 각각 정원조정한다.
3. 대학원의 도시조경학과는 도시계획·조경학과로, 산업대학원의 도시조경학과는 도시계획·조경학과로, 정보통신대학원의 정보공학과는 컴퓨터공학과로, 예술대학원의 미술학과는 아동미술학과, 디자인학과는 조형예술학과, 음악학과는 컴퓨터 실용음악학과로 각각 명칭 변경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편성과 정원)는 2005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특수대학원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산업대학원과 정보통신대학원의 통합에 따

라 산업대학원(산업시스템공학과, 토목공학과, 해양공학과, 기계공학과, 환경관리학과, 화학공학과, 건축공학과, 금속공학과, 도시계획·조경학과, 신발산업공학과, 향만물류시스템학과)과 정보통신대학원(제어정보학과, 전자정보통신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상거래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6학년도까지는 해당 대학원 및 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7학년도부터는 통합된 산업정보대학원으로 졸업하되, 산업시스템공학과는 산업경영공학과로, 제어정보학과는 전기공학과로 졸업한다.

③ (특수대학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정책과학대학원의 명칭 변경에 따라 정책과학대학원(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6학년도까지는 정책과학대학원 및 전공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7학년도부터는 명칭 변경된 사회복지대학원으로 졸업하되, 행정학전공은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전공을 존치하고 사회복지학전공은 사회복지학과로 졸업한다.

④ (전공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경찰법무대학원의 경찰법학과(경찰법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6학년도까지는 경찰법학과(경찰법학전공)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7학년도부터는 경찰법학전공으로 졸업한다.

⑤ (학위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제40조에 의한 정책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학위명은 “행정학석사”를 “사회복지학석사”로 변경하되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경찰법무대학원 경찰법학전공의 학위명은 2006학년도까지는 “경찰법학석사”로 하되 2007학년도부터는 “법학석사”로 한다.

⑥ (무논문학위과정자에 대한 경과조치) 동북아국제대학원의 2004학년도 입학자는 이 변경학칙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원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응용미술학과, 농학과, 생명자원과학과, 농생물학과의 재적생 학사업무는 입학 당시 학칙을 적용하며, 응용경제학과 재적생은 금융학과 재적생으로, 산업시스템공학과 재적생은 산업경영공학과 재적생으로, 자원공

학과 재적생은 에너지·자원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③ (동북아국제대학원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중국지역전공, 일본지역전공, 동북아통상전공 재적생은 동북아지역및통상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④ (교육대학원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교육심리전공, 교육상담전공, 교육방법전공의 재적생 학사업무는 종전 학칙에 의한다.

⑤ (산업정보대학원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신발산업공학과 및 전자상거래학과의 재적생 학사업무는 2008학년도까지는 입학당시의 학칙에 의하며, 2009학년도 이후부터는 학생이 원하는 학과로 졸업한다.

⑥ (언론홍보대학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언론홍보대학원은 2008년 2월 29자로 폐원하며, 소속학과 재적생의 학사업무는 종전 학칙에 의한다.

⑦ (예술대학원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조형예술학과 재적생의 학사업무는 입학당시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박사학위과정 체육학과의 체육학박사는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학칙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의 학과간협동과정 의생명과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일반대학원 석사·박사학위과정 의생명과학과 재적 학생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0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재적생은 아동가족학과로, 학·연·산 협동과정 법학과 재적생은 국제법무학과로, 동북아국제대학원 재적생은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재적생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육대학원 및 산업정보대학원 폐과(전공)에 따른 경과조치) 교육대학원 철학교육전공, 독어교육전공, 중국어교육전공, 한문교육전공, 식물자원·조경교육전공, 산업정보교육전공, 관광교육전공, 전기·전자·통신교육전공, 정보·컴퓨터교육전공 및 산업정보대학원 전기공학과, 전자정보통신학과, 컴퓨터공학과와의 재적생은 종전 학칙에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201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대학원 생물학과 재적생은 생명과학과 재적생으로 한다.
- ③ (경영대학원 전공 폐지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대학원 증권/금융전공, 선물거래전공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 ④ (산업정보대학원 정원조정 및 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산업정보대학원 뉴에코시티학과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르고, 기술·경영건설링학과의 학위명 변경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2013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재적생은 국제전문대학원 재적생으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4학년도 대학원 학생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대학원 영유아보육학과 재적생은 영유아학과 재적생으로 한다.

② 학과가 폐과되는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유전공학과, 식물생명공학과, 응용생물공학과, 항만·물류시스템학과, 예술학과, 나노공학과와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③ 학과 또는 전공의 명칭이 변경되는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의생명과학과, 국제법무학과 국제관계·국제금융전공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④ 학과가 신설되는 대학원 입자가속기및의학물리학과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제3조(예술대학원 명칭 변경 및 학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예술대학원 재적생은 문화예술대학원 재적생으로 한다. 다만, 학과가 폐과되는 예술대학원 컴퓨터실용음악학과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제4조(국제전문대학원 학과·전공·학위명 변경 및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전공·학위명이 변경되는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한국학전공, 다문화전공) 재적생은 국제중재학과(글로벌한국학전공, 글로벌다문화전공) 재적생으로 하며, 전공이 폐지되는 국제학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전공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제5조(사회복지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되는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재적생은 입학 당시의 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되, 2014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보건복지상담학과(사회복지학전공)로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5학년도 대학원 학생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과가 폐지되는 대학원 윤리문화학과, 식품과학과의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② 학과 전공이 폐지되는 대학원 사학과 동양사전공, 서양사전공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③ 학과 전공 명칭이 변경되는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사회복지전공 재적생은 평생교육및교육사회 재적생으로 하고, 국제법무학과 국제관계전공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제3조(경영대학원 학과 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 전공 명칭이 변경되는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운영관리전공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제4조(교육대학원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전공이 폐지되는 교육대학원 유아영
어교육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일반사회교육전공, 물리교육전공, 가
정교육전공의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제5조(산업정보대학원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가 폐지되는 산업정보대학원
도시계획·조경학과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전문대학원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전공이 폐지되는 FTA국제통상전
공, 국제통상분쟁조정전공의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제3조(일반대학원 세부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
법전공을 교육공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단, 변경 전 교육방법전공의 재적생
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6학년도 대학원 학생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 ① 학과가 폐지되는 대학원 철학과, 일본학과의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 ② 학과의 전공이 폐지되는 대학원 간호학과 응급전문간호학전공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 ③ 학과의 전공 명칭이 변경되는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독서논술전공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제3조(사회복지대학원 학과 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전공 명칭이 변
경되는 사회복지대학원 보건복지상담학과 사회복지학전공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제4조(문화예술대학원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가 폐지되는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국제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폐지하고 본 학칙 시행을 위

해 대학원 각 규정에 흡수 통합하여 시행한다.

③ (예술대학원 학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 부칙(2014.3.1.시행)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과가 폐과된 예술대학원 컴퓨터실용음악학과의 재적생(수료생 포함)은 문화예술대학원 실용음악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가 폐지되는 대학원 학·연·산협동과정 의학과와 학과간협동과정 나노공학과와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제3조(국제전문대학원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되는 국제전문대학원 국제중재학과(글로벌통상금융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글로벌다문화전공) 재적생은 국제학과(글로벌통상금융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글로벌다문화전공) 재적생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교육대학원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전공의 명칭이 변경되는 교육대학원 디자인·공예교육전공과 기계·금속교육전공의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대학원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7학년도까지 입학한 재적생은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로 졸업하고, 복학 등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의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제3조(2018학년도 대학원 학생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가 폐지되는 대학원 학·연·산협동과정 입자가속기및의학물리학과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제4조(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논문 제출 자율화에 대한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논문 제출 자율화(논문 또는 논문대체실적 중 선택)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육대학원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전공이 폐지되는 교육대학원 일본어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무용교육전공의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별표 1]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 및 전공 편성표와 입학정원 및 학위명

1. 일반대학원【석사학위과정 : 63개 학과(전공) 464명, 박사학위과정 : 60개 학과(전공) 178명, 계약학과 석사학위과정: 1개학과 20명(정원외)】

가. 석사, 박사학위과정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과	학위명	학과	전공(석사 포함)	학위명
인문 사회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문학박사
	문예창작학과	문학석사	문예창작학과	문예창작, 문예이론, 독서, 아동문학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영어영문학과	영어학, 영문학, 영어교육, 영번역(석사)	문학박사
	사학과	문학석사	사학과	한국사, 기록관리학	문학박사
	고고미술사학과	문학석사	고고미술사학과	고고학, 미술사학, 박물관관리학	문학박사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과	평생교육 및 교육사회, 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공학 , 교육행정, 교육상담	교육학박사
	중어중문학과	문학석사	-	중국어번역, 중국문학	-
	법학과	법학석사	법학과	공법, 사법, 형사법, 기초법·경제법·사회법	법학박사
	정치학과	정치학석사	정치학과	정치이론, 정치사 및 비교정치, 국제정치	정치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과	조직관리, 재무행정, 지방행정 및 도시정책	행정학박사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경제학과	경제학	경제학박사
	사회학과	사회학석사	사회학과	사회심리·사회제도 및 사회문제, 산업사회·사회계층 및 사회변동	사회학박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사회복지학(석사)	-
	신문방송학과	언론학석사	신문방송학과	언론학	언론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과	인사·조직, 운영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경영학박사
	무역학과	경제학석사	무역학과	무역학	경제학박사
	회계학과	경영학석사	회계학과	회계학	경영학박사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학석사	관광경영학과	관광산업경영, 관광이론 및 개발	관광경영학박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석사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학	경영학박사
	금융학과	경제학석사	-	금융학(석사)	-
자연 과학	수학과	이학석사	수학과	해석학, 대수학, 기하학 및 위상수학, 통계학 및 응용수학	이학박사
	물리학과	이학석사	물리학과	핵 및 플라즈마물리, 응집물질물리	이학박사
	화학학과	이학석사	화학학과	물리화학, 유기 및 생화학, 무기 및 분석화학	이학박사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생명과학과	생명과학	이학박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 임상영양학(석사)	이학박사
	아동가족학과	아동가족학석사	-	아동가족(석사)	-
	의상섬유학과	이학석사	의상섬유학과	패션뷰티디자인, 섬유산업학	이학박사
	생명공학과	이학석사	생명공학과	생명공학	이학박사
	응용생명과학과	이학석사	응용생명과학과	식물생명공학, 응용생물공학, 생명화학	이학박사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간호학과	임상간호학, 지역사회간호 및 간호관리학, 중환자전문간호학(석사)	간호학박사
	건강과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의약생명공학, 건강관리학	이학박사
	의과학과	이학석사	의과학과	의과학	이학박사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 과	학위명	학 과	전 공(석사 포함)	학위명
공학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건축공학과	건축공학	공학박사
	건축학과	공학석사	건축학과	건축학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공학석사	토목공학과	구조 및 토질공학, 상하수도 및 수공학, 측량 및 건설관리학, 토목공학(국제화프로그램)	공학박사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기계공학과	재료 및 설계공학, 열 및 유체공학, 생산 및 제어공학	공학박사
	화학공학과	공학석사	화학공학과	화학공학, 공업화학	공학박사
	전기공학과	공학석사	전기공학과	전기기기 및 전력전자, 제어 및 전력시스템, 센서 및 재료공학	공학박사
	산업경영공학과	공학석사	산업경영공학과	생산 및 품질시스템, OR 및 물류시스템 인간공학 및 안전시스템	공학박사
	환경공학과	공학석사	환경공학과	환경 및 에너지공학	공학박사
	금속공학과	공학석사	금속공학과	금속공학	공학박사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공학박사
	도시계획·조경학과	공학석사	도시계획·조경학과	도시공학, 조경학	공학박사
	에너지·자원공학과	공학석사	에너지·자원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	공학박사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	공학석사	-	조선해양플랜트	-	
예체	체육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과	체육응용과학, 체육철학사회	체육학박사
	태권도학과	체육학석사	태권도학과	태권도학, 국제태권도학, 운동처방재활	체육학박사
	미술학과	미술학석사	미술학과	한국화, 서양화, 판화, 조각, 공예	미술학박사
	음악학과	음악학석사	-	성학(석사), 기악(석사), 작곡(석사)	-
	조형디자인학과	디자인학석사	조형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 섬유디자인	디자인학박사
의학	의학과	의학석사	의학과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미생물학, 예방의학, 기생충학, 의공학, 내과학, 일반외과학, 정형외과학, 신경외과학, 흉부외과학, 성형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정신건강의학, 신경과학, 비뇨기과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진단검사의학, 마취과학, 영상의학, 치료방사선과학, 피부과학, 가정의학, 재활의학, 핵의학, 직업환경의학, 치의학	의학박사

나. 학·연·산 협동과정

연구소명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 과	전 공	학위명	학 과	전 공	학위명
부산발전연구원, 한국예탁결제원	국제법무학과	국제관계-국제금융, 재난안전정책	법학석사	국제법무학과	국제관계-국제금융, 재난안전정책	법학박사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신소재물리학과	신소재물리학	이학석사	신소재물리학과	신소재물리학	이학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융합과학기술학과	융합과학기술	공학석사 (융합과학기술)	융합과학기술학과	융합과학기술	공학박사 (융합과학기술)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부산센터	화학공학과	화학공학	공학석사	화학공학과	화학공학	공학박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속공학과	금속공학	공학석사	금속공학과	금속공학	공학박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광역시소방안전 본부 (주)태평양해양산업	기업재난관리학과	안전융합콘텐츠, 빅데이터정보보안 정책	재난관리학석사	기업재난관리학과	안전융합콘텐츠, 빅데이터정보보안 정책	재난관리학박사
농촌진흥청	응용생명과학과	응용생명과학	이학석사	응용생명과학과	응용생명과학	이학박사

다. 학과간협동과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 과	전 공	학위명	학 과	전 공	학위명
음악문화학과	음악문화학, 실용음악, 음악재활	음악학석사	음악문화학과	음악문화학, 실용음악, 음악재활	철학박사
-	-	-	항만-물류시스템학과	항만-물류시스템	공학박사
-	-	-	예술학과	예술학	예술학박사
생명의료윤리학과	생명의료윤리학	철학석사	생명의료윤리학과	생명의료윤리학	철학박사
영유아학과	영유아교육학	영유아교육학석사	영유아학과	영유아교육학	영유아교육학박사
기업정책학과	정책학	정책학석사	기업정책학과	정책학	정책학박사
-	-	-	의료상담심리학과	의료행정학 상담심리치료학	의료상담심리학박사 (의료행정학) 의료상담심리학박사 (상담심리치료학)

라. 계약학과(정원외)

계열	석사학위과정			
	학과	전공	학위명	정원
공학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스마트팩토리, 기계-조선융합시스템, 생산기술	공학석사	20명

2. 전문대학원

전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과	전공	학위명	정원	학과	전공	학위명	정원
국제전문 대학원	국제 학과	글로벌통상금융전공	국제학 석사 (글로벌통상금융)	30명	국제 학과	글로벌통상금융전공	국제학 박사 (글로벌통상금융)	20명
		글로벌한국학전공	국제학 석사 (글로벌한국학)			글로벌한국학전공	국제학 박사 (글로벌한국학)	
		글로벌다문화전공	국제학 석사 (글로벌다문화)			글로벌다문화전공	국제학 박사 (글로벌다문화)	
법학전문 대학원	-	-	법학전문석사	80명	-	-	법학전문박사	10명
의학전문 대학원	-	-	-	-	-	-	-	-

3. 특수대학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정원
	학과	전공	학위명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70명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교육심리및상담전공 유아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영양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디자인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 기계교육전공 다문화교육전공 독서교육전공	교육학석사	169명
산업정보대학원	산업경영공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환경관리학과 건축공학과 금속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조경학과 항만물류시스템학과 건설사업관리학과 그린에너지시스템학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0명
사회복지대학원	보건복지상담학과	사회복지행정전공 상담심리치료학전공 보건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석사 상담심리치료학석사 보건행정학석사	50명
법무대학원		경찰법학전공 부동산법학전공	법학석사(경찰법학) 법학석사(부동산법학)	20명
문화예술대학원	아동미술학과 문화예술매니지먼트학과 실용음악학과 생활문화예술학과		예술학석사	0명

[별표 2]

대학원 학위종별 후드색상

대 학 원	석·박사학위명	색 상
일반대학원	철 학	진감색(Dark Blue)
	문 학	흰색(White)
	교 육 학	하늘색(Light Blue)
	법 학	진자주색(Purple)
	정 치 학	남색(Peacock Blue)
	행 정 학	남색(Peacock Blue)
	언 론 학	남색(Peacock Blue)
	경 제 학	진밤색(Copper)
	사 회 학	진홍색(Crimson)
	사회복지학	남색(Peacock Blue)
	경 영 학	담갈색(Drab)
	관광경영학	보라색(Violet)
	이 학	노랑색(Golden Yellow)
	체 육 학	황록색(Sage Green)
	공 학	오렌지색(Orange)
	가 정 학	밤색(Mareen)
	의 학	진녹색(Green)
	간 호 학	살구색(Apricot)
	음 악 학	분홍색(Red Purple)
	미 술 학	황토색(Yellow DARTH)
	디 자 인 학	은색(Silver)
	예 술 학	진감색(Dark Blue)
보 육 학	하늘색(Light Blue)	
아동가족학	황록색(Sage Green)	
영유아교육학	하늘색(Light Blue)	
정책학	남색(Peacock Blue)	
의료상담심리학	노랑색(Citron)	
재난관리학	남색(Peacock Blue)	
국제전문대학원	국 제 학	보라색(Violet)
경영대학원	경 영 학	담갈색(Drab)
교육대학원	교 육 학	하늘색(Light Blue)
산업정보대학원	공 학	오렌지색(Orange)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상담심리치료학 보건행정학	남색(Peacock Blue)
법무대학원	법 학	진자주색(Purple)
문화예술대학원	예 술 학	진감색(Dark Blue)

* 후드 내부의 바탕색상은 교색(남색)으로 하고 후드 하단 27cm위에 13.5cm폭의 백색천을 붙인다.

* 박사학위복은 소매(폭 2인치, 3선)와 앞단(폭 4인치)에 검은 색 비로드를 붙인다.

* 학위모 수술색상은 석사모는 흑색, 박사모는 황금색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기 (1)

박(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학과 및 전공:

논문: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위의 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박사(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동아대학교 대학원장 (○○○학박사) ○ ○ ○(인)

본 대학교 대학원장의 증명을 인정하여 이에 학박사(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학박사) ○ ○ ○(인)

학위번호 :

[별지 제2호 서식]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기 (2)

박(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

논문: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위의 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박사(석사)(○○○ 전공)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동아대학교 (○○)대학원장 (○○○○학박사) ○ ○ ○(인)

본 대학교 (○○)대학원장의 증명을 인정하여 이에 학박사(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학박사) ○ ○ ○(인)

학위번호 :

[별지 제3호 서식]

대학원 석사 학위기 (3)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학석사(○○○ 전공)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동아대학교 (○○)대학원장 (○○○학박사) ○ ○ ○(인)

본 대학교 (○○)대학원장의 증명을 인정하여 이에 ○○○ 학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학박사) ○ ○ ○(인)

학위번호 :

[별지 제4호 서식]

대학원 명예박사 학위기 (1)

명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는 하여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발전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으므로
명예 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서 의결하였
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동아대학교 대학원장 (○○○학박사) ○ ○ ○(인)

본 대학교 대학원장의 증명을 인정하여 이에 명예 학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학박사) ○ ○ ○(인)

학위번호 :

[별지 제5호 서식]

대학원 명예박사 학위기 (2)

명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는 하여 인류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냈으므로 명예
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서 의결하였
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동아대학교 대학원장 (○○○학박사) ○ ○ ○(인)

본 대학교 대학원장의 증명을 인정하여 이에 명예 학박사 학위를 수여
함.

년 월 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학박사) ○ ○ ○(인)

학위번호 :

[별지 제6호 서식]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과정 수료증

수 박(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년 월 일생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 (○○) 학과 (○○ 전공) 소
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그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동아대학교 (○○)대학원장 (○○○○학박사) ○ ○ ○(인)

본 대학교 (○○)대학원장의 증명을 인정하여 이에 본 증을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학박사) ○ ○ ○(인)

[별지 제7호 서식]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 연구과정 이수증

이 박(석) 제 호

이 수 증

성 명

년 월 일생

연구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 (○○)학과 (○○ 전공)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연구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동아대학교 (○○)대학원장 (○○○학박사) ○ ○ ○(인)

본 대학교 (○○)대학원장의 증명을 인정하여 이에 본 증을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학박사) ○ ○ ○(인)

2.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2장에 의거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일반전형

제2조(지원자격) 각 대학원의 일반 학위과정인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의 일반전형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 가.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취득예정자
-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박사학위과정

-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취득예정자
-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상이한 지원자는 대학원 해당 학과 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구비서류) 각 대학원의 일반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 가.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명서 1부
- 다.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라.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현역군인에 한함) 1부

2. 박사학위과정

- 가. 입학지원서(소정 양식) 1부
- 나. 석사학위(예정)증명서 1부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명서 1부
- 다. 학사 및 석사과정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라. 연구계획서 1부
- 마.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현역군인에 한함) 1부
- 바. 학과책임교수의 지원승인서[소정양식,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

와 상이한 지원자에 한함] 1부

제4조(전형방법) 서류심사와 전공구술고사를 실시한다.

1. 서류심사
 - 가. 대학 및 대학원 성적
 - 나. 연구계획서(박사학위과정에 한함)
2. 전공구술고사
 - 가. 전공지식
 - 나. 학문에 대한 열정과 태도

제5조(전형위원 위촉 및 구성) ① 각 대학원장은 소속 대학원 각 학과의 강의담당 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을 위촉한다.

② 서류심사 및 전공구술고사의 전형위원은 학과책임교수를 포함하여 학과별로 각각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원은 그 특성에 따라 전형위원 구성을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배점 및 합격기준) ① 배점 및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전형은 서류심사와 전공구술고사로 실시하며,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은 불합격으로 한다.

2. 서류심사와 전공구술고사의 배점은 해당학과에서 정할 수 있다.

②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1항의 합격 최저점수는 학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 각 대학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합격의 결정 및 입학 취소) 대학원장은 학과별 입학정원과 지원자의 입학전형 성적을 대학원위원회에 부의하여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을 결정한다.

① 각 대학원장은 학과별 입학정원과 지원자의 입학전형 성적을 대학원위원회(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을 결정한다.

②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때는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신입생 등록 및 입학 확정)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된다.

제 2 장 특별전형

제9조(전형시기) 특별전형은 일반전형 이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선발인원) 선발인원은 모집 총 정원의 일정 범위이내로 한다.

제11조(지원자격) 각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제2조제1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
2. 박사학위과정 : 제2조제2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해당 전공분야에서 상당한 경력 또는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사람

제12조(지원구비서류)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하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연구실적물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전형방법)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하되, 서류심사에 전공경력, 연구실적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한다.

제14조(준용) 제2장 특별전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 일반전형 및 대학원위원회(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입학전형 시행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입학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13조에 의거 각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입학 허가 및 모집인원)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통합과정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①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 학칙」 제13조에 따라 대학원위원회(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통합과정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제3조(지원자격) 각 대학원 편입학 전형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일정기간 수학한 사람 및 수료자
2. 박사학위과정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일정기간 수학한 사람 및 수료자

제4조(지원서류) 각 대학원 편입학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2. 전적 대학원 수료(재적)증명서 1부
3. 대학(원)졸업증명서 1부
4. 전적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제5조(전형방법) 편입학 전형은 서류전형 및 구술고사로 한다.

제6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편입학한 사람은 대학원 학칙에 규정한 수업연한에서 전적 대학원 이수 학기를 제외한 학기를 이수하되, 소속 대학원에서 최소한 두 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고, 소정의 교과 및 논문연구(연구보고)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편입학한 학생의 본교 재학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7조(성적인정) 편입학한 학생의 성적인정은 다음 범위 안에서 학과 책임교수는 각 대학원의 학과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전적 대학원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고려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한다.

편입학기	성적인정학점			
	대학원, 국제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 제외)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2	9학점 이내	12학점 이내	6학점 이내	8학점 이내
3	18학점 이내	24학점 이내	12학점 이내	12학점 이내

제8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 및 대학원위원회(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4. 대학원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18조에 의거, 각 대학원의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과정의 편성) ①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별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1. 석사학위과정

가. 교과학점(24학점 이상)

- (1) 공통필수과목
- (2) 전공과목
- (3) 일반선택

나. 논문연구(2학점, 해당자)

다. 보충학점(해당자)

2. 박사학위과정

가. 교과학점(36학점 이상)

- (1) 공통필수과목
- (2) 전공과목
- (3) 일반선택

나. 논문연구(4학점)

다. 보충학점(해당자)

3. 통합과정

가. 교과학점(60학점 이상)

- (1) 공통필수과목
- (2) 전공과목
- (3) 일반선택

나. 논문연구(6학점)

다. 보충학점(해당자)

② 교과목 개설은 학과에서 주관한다. 다만, 일반선택 과목은 대학원에서 주관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③ 교과목의 학점 단위는 일반교과는 3학점, 논문연구는 2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④ 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교과과정 및 최저이수학점, 교과목과 논문연구 및 연구보고 학점단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교과과정의 설정 및 개정) ① 책임교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과정의 교과목을 선정하여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교과과정표를 작성하고, 이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선정된 교과목은 2년 이내에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과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책임교수는 학과 교수회의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교과목의 개설 및 폐강) ① 책임교수는 교과과정표 중에서 다음 학기에 개강할 과목을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설교과목 중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문학계열 소속 학과 및 학과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 각 대학원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은 정규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설한다.

제5조(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전공 배정 및 변경) ① 각 대학원 학생이 학과(전공)를 지정하여 입학한 때에는 학과(전공)를 변경하지 못한다.

② 각 대학원 재학생이 전공지정 없이 입학한 때에는 둘째 학기 종료일까지 전공지원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전공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고, 셋째 학기 개강일 후 2주내에 전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셋째 학기 개강일 후 2주 이후에도 학기를 연장하여 전공의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전문대학원은 둘째학기 수강정정기간까지 전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보충과목 이수 대상자) ① 하위 과정과 학과(전공)가 다른 사람은 책임교수가 지정하는 보충과목을 그 하위 과정의 교과목 중에서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하며, 이는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1.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3학점, 박사학위과정 6학점 이상으로 한다.

2. 국제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3학점, 박사학위과정 6학점 이상으로 한다.

3.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6학점(경영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무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은 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전공에 입학한 사람은 보충과목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대학원 학칙」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하위과정과 학과가 다르거나 유사한 사람에 대한 보충과목 이수 및 인정학점의 한도 등에 관한 결정은 학과(전공)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보충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보충과목은 수강신청학점에는 포함되나 수료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7조(보충과목의 지정) 보충과목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이수 대상자별로 교과목을 선정하고, 책임교수는 이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수강신청) ① 신입생은 학기 개강 전 1주일 이내에, 재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직전 학기가 끝나기 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매 학기 수강신청 교과학점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논문)
 - 가. 석사학위과정 : 9학점까지
 - 나. 박사학위과정 : 12학점까지
 - 다. 통합과정 : 9학점까지
 2. 특수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무논문 석사학위) : 6학점까지
 다만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직과목은 학기당 4학점(학교현장실습교과목 신청학기에는 6학점), 보충과목은 학기당 6학점(총 28학점)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수 가능한 교직과목은 교육대학원에서 개설한 과목으로 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교육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부에서 개설한 교직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충과목을 포함하여 3학점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 ③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을 학점의 제한 없이 이수할 수 있고 이를 수료학점에 산정한다. 다만 학과 책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정규등록 및 연구등록, 수업연한 초과자의 수강등록, 등록금 반환)
- ① 정규등록이란 「대학원 학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연구등록이란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학위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수업료의 15%를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학위취득 할 때까지 1회에 한하여 징수한다.
 - ③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자가 학칙 제16조에 의한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1. 1학점~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2. 4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④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입학일)~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개시 30일 초과~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개시 60일 초과~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개시 90일 초과	반환하지 않음

제10조(논문연구 및 연구보고) 논문연구란 지도교수가 제시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교과로써, 석사학위과정에서는 최종 학기 2학점, 박사학위과정에서는 최종 두 학기 각 2학점, 통합과정에서는 최종 세 학기 각 2학점씩 이수하여야 한다.

① 논문연구 또는 연구보고 학점은 학생이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지도하는 내용에 대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석사학위과정은 최종 학기 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최종 두 학기 각 2학점, 통합과정은 최종 세 학기 각 2학점씩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 및 특수대학원은 [별표]와 같다.

② 논문연구 또는 연구보고 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되지만 수강신청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1조(수강신청 교과목의 변경 및 취소) ①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그 개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수업개시일로부터 5주 이내에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 지도교수, 책임교수 및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교과목의 수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수강 교과목을 취소한 사람은 다른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취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한다.

제12조(성적 평가보류) ① 성적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I” (Incomplete)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당해학기 학위수여 예정자인 경우는 “I”로 평가할 수 없다.

② “I”로 평가된 성적은 담당 교강사가 추가 또는 사후 제출된 자료로 성적을 평가하여 성적 정정기간 동안 “I” 대신 평가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성적확정 후 성적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I”는 자동적으로 “F”로 처리되고, 이후는 성적정정원 제출에 의한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제13조(교과목 담당교수 및 담당시수) 각 대학원의 강의, 실험 및 실습을 담당하는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강의 시수는 학기당 한 과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두 과목까지 할 수 있다.

1. 전임교원

2. 석좌교수 및 명예교수
3.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다만 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 제14조(수업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 학기 개강일 전까지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수업)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16조(성적평가)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종강 후 시험, 과제물, 출석상황 등의 각종 자료를 취합하여 성적을 부여하고, 학업성적 평가표는 정해진 기간 내에 교무처 학사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 학기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과목 담당교수는 별도의 방법으로 학업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 ③ 신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는 시험일자 변경원과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7조(성적평가 방법, 입력 및 공시, 성적정정) ① 매 학기말 성적평가 방법은 「대학원 학칙」 제28조에 따른다.
-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가 종료된 후 시험, 과제물, 출석상황 등을 종합하여 성적을 부여하고, 시험기간 종료 후 각 대학원이 정한 기간 내에 성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 시험기간 종료 후 각 대학원이 정한 기간(이하 “성적 공시기간”이라 한다)까지 학생의 성적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④ 학생은 제3항의 성적 공시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성적을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 공시기간 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이의 신청을 받은 교수는 학생의 이의를 확인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성적공시기간 내 성적을 정정하여야 하며, 성적은 성적 공시기간 종료 후 확정된다.
- ⑥ 확정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성적착오(입력착오, 오기 또는 누락)가 있을 경우에는 성적확정 후 7일 이내에 담당교수의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답안지와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정정원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출석부) 출석부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각 대학원이 정한 기간동안 직접 관리·보존한다. 다만 비전임교원의 경우 소속 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 보관한다.
- 제19조(재수강) 학생은 C+ 이하 등급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수강에 의하여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확정된 때에는 이미 취득한 성적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20조(강사추천) 학과책임교수는 교과 운영상 강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강 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학술교류협정대학 교과목 및 학점인정) ① 「대학원 학칙」 제24조제2항에 의거 협정대학원에서 취득한 교과목명과 학점은 그대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성적(평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국외의 협정대학원에서 취득한 교과목명은 국제통용어인 영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정대학원에서 취득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은 소속 학과책임교수의 확인으로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교과과정 및 교과목 등록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③ (적용례)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대학원 교과과정 및 교과목 등록에 관한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학원별 교과구분 및 최저이수학점

1. 국제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글로벌통상금융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글로벌통상금융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글로벌다문화전공		
구분	과목	학점	구분	과목	학점
공통필수	2	6	공통필수	2	6
전공선택 (본인전공 과목 최소 2과목 이수)	6	18	전공선택 (본인전공 과목 최소 4과목 이수)	10	30
논문연구	1	2	논문연구	2	4
합 계	9	26	합 계	14	40
글로벌다문화전공					
구분	과목	학점			
공통필수	2	6			
전공필수	3	9			
전공선택	3	9			
논문연구	1	2			
합 계	9	26			

※ 국제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은 논문학위과정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에는 무논문학위과정을 둔다.
 ※ 본인의 전공에서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선택과목 6학점(법무부인증 다문화 2급전문가 자격증 희망자는 제외),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선택과목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석사학위과정의 글로벌다문화전공자는 전공필수 9학점, 전공선택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글로벌다문화전공자가 법무부 지정 다문화 사회전문가 2급 자격인정 수료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자격 : 본 대학원 글로벌다문화전공으로 석사학위 취득자 혹은 글로벌다문화전공 박사과정 수료자).

무논문석사학위과정								
글로벌통상금융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글로벌다문화전공		
구분	과목	학점	구분	과목	학점	구분	과목	학점
공통필수	2	6	공통필수	2	6	공통필수	2	6
						전공필수	3	9
전공선택	8	24	전공선택	8	24	전공선택	5	15
연구보고	1	2	연구보고	1	2	연구보고	1	2
합 계	11	32	합 계	11	32	합 계	11	32

2. 특수대학원

(단위 : 학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무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공통과목 : 4이상	공통과목 : 12	공통기초 : 6	전공필수 : 6	전공필수 : 4	전공필수 : 12
전공과목 : 20이상 (교과교육학:6학점 이상, 교과내용학:10학점 이상)	전공과목 -논 문 : 12 -무논문 : 18	전공과목 -논 문 : 18 -무논문 : 21	전공선택 -논 문 : 18 -무논문 : 21	전공선택 -논 문 : 20 -무논문 : 26	전공선택 -논 문 : 12 -무논문 : 15
-논문연구 : 4 -연구보고 : 2	-논문연구 : 2 -연구보고 : 2	-논문연구 : 2 -연구보고 : 3	-논문연구 : 2 -연구보고 : 3	-논문연구 : 2 -연구보고 : 2	-논문연구 : 2 -연구보고 : 2
-논 문 : 28 -무논문 : 30	-논 문 : 26 -무논문 : 32	-논 문 : 26 -무논문 : 30	-논 문 : 26 -무논문 : 30	-논 문 : 26 -무논문 : 32	-논 문 : 26 -무논문 : 29
<p>※ “논문”은 논문학위과정을, “무논문”은 무논문학위과정을 말한다. ※ 교육대학원의 교직과목은 22학점으로 하고, 수료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한다.</p>					

5.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26조에 의거 각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응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시험 : 1학기 이상 등록한 사람
2. 종합시험 : 각 과정의 이수학점(석사학위과정 : 18학점, 박사학위과정 : 27학점, 통합과정 : 4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가. 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18학점, 박사학위과정 27학점, 통합과정 45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
 - 나. 특수대학원 : 18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 다만 교육대학원은 3학기 이상 등록한 사람
 - 다. 가, 나목의 경우 보충과목 이수학점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절차)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대학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지원서를 학과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기일 내에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횟수 및 시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연 2회 실시하고, 그 시기는 각 대학원에서 정한다.

제5조(시험방법)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필기시험만으로 한다.
2. 시험방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종합시험의 방법은 학과책임교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 각 대학원장은 소속 대학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속 대학원운영위원회에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아래의 기관에서 인증한 소정의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은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은 응시일 익일부터 소속 대학원 영어시험일까지 2년 이내의 성적에 한한다.

가. 공인기관

구 분		영어영문학 이의 전공자	영어영문학 전공자	비고
TOEIC		700점 이상	750점 이상	석·박사 동일. 단, 한국어는 외국인에 한함
TOEFL	PBT	535점 이상	550점 이상	
	CBT	207점 이상	213점 이상	
	IBT	76점 이상	79점 이상	
TEPS		600점 이상	650점 이상	
IELTS		5.5 이상	6.0 이상	
한국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나. 본 대학교

구 분		면제기준	비고
대학원	영어강좌 프로그램	70점 이상	석·박사 동일
	영어 시험	60점 이상	

※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은 지문을 한국어로 출제하고 영어로 답하게 할 수 있다.

5. 소속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영어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영어권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출제 및 채점위원) 외국어시험 출제위원은 각 대학원의 강의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하고, 종합시험 출제위원은 학과책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채점위원은 출제위원이 겸한다.

제7조(출제과목 및 범위) 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출제과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어시험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를 시험하고, 각 학위과정별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하되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2. 종합시험

전공영역의 전문지식과 연구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학 중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시험하며, 석사학위과정은 2인 이상의 출제위원이 2과목,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3인 이상의 출제위원이 3과목에 걸쳐 출제한다.

제8조(합격기준) 외국어 및 종합시험은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외국어 시험은 60점 이상, 종합시험은 과목당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9조(합격인정 및 결과보고) ① 외국어 및 종합시험 결과는 대학원위원회(국제전문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함으로써 합격이 인정된다.

② 각 대학원장은 시험의 시행 결과와 합격자 명단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 ③ (적용례)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 제5조 제3호를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중전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26조에 의거 각 대학원의 학위청구 및 학위취득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석사학위 청구 논문

제2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및 변경) ① 지도교수는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한다. 다만, 예능계열 학과의 경우 석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부교수, 교수도 할 수 있다.

② 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선임할 수 있다.

③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강의전담·연구전담·산학협력전담 전임교원은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다만, 예능계열 학과의 경우 공동지도교수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2인의 공동지도교수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⑤ 공동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 교외전문가로 구성하고, 교외전문가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학원위원회(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논문연구시수 인정 등 지도교수와 관련된 제반 행정사항은 본 대학교 지도교수 1인이 담당한다.

1. 타 대학교 전임교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과 동등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2.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 분야에 근무한 사람
3. 기타 위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소속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세부 기준 및 그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⑥ 지도교수는 첫째 학기말까지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학과책임교수의 추천으로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다.

⑦ 지도교수의 변경은 논문지도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책임교수의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되, 변경 시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편입학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입학과 동시에 학과책임교수의 추천으로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3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계획 발표) ① 학위청구 예정자는 예비심사 및 본심사 실시 또는 석사논문에 상응하는 논문 대체실적을 제출하기 최소한 학기 전에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소속 학과 교수 및 학생의 참석 하에 학위 청구를 위한 논문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보고서 제출자는 예외로 한다.

② 학과별 논문 대체실적 인정 현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학위청구논문 및 연구보고서 제출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사람은 석사학위 청구 논문 또는 학과에서 인정하는 석사논문에 상응하는 논문 대체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1.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을 이수한 사람
 2. 「대학원 학칙」 제22조에 따른 보충학점을 취득한 사람(해당자에 한함)
 3. 4학기(학·석사연계과정은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사람. 다만 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 및 특수대학원은 5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사람
 4. 논문계획 발표 및 한 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그 추천을 받은 사람
 5.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경영대학원은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 ②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를 위한 논문 또는 논문 대체실적의 선택은 둘째 학기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셋째 학기 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무논문학위과정)

- ① 「대학원 학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 무논문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각 대학원의 무논문학위과정에 필요한 수료 요건은 「대학원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의 [별표]에 따른다.
- ③ 셋째 학기(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은 첫째 학기) 개강일 후 2주내에 논문·무논문 학위과정지원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논문·무논문학위과정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넷째 학기(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은 둘째 학기) 개강일 후 4주내에 논문·무논문학위과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넷째 학기 개강일 4주 이후에도 학기를 연장하여 논문·무논문 학위과정의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및 판정) 논문계획 발표를 한 사람이 학위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기 초 소정의 기일 내에 학과(전공)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학과책임교수 및 지도교수는 논문 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 주제의 타당성, 연구가치, 내용 및 전개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본 심사에 회부 여부를 판정하여 소정의 양식에 의거, 소속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의 경우 연구보고서 제출자도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학위청구논문 본심사 신청 구비서류) 예비심사 합격자가 본심사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연구보고서) 심사요구서 1부
2.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및 학과책임교수 추천서 1부
3. 연구윤리서약서 1부

제8조(학위청구논문 및 연구보고서 원고 제출) 석사학위 청구자는 예비심사 합격 후 소정의 기일 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책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본심사용 논문 3부(연구보고서 1부)를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 및 연구보고서 심사위원 선정과 자격) ① 학과책임교수는 논문 본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있을 경우 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후보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각 대학원장은 심사위원장 및 위원후보를 대학원위원회(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되,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 연구보고서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담당한다.

⑤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고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며, 심사결과를 심사요지와 함께 소정의 기일 내에 학과책임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의 자격 및 변경은 제2조에 따른다.

제10조(논문 및 연구보고서 제출 자격심의) 대학원위원회(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학위청구논문 및 연구보고서 제출자의 자격을 심의·인준한다.

제11조(학위청구논문 본심사) ① 심사위원은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학위청구논문의 본심사를 1회 이상, 3회 이내 실시·완료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 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분, 역본 또는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본심사는 논문의 내용과 체계가 학위논문으로서 적합한가의 여부를 판정한다.

④ 논문이 당해 학기 내에 완성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는 본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12조(논문 및 연구보고서 평가방법) ① 학위 논문의 평가는 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각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② 평가방법은 논문(연구보고서)평가 및 구술시험으로 한다.

③ 연구보고서는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13조(최종 구술시험)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본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구술시험을 행한다.

② 구술시험의 평가 방법은 논문 본심사의 평가 방법을 따른다.

제14조(학위청구논문 및 연구보고서 판정) ① 논문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와 함께 판정결과를 소정의 기일 내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연구보고서 판정결과를 소정의 기일 내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대학원장은 심사요지와 판정결과를 대학원위원회(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 논문의 합격여부를 확정한다.

제15조(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제출) 논문 또는 학과에서 인정하는 석사논문에 상응하는 논문 대체실적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지적된 사항을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수정·보완 후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라 완성된 논문 또는 논문 대체실적 또는 연구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위논문 파일을 업로드한 후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허락서 1부를 도서관 및 대학원 행정지원실에 각각 제출
2. 심사위원이 인준한 학위논문 인쇄본을 도서관(4부) 및 대학원 행정지원실(1부)에 제출
3. 연구보고서 2부는 소속 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제출
4. 학과에서 인정하는 논문 대체실적(1부)을 대학원에 제출

제16조(논문의 작성) ① 학위 논문은 국·한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승낙 하에 영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2페이지 이내의 국문 및 영문 요약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위 논문은 해당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기본지식이 밀바탕이 되어 있고 그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서술되어 있어야 한다.

제17조(학위청구논문의 체제) 학위청구논문의 체제는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 지침」에 따른다.

제 3 장 박사학위 청구 논문

제18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및 변경) 박사학위 청구 논문 지도교수의 자격 및 변경은 제2조에 따른다.

제19조(지도위원회 구성) ① 지도교수는 학생의 교과지도 및 논문지도 등을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은 지도교수 위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도교수와 학과책임교수의 추천으로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지도위원은 본 대학원 강의 담당 자격을 갖춘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며,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단, 학생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 1명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계획 발표) 박사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계획 발표는 제3조에 따른다.

제2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되는 자는 박사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을 이수한 자
2. 「대학원 학칙」 제22조에 따른 보충학점(해당자에 한함 / 12학점 이상인 자는 9학점)을 이수한 자
3. 4학기(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4. 논문연구 2학점(통합과정은 4학점) 이상 취득한 자
5. 논문계획 발표 및 두 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그 추천을 받은 자
6.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7. 입학 이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과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구 실적(대학원 요람 참조)이 있는 자

제22조(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및 판정) 박사학위 청구 논문 예비심사 및 판정은 제6조에 따른다.

제23조(학위청구논문 본심사 신청 구비서류) 예비심사 합격자가 본심사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 1부
2.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및 학과책임교수 추천서 1부
3. 연구윤리서약서 1부

제24조(학위청구논문 원고 제출) 박사학위 청구자는 예비심사 합격 후 소정의 기일 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책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본심사용 논문 5부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자격) ① 학과책임교수는 논문 본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있을 경우 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후보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심사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후보를 대학원위원회(국제전문대학원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2인 이내의 교외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고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고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며, 심사결과를 심사요지와 함께 소정의 기일 내에 학과책임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의 자격 및 변경은 제2조에 따른다.

제26조(논문제출 자격심의) 대학원위원회(국제전문대학원은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학위 청구 논문 제출자의 자격을 심의·인준한다.

제27조(학위청구논문 본심사) ① 심사위원은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학위 청구논문의 본심사를 1회 이상, 3회 이내 실시·완료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 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분, 역본 또는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본심사는 논문의 내용과 체계가 박사 학위논문으로서 적합한가의 여부를 판정한다.

④ 논문이 당해 학기 내에 완성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는 본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28조(논문 평가방법) 학위 논문의 평가는 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심사위원 4인 이상이 각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29조(최종 구술시험)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본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구술시험을 행한다.

② 구술시험의 평가방법은 논문 본심사의 평가방법을 따른다.

제30조(학위청구논문의 판정) 제14조에 따른다.

제31조(학위논문 제출)논문심사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지적된 사항을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수정·보완 후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라 완성된 논문을 소정의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위논문 파일을 업로드한 후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허락서 1부를 도서관 및 소속 대학원 행정지원실에 각각 제출

2. 심사위원이 인준한 학위논문 인쇄본을 도서관(4부) 및 소속 대학원 행정지원실(1부)에 제출

제32조(논문의 작성) ① 학위 논문은 국·한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승낙 하에 영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2페이지 이내의 국문 및 영문 요약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위 논문은 새로운 지식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지식 또는 기술을 수정, 확대하고 논제가 분명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33조(학위 논문의 체제) 학위 논문의 체제는 제17조를 따른다.

제34조(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 논문은 학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계에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발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5조(논문 및 연구보고서의 재심사) ①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가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절차는 해당학기 경과 후 본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③ (적용례)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중전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논문 제출 자율화에 대한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논문 제출 자율화(논문 또는 논문대체실적 중 선택)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교내 심사위원 및 교외 전문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그 인정 범위

구분	교내 심사위원	교외 전문가(교외 심사위원)
명예교수	본 대학교 소속인 경우 인정	교외 소속인 경우 인정
특임교수	인정	불인정
석좌교수	본 대학교 소속인 경우 인정	교외 소속인 경우 인정
초빙교수	인정	불인정
겸임교수	불인정	학·연·산협동과정의 경우 인정
시간강사	불인정	불인정
교내 타 학과 교수	인정	불인정

[별표 2]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별 학위청구 논문 및 논문 대체실적 인정 현황표
 【석사학위과정 : 63개 학과(전공), 계약학과 석사학위과정 : 1개학과(정원외)】

※ 논문 대체실적 세부기준은 각 학과 내규에 준함

1. 석사학위과정

계열	석사학위과정		계열	석사학위과정	
	학 과	논문 / 논문 대체실적 인정		학 과	논문 / 논문 대체실적 인정
인문 사회	국어국문학과	논문 / 논문 대체실적	공학	건축공학과	논문
	문예창작학과	논문 / 논문 대체실적		건축학과	논문 / 논문 대체실적
	영어영문학과	논문 / 논문 대체실적		토목공학과	논문 / 논문 대체실적
	사학과	논문		기계공학과	논문 / 논문 대체실적
	고고미술사학과	논문		화학공학과	논문
	교육학과	논문		전기공학과	논문
	중어중문학과	논문		산업경영공학과	논문 / 논문 대체실적
	법학과	논문		환경공학과	논문
	정치학과	논문 / 논문 대체실적		금속공학과	논문
	행정학과	논문 / 논문 대체실적		전자공학과	논문
	경제학과	논문 / 논문 대체실적		도시계획·조경학과	논문 / 논문 대체실적
	사회학과	논문		에너지·자원공학과	논문
	사회복지학과	논문		컴퓨터공학과	논문
	신문방송학과	논문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	논문
	예· 체능	경영학과	논문 / 논문 대체실적	체육학과	논문
		무역학과	논문 / 논문 대체실적	태권도학과	논문 / 논문 대체실적
		회계학과	논문 / 논문 대체실적	미술학과	논문 / 논문 대체실적
		관광경영학과	논문 / 논문 대체실적	음악학과	논문
		경영정보학과	논문 / 논문 대체실적	조형디자인학과	논문
		금융학과	논문 / 논문 대체실적	의학	의학과
자연 과학	수학과	논문 / 논문 대체실적			
	물리학과	논문			
	화학과	논문			
	생명과학과	논문			
	식품영양학과	논문			
	아동가족학과	논문 / 논문 대체실적			
	의상섬유학과	논문			
	생명공학과	논문			
	응용생명과학과	논문			
	간호학과	논문 / 논문 대체실적			
건강과학과	논문 / 논문 대체실적				
의과학과	논문				

2. 학연산 협동과정

연구소명	석사학위과정		
	학과	전 공	논문 / 논문 대체실적 인정
부산발전연구원, 한국예탁결제원	국제법무학과	국제관계 · 국제금융	논문/논문 대체실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신소재물리학과	신소재물리학	논문
한국화학연구원	융합과학기술학과	융합과학기술	논문
한국원자력의학원	입자가속기 및 의학물리학과	입자가속기물리학, 의학물리학	-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산센터	화학공학과	화학공학	논문
한국생산기술연구소	금속공학과	금속공학	논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기업재난관리학과	안전융합콘텐츠, 빅데이터정보보안정책	논문/논문 대체실적

3. 학과간협동과정

석사학위과정		
학 과	전공	논문 / 논문 대체실적 인정
음악문화학과	음악문화학, 실용음악	논문
생명의료윤리학과	생명의료윤리학	논문
영유아학과	영유아교육학	논문 / 논문 대체실적
기업정책학과	정책학	논문 / 논문 대체실적

4. 계약학과(정원외)

계 열	석사학위과정		
	학 과	전 공	논문/논문 대체실적 인정
공학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스마트팩토리, 기계 · 조선융합시스템, 생산시스템	논문 / 논문 대체실적

7. 대학원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16조에 의거 각 대학원의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학과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은 두 학기를 이수하고 18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다섯 학기를 이수하고 45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매 학기 학업성적 평균 93점 이상인 사람
2. 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 및 특수대학원은 세 학기를 이수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매 학기 학업성적 평균 93점 이상인 사람
3. 재학기간 중 학생 본인의 연구 실적이 공인된 국내외 학회지에 게재되거나 확정되는 등 연구실적의 탁월성이 인정되는 사람
4. 제3호의 연구실적 탁월성에 대한 판단은 해당 학과 전체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조(신청절차 및 선정) ①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서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재학 둘째(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 및 특수대학원은 셋째, 통합과정은 다섯째) 학기말에 조기졸업 이수신청서(소정양식)를 지도교수 및 학과책임교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조기졸업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4조(수강신청) 조기졸업 신청자는 「대학원 학칙」 제21조제4항에 의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매 학기 6학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등록) 각 학위과정의 조기졸업 대상자는 매 학기 초 소정의 수업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 및 특수대학원은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시험 응시자격) 조기졸업 대상자는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통합과정은 6학기, 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 및 특수대학원은 4학기 초에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7조(학위청구 및 학위취득 자격) 제5조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경영대학원은 종합시험에 합격)한 조기졸업 대상자는 각각 석사학위 청구논문(연구보고서) 및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조기졸업 신청자는 마지막 학기에 교과 학점을 이수하면서 학위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학위청구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은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자격상실) 조기졸업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매학기 학업성적 평균이 93점 미만인 자
2. 학칙 제57조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조기졸업을 포기한 자

제9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과 대학원 제반 규정 및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조기졸업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③ (적용례)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대학원 조기졸업에 관한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54조에 의거 각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정부기관 또는 장학 단체 등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학금의 종류) 각 대학원의 장학금 종류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기준은 따로 정한다.

1. 신입생 특대장학금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입학자 중 학부과정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업료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2. 면학장학금

가. 학업성적이 평균 85점 이상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수업료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나. 장학생의 배정은 학과별로 일정 인원을 배정한 후 그 잔여인원은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고, 학과책임교수에게 선발을 의뢰한다.

3. 교직원 복지장학금

본 대학교(학교법인 동아학숙과 의료원 포함) 교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수업료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다만 일반대학원과 의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교직원 본인은 제외한다.

4. 근로장학금

대학원 소속의 근로학생으로 근무하는 학생에게 수업료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교육조교장학금

가.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교육조교로 근무하는 학생에게 수업료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나. 학기 중 개인 사정으로 조교직을 사임할 시에는 수혜받은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6. 외국인장학금

외국인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대학원위원회(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7. 고시장학금

사법, 행정, 기술, 공인회계사 등 각종 고시에 1차 합격한 전일제 학생에게 수업료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8. 가족장학금

본 대학교에 2명 이상의 가족이 재학하는 경우 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학생 중 연장자에게 수업료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9. 기타 장학금

제4조(장학금 지급제한 등) ① 제3조 각호의 장학금 지급은 동일 수혜기간내에 1인 1종에 한한다. 다만 소속 대학원장이 인정할 경우 장학금의 총액이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종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장학금을 수혜 받은 사람에게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외기관에서 지원하는 1종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학자 및 학칙을 위반한 사람

2. 「대학원 학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제5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③ (적용례)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

2.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대학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49조제3항에 의거, 각 대학원의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각 대학원에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각 대학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전임 교원 중에서 각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7명 이상(당연직 포함)의 교원으로 구성하고 각 대학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 이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고,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2.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지도교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학원 학칙」 제51조에서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대학원 학칙」 제51조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IV. 교과과정 및 교과목 개요

1. 교과목 이수학점 체제
2. 교과과정
3. 교과목 해설

1. 교과목 이수학점 체제

구분	논문학위과정		무논문학위과정		비고
	과목	학점	과목	학점	
전공필수	2	6	2	6	1,2학기
전공선택	6	18	7	21	2,3,4,5학기
논문연구	1	2			5학기
연구보고			1	3	5학기
합 계	9	26	10	30	

2. 교과과정

▣ 공동운영교과목

구분	과목번호	학점	과목명
전공필수 공동교과	C12111	3	인간행동과사회환경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¹⁾
	C12113	3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¹⁾
	C12211	3	발달심리학(Developmental psychology) ²⁾
	C12212	3	상담심리학(Counselling psychology) ²⁾
	C12311	3	보건학개론(Introduction to Public Health) ³⁾
전공선택 공동교과	C12136	3	사회보장론(Social Security) ¹⁾
	C12144	3	복지국가론(Welfare State) ¹⁾
	C12223	3	정신병리학(Psychopathology) ²⁾
	C12232	3	집단상담(Theory and Practice of Group Therapy) ²⁾
	C12329	3	보건사회학(Health Sociology) ³⁾
	C12330	3	보건조직관리론 (Health Organizational Management) ³⁾

※ ¹⁾은 사회복지행정학전공, ²⁾는 상담심리치료학전공, ³⁾은 보건행정학전공 과목임

※ 전공필수 6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에 대하여는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됨

※ 필수 2과목+선택 3과목은 반드시 전공 교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

▣ 보건행정학전공 교과목

구분	과목번호	학점	과목명
논문연구	C12001	2	논문연구(Research for Master's Thesis)
연구보고	C12002	3	특수연구(Special Research)
전공필수	C12311	3	보건학개론(Introduction to Public Health)
	C12312	3	보건행정학(Public Health Administration)
전공선택	C12321	3	보건역학개론(Epidemiology in Health)
	C12322	3	보건통계학(Biostatistics)
	C12323	3	보건정책론(Health Policy)
	C12325	3	보건기획론(Health Planning)
	C12327	3	비교의료제도론 (Medical Care System in ternational Perspective)
	C12328	3	지역사회보건학(Community Health Science)
	C12329	3	보건사회학(Health Sociology)
	C12330	3	보건조직관리론(Health Organizational Management)
	C12331	3	노인보건학(Geriatric Health Care)
	C12332	3	의료마케팅전략(Health Care Marketing Strategy)
	C12333	3	병원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of Hospital)
	C12335	3	보건의료법(Public Health Law)
	C12337	3	보건간호관리학(Public Health Nursing Management)
	C12338	3	병원경영학(Hospital Management)
	C12339	3	보건의료의질관리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in Health Care)
	C12340	3	보건정책동향(Health Policy Trends)
	C12341	3	병원경영사례연구 (Case study of Hospital Management)

▣ 사회복지행정학전공 교과목

구분	과목번호	학점	과목명
논문연구	C12001	2	논문연구(Research for Master's Thesis)
연구보고	C12002	3	특수연구(Special Research)
전공필수	C12111	3	인간행동과사회환경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C12113	3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전공선택	C12121	3	사회복지정책론(Social Welfare Policy)
	C12123	3	사회복지실천론 (Theories and Methods for Social Work practice)
	C12124	3	사회복지실천기술론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C12125	3	사회복지조사론 (Research Methods in Social Welfare)
	C12127	3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 Practice)
	C12136	3	사회보장론(Social Security)
	C12144	3	복지국가론(Welfare State)
	C12145	3	사회복지지도감독론(Social Work Supervision)
	C12146	3	프로그램개발과평가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C12147	3	사회복지자료분석론 (Data Analysis for Social Welfare)
	C12151	3	비영리조직의이해 (Introduction to Nonprofit Organization)
	C12152	3	비영리조직마케팅및홍보 (Marketing & Public Relations for Nonprofit Organization)
	C12153	3	사회복지인적자원관리론 (Human Resources Management)
	C12154	3	사회복지시설운영론 (Human Service Organization Management)
	C12155	3	시민사회와NGO(Civil Society & NGO)
	C12156	3	사회적경제와협동조합 (Social Economy and Cooperative)

구분	과목번호	학점	과목명
전공선택	C12157	3	사회서비스론(Social Services)
	C12158	3	사례관리론(Case Management)
	C12159	3	사회복지윤리와철학(Social Work Values and Ethics)
	C12160	3	아동복지연구(Research on Child Welfare)
	C12161	3	노인복지연구 (Research on Social Work for the Elderly)
	C12162	3	장애인복지연구 (Research on Social Welfare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C12163	3	가족복지연구 (Research on Social Work with Families)
	C12164	3	다문화사회복지연구 (Research on Multicultural Social Work Practice)

▣ 상담심리치료학전공 교과목

구분	과목번호	학점	과목명
논문연구	C12001	2	논문연구(Research for Master's Thesis)
연구보고	C12002	3	특수연구(Special Research)
전공필수	C12211	3	발달심리학(Developmental psychology)
	C12212	3	상담심리학(Counselling psychology)
전공선택	C12221	3	이상심리학(Abnormal psychology)
	C12222	3	성격심리학(Personality)
	C12223	3	정신병리학(Psychopathology)
	C12224	3	심리측정평가 (Psychological Assessment and Evaluation)
	C12225	3	인지발달중재 (Cognitive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C12226	3	인지행동치료(Cognitive-behavioral Therapy)
	C12227	3	모래놀이치료(Sandplay Therapy)
	C12228	3	해결중심치료(Solution Focused Brief Therapy)
	C12229	3	가족치료(Marriage and Family Therapy)
	C12230	3	아동심리치료(Child Psychotherapy)
	C12231	3	부모상담(Parent Counseling)
	C12232	3	집단상담(Theory and Practice of Group Therapy)
	C12233	3	청소년상담(Adolescent Counseling)
	C12235	3	집단미술치료(Group Art Psychotherapy)
	C12236	3	상담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s in Counseling)
	C12237	3	상담사례실습(Counseling Practicum)
	C12240	3	상담실습및슈퍼비전 (Counseling Practice & Supervision)
	C12241	3	신경심리평가(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3. 교과목 해설

▣ 보건행정학전공

구분	과목번호	과목명 교과목 해설
논문연구	C12001	논문연구(Research for Master's Thesis) 석사학위 논문작성에 필요한 절차를 익히고,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한다.
연구보고	C12002	특수연구(Special Research)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여 논문형식의 Report를 작성함으로써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획득함은 물론 논문작성 방법을 배워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도록 한다.
전공필수	C12311	보건학개론(Introduction to Public Health) 건강과 질병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정, 건강의 결정요인, 질병 발생과정, 질병의 예방대책, 공중보건학의 정의와 개념, 지역사회의학의 개념과 일차보건의료 접근법을 고찰하고, 건강과 보건의료의 이용에 관련된 문화적 요인, 그리고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의 유형과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있다.
	C12312	보건행정학(Public Health Administration) 보건의료 행정을 위한 기초과정으로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행정과정과 정책결정에 대한 이론 등을 이해하고, 보건행정의 의의, 보건행정의 방법, 보건의료체계의 개관, 보건의료와 정부의 역할, 보건의료와 법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보건행정학에 대한 능력을 배양한다.
전공선택	C12321	보건역학개론(Epidemiology in Health) 역학이란 보건학 연구의 근간이 되는 인과론을 다루는 것으로 연구방법론과 통계학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질병의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는 과목이다.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각종 건강관련 정보의 해석 및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는데 있다.
	C12322	보건통계학(Biostatistics) 보건학 연구에 있어서의 통계학의 기초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통계학에서 필요한 주요 개념을 학습한다. 실습을 통한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및 평가하는데 필요한 통계 기법을 습득케 하고, 보건분야의 연구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통계학의 기초적인 이론과 응용을 다룬다.
	C12323	보건정책론(Health Policy) 보건정책의 대안탐색, 의사결정 평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보건정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보건정책에 관한 다양한 현안과제를 학습하고, 심층적 이해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구분	과목번호	과목명 교과목 해설
전공선택	C12325	보건기획론(Health Planning) 보건사업기획에 대한 이론과 방법론을 이해시킴으로써 보건사업에 대한 기획 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기획의 의의, 이론, 방법, 과정, 기법 등을 학습하고, 보건사업에 대한 의료 행정을 위한 기초로 실제 보건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한다.
	C12327	비교의료제도론 (Medical Care System International Perspective)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의료제도를 체계적으로 비교연구 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응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C12328	지역사회보건학(Community Health Science) 지역사회보건의 개념과 실천방향, 지역사회 접근전략, 의사소통 기술, 지역사회 진단방법, 보건계획의 수립과 보건사업의 평가방법을 고찰하고 지역사회 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개발과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성을 고찰한다.
	C12329	보건사회학(Health Sociology)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에서 사회적 역할수행 극대화과 자아만족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어 보건의료문제는 생의학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사회적 접근시각으로 문제 파악 및 해결 능력을 함양하게 한다. 상담에 관한 다양한 이론, 즉 정신분석, 인간중심, 형태치료, 행동치료 등에 대해 학습한다.
	C12330	보건조직관리론(Health Organizational Management) 일반 조직이론을 기초로 하여 보건조직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을 이해하고, 보건조직에 있어서 개인과 집단행동의 이해, 변화, 전개 및 예측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실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있다.
	C12331	노인보건학(Geriatric Health Care) 정상적이 노화기전 및 고령화 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노인의 일상생활과 건강유지 방법, 노인병의 예방과 관리, 노인보건의문제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학습함으로써 노인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C12332	의료마케팅전략(Health Care Marketing Strategy) 마케팅 관리의 이론과 지식을 보건의료시장에 적용시켜 보건의료 시장의 효율적인 대외전략을 수립하고 이미지 관리, 고객응대, 의료기관의 장단기 마케팅전략 등을 실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구분	과목번호	과목명 교과목 해설
전공선택	C12333	병원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of Hospital) 병원의 재무관리에 대한 기본적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고, 병원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재무관리 능력 배양 및 효율적인 의사결정 제고를 위해 재무 분석적 과정을 실천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C12335	보건의료법(Public Health Law) 건강과 보건에 관련된 제법규의 기초적 지식과 해설, 개정 보건의료법의 소개 및 해석적 방법을 통하여 보건 관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키며 국민건강 향상과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
	C12337	보건간호관리학(Public Health Nursing Management) 가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주민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보건의료기관 및 관련조직의 관리와 행정의 개념 및 조직, 간호계획, 의사소통체계 및 인사처리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함양한다.
	C12338	병원경영학(Hospital Management) 과학적 병원관리의 기초로서 경영학의 개념 및 이론적 지식과 실질적인 경영마인드를 함양시키고, 병원 조직 및 인적관리, 재무, 마케팅 등 병원경영의 이론과 기법을 교육함으로써 병원경영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C12339	보건의료의질관리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in Health Care) 보건의료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부터 의료의 질 측정과 보장활동의 효과성을 판단하고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C12340	보건정책동향(Health Policy Trends) 보건문제의 본질과 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국내외 최신 동향을 파악하여 보건정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기획할 수 있는 전문병원경영인으로서의 기획 능력을 향상시킨다.
	C12341	병원경영사례연구(Case study of Hospital Management) 실제 병원들의 구체적인 운영 및 경영사례를 연구 분석하여 현장감 있는 병원경영 능력을 함양한다.

▣ 사회복지행정학전공

구분	과목번호	과목명 교과목 해설
논문연구	C12001	논문연구(Research for Master's Thesis) 석사학위 논문작성에 필요한 절차를 익히고,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한다.
연구보고	C12002	특수연구(Special Research)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여 논문형식의 Report를 작성함으로써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획득함은 물론 논문작성 방법을 배워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도록 한다.
전공필수	C12111	인간행동과사회환경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다양한 요소와 이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을 체계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사회를 설명하는 제반이론을 학습한다.
	C12113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사회복지 조직과 환경에 대한 제 이론을 살펴보고, 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의 특징, 사회복지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전공선택	C12121	사회복지정책론(Social Welfare Policy)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내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준거틀을 알아보고, 그 분석틀에 의거해 현행 한국 사회복지정책과 그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C12123	사회복지실천론 (Theories and Methods for Social Work practice) 사회복지실천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과 개인과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모델에 관한 기초 지식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고찰한다.
	C12124	사회복지실천기술론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개인과 가족, 집단의 사회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숙지해야 하는 다양한 실천기술, 기법, 지침 등을 고찰한다.

구분	과목번호	과목명 교과목 해설
전공선택	C12125	사회복지조사론(Research Methods in Social Welfare) 과학과 과학적 방법, 사회과학 방법을 기본적으로 이해한 후에 사회복지조사의 일반적 절차인 조사문제 선정, 가설설정과 개념정의, 조사설계, 표집, 측정도구개발,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의 일반화에 따른 기본이론과 기법을 익힌다.
	C12127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 Practice) 지역사회 원조기술의 이론과 방법을 습득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분야를 고찰한다.
	C12136	사회보장론(Social Security)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장의 위치, 사회보장의 개념과 형태 및 변화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철학과 기본운영원리 등에 대해 파악하고, 사회보장제도가 국민경제, 고용구조 및 가족구조에 미치는 상호영향을 심층적으로 알아본다.
	C12144	복지국가론(Welfare State) 현대복지국가의 발달과정과 유형 및 복지국가의 가치실현 등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을 배우고, 나아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여 바람직한 복지국가의 개념을 정립하도록 한다.
	C12145	사회복지지도감독론(Social Work Supervision) 사회복지기관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권위를 갖춘 사회복지사로서 기관의 직원, 신입 사회복지사 또는 실습생을 현장에서 지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C12146	프로그램개발과평가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사회복지사들이 프로그램 기획, 운영, 평가 등과 관련된 내용을 연구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C12147	사회복지자료분석론(Date Analysis for Social Welfare) 오늘날 사회과학의 주요한 한가지 방법으로서 실증적 연구분석의 필요성이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 실증적 연구방법의 주요한 도구로써 계량적 조사방법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학은 응용과학의 한 분야로서 이론과 실천의 양면에 있어서 과학적 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 현상 및 문제들을 통계적으로 기술하고 분석 및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구분	과목번호	과목명 교과목 해설
전공선택	C12151	비영리조직의 이해 (Introduction to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조직의 역사와 이론적 배경, 관련 개념 등을 학습하고 사회복지비영리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 대해 이해한다.
	C12152	비영리조직마케팅및홍보 (Marketing & Public Relations for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조직의 과업달성과 자원개발을 위해 필요한 마케팅 이론 및 기술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을 모색한다.
	C12153	사회복지인적자원관리론(Human Resources Management) 사회복지조직의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전시키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노동력의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관리, 훈련, 승진, 이직 및 징계방침, 임금관리, 후생 및 복리, 건강 및 안전, 노사관계, 그리고 인간관계 등을 학습한다.
	C12154	사회복지시설운영론 (Human Service Organization Management) 사회복지시설의 개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업무전반 및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익히며 궁극적으로는 복지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도록 학습한다.
	C12155	시민사회와NGO(Civil Society & NGO) 시민사회의 제 이론을 검토하고, 한국 시민사회의 전개과정과 한국 NGO의 성장과 분화, NGO의 유형과 정치사회적 쟁점을 다룬다. 교과내용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NGO 활동영역과 쟁점을 조사해본다.
	C12156	사회적경제와협동조합(Social Economy and Cooperative)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C12157	사회서비스론(Social Services) 사회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사회서비스의 개념, 가치, 영역, 특성, 품질관리, 성과관리, 바우처, 이용자관리,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통합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현행 사회서비스정책 및 제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구분	과목번호	과목명 교과목 해설
전공선택	C12158	<p>사례관리론(Case Management)</p> <p>다양한 사례관리 이론과 실천기법을 살펴보고,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근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사례관리자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한다.</p>
	C12159	<p>사회복지윤리와철학(Social Work Values and Ethics)</p> <p>실천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과 윤리관에 대해 연구하며, 또한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 갈등 상황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직·간접으로 개입할 때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 논점에 관해 논의하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자신들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p>
	C12160	<p>아동복지연구(Research on Child Welfare)</p> <p>아동복지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이해, 아동복지의 역사, 정책과 제도, 실천대상과 관련서비스, 실천방법과 기술 등을 고찰한다.</p>
	C12161	<p>노인복지연구 (Research on 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p> <p>노화에 따른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요인의 변화와 노인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근거한 노인복지 정책 프로그램과 실천기술을 개괄적으로 연구한다.</p>
	C12162	<p>장애인복지연구 (Research on Social Welfare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p> <p>장애에 접근하는 시각을 포함한 가치와 이념에 대한 이해, 장애문제에 대한 이해,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정책과 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고찰한다.</p>
	C12163	<p>가족복지연구(Research on Social Work with Families)</p> <p>가족구조, 가족관계, 가족의 기능, 가족의 생활주기, 가족 문제 등에 관해 학습하고 가족복지 정책과 서비스현황 등에 관하여 고찰한다.</p>
	C12164	<p>다문화사회복지연구 (Research on Multicultural Social Work Practice)</p> <p>다문화이론, 다문화수용성 및 문화적 역량, 다양성과 사회복지실천, 종족적·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다룸으로써 다양한 소수자집단의 문제에 대한 개입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다문화사회복지 실천가에게 필요한 문화적 역량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다문화집단에 민감한 개입 전략과 기술을 습득한다.</p>

▣ 상담심리치료학전공

구분	과목번호	과목명 교과목 해설
논문연구	C12001	논문연구(Research for Master's Thesis) 석사학위 논문작성에 필요한 절차를 익히고,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한다.
연구보고	C12002	특수연구(Special Research)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여 논문형식의 Report 를 작성함으로써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획득함은 물론 논문작성 방법을 배워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도록 한다.
전공필수	C12211	발달심리학(Developmental psychology) Freud, Erikson, Piaget 등의 발달이론을 중심으로 아동기 정서 및 인지 발달과정을 이해한다. 대뇌의 생물학적 발생과 언어발달, EQ와 관련된 기질발달, 전생애에 걸친 애착관계의 발달을 알아본다.
	C12212	상담심리학(Counselling psychology) 상담에 관한 다양한 이론, 즉 정신분석, 인간중심, 형태치료, 행동치료 등에 대해 학습한다.
전공선택	C12221	이상심리학(Abnormal psychology) 정신이상을 이해하는 이론적 관점, 즉 생물과정, 학습과정, 발달과정, 인지과정 등이 어떻게 이상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지를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이상행동을 분류하는 기준을 학습한다.
	C12222	성격심리학(Personality) 성격 형성 과정을 발달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성격 형성의 생물학적 동인과 사회적 영향을 이해한다. 나아가, 성격의 구성요인에 따른 제 이론을 공부한다.
	C12223	정신병리학(Psychopathology) DSM-5에 분류되어 있는 정신병리의 진단과 원인, 특성 등을 탐구한다.
	C12224	심리측정 평가(Psychological Assessment and Evaluation) 심리측정과 평가방법에 대한 기초적 이론과 지식을 학습하고 다양한 측정도구의 검사법을 익히는 실제 경험을 통해 임상장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검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C12225	인지발달중재(Cognitive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아동·청소년·노년기 전 생애에 걸친 인지발달능력을 진단 평가하여 인지 교육 및 발달 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C12226	인지행동치료(Cognitive-behavioral therapy) 학습이론과 인지치료 이론 중 Ellis, Beck, Seligman 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또한 학습에 근거한 행동수정이론과 인지적 사고방식 변화가 어떻게 행동 변화를 초래하는지 학습한다.

구분	과목번호	과목명 교과목 해설
전공선택	C12227	모래놀이치료(Sandplay Therapy) 모래놀이치료의 이론과 실습, 사례연구를 통해 모래놀이 치료를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C12228	해결중심치료(Solution Focused Brief Therapy) 해결중심 단기치료의 이론학습과 임상사례분석을 통해 다양한 문제에 따른 접근전략과 기술적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C12229	가족치료(Family Therapy) 가족치료의 일반적인 이론을 학습하는 동시에 문체가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가족치료를 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C12230	아동심리치료(Theories and Practice of Child Psychotherapy) 아동심리치료의 기본문제, 아동의 심리치료기법과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을 살펴본다.
	C12231	부모상담(Parent Counseling) 임상장면에서 실제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과정 및 실질적인 상담기술을 습득한다.
	C12232	집단상담(Theory and Practice of Group Therapy) 집단상담의 개념을 익히고 실습을 통해 심리치료사로서 역량을 향상시킨다.
	C12233	청소년상담(Adolescent Counseling) 청소년에 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상담의 다양한 측면을 임상적 관점에서 심리치료의 실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한다.
	C12235	집단미술치료(Group Art Psychotherapy) 집단 상담과정에 미술매체를 활용하여 집단구성원을 치료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집단의 특성이나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미술매체를 학습하여, 집단상담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이끌어 가는 방안을 연구한다.
	C12236	상담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s in Counseling) 연구 및 논문 작성에 필요한 기초적 통계처리방법과 그 해석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기초 통계학과 조사방법의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통계패키지(SPSS)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익힌다.
	C12237	상담사례실습(Counseling Practicum) 상담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며, 상담 슈퍼비전 등을 통해서 상담 실무를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한다.
	C12240	상담실습 및 슈퍼비전(Counseling Supervision) 학생 개인별로 실습을 실시하여 상담 전문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C12241	신경심리평가(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뇌의 기능 이상에 따른 인지, 행동의 변화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을 학습한다.

V. 학위논문 작성 지침

1. 연구내용
2. 표현 및 구성
3. 논문의 체제
4. 논문내용 작성상의 유의사항
5. 인용 및 참고문헌 기재시 유의사항
6. 논문의 표지 및 초록 작성 예시

1. 연구내용

석사학위논문은 독립된 연구내용이어야 하며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2. 표현 및 구성

학위논문의 내용은 간결·정확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3. 논문의 체제

가. 논문의 규격

- (1) 4·6배판(190mm×260mm)
- (2) 지질 : 70 g/m² 이상의 모조지로 한다.

나. 논문의 편집 및 인쇄

- (1) 표지 : 소프트카바(회색 레자크 200g/m²)
- (2) 논문은 워드프로세서(전산)로 편집하여 양면 인쇄한다.
- (3) 본문의 편집규격 : 130mm×200mm(A4용지 기준 여백설정은 다음과 같다)
 - (가) 상·하여백 : 각 38mm
 - (나) 좌·우여백 : 각 40mm
 - (다) 머리말여백 : 11mm
 - (라) 꼬리말여백 : 11mm
- (4) 활자의 크기 및 줄간격은 다음과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가) 대 타이틀(서론, 본론, 결론) : 16p
 - (나) 중 타이틀(각 절 제목) : 12p
 - (다) 본문내용 : 10.5p
 - (라) 각주 : 9p
 - (마) 줄간격 : 175%~185%
 - (바) 본문서체 : 한글은 휴먼명조 또는 신명조, 영어는 신명조, 한자는 신명세명조

(5) 페이지 부여

- (가) 제출 내표지 및 인준 내표지는 페이지를 부여하지 않음
- (나) 국문초록부터 본문목차, 표목차, 도목차, 용어/기호설명 등은 연속하여 로마숫자의 소문자(i, ii, iii, iv, v, ……)로 페이지를 부여하고, 본문부터 페이지(1, 2, 3, 4, 5, ……)를 다시 시작한다.

- (다) 전문 및 본문의 페이지 번호는 꼬리말여백(A4용지 기준)의 11mm로 하여 중앙정렬하고 번호의 좌·우에 보탬줄(dash)을 긋지 않는다.
- (6) 논문 인쇄시 제출내표지, 인준내표지, 국문초록, 영문초록 및 목차 등은 논문 규격에 맞게 재단한 후 제출하는 것이 용이함.

다. 내용 기재 순서

- (1) 앞표지(국문으로 작성시 : 별표1, 영문으로 작성시 : 별표2)
 - (2) 내표지(국문으로 작성시 : 별표3, 영문으로 작성시 : 별표4)
 - (3) 인준서(국문으로 작성시 : 별표5, 영문으로 작성시 : 별표6)
 - (4) 국문초록 : 2페이지 이내(별표7, 국·영문 공통사항)
 - (5) 본문목차(별표8)
목차의 구성은 계열별로 다양하므로 예시하기 어려우나 전체적으로는 서론, 본론, 결론의 순으로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 논리 정연해야 한다.
 - (6) 표목차(별표9)
 - (7) 그림목차(별표9)
 - (8) 용어/기호 설명*
 - (9) 본문
 - (10) 참고문헌
 - (11) 부록*
 - (12) 영문초록(Abstract)(별표10) : 분량은 2 페이지 이내로 하고,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논문 제목은 관사, 전치사 및 접속사는 소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 (13) 감사의 글*
- (*표시는 선택사항이며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등은 목차번호를 부여하지 말 것)

4. 논문내용 작성상의 유의사항

가. 용어

국문, 국·한문 혼용, 외국문 또는 그 혼용으로 한다. 다만, 국문 및 국·한문 혼용으로 논문을 작성할 경우에 외국어의 용어는 가급적 국문 또는 한문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문을 표기한다.

나. 논문제목

- (1) 논문제목은 간결하여야 하며 부제(subtitle)를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논문제목에 외국어로 된 용어를 쓸 경우 되도록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전문 용어인 경우는 원문대로 표기한다.
- (3) 논문제목에 “...에 관한 연구” 등의 표제를 쓸 때 「관한」, 「의한」, 「대한」 등은 모두 한글로 표기한다. 본문에서도 이와 같다.

다. 논문 목차

- (1) 논문 목차는 별지면에 인쇄해야 한다.
- (2) 목차의 번호는 장, 절의 순서에 따라 I, II, III, ..., 1, 2, 3, ..., 1), 2), 3), ..., ①, ②, ③, ...을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라. 표 및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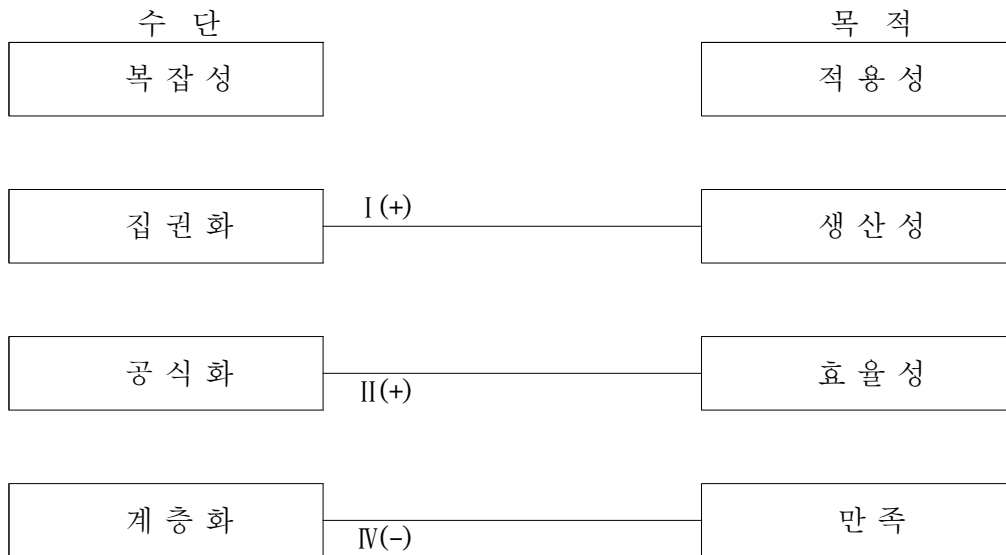
도표의 번호와 표제목 및 그림제목은 다음과 같이 일관성 있게 표기한다. 인용된 도표는 그 출처를 표나 그림의 하단에 부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표-2〉 Huberman의 세 가지 변화과정모형

연구개발모형	사회적 상호작용 모형	문제해결모형
1. 혁신이 창안 또는 발견 2. 개발 3. 생산 4. 보급	1. 혁신의 인식 2. 관심 3. 적절성의 평가 4. 시행 5. 채택	1. 필요로부터 문제의 도출 2. 문제의 진단 3. 정보의 획득 및 도출 4. 혁신안의 수정 5. 시행 6. 필요충족의 입장에서 시행 결과의 평가

자료 : Huberman et al., 1997, p. 52.



<그림-3> 조직수단과 목적과의 관계

자료 : Paula F. Silver,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oretical Perspectives on Practice and Research*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93), p. 26; 왕기향 외 역 (P. F. Silver 저), **교육행정**, 서울: 성원사, 1997, p. 38에서 재인용.

마. 초록 작성 방법

- (1) 국문초록은 본문목차 앞에 붙이고 영문초록은 참고문헌 뒤에 붙인다. 논문을 외국어로 쓸 경우에도 같다.
- (2)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별지 면에 따로 작성한다(별표7, 별표10)
- (3) 영어로 작성된 초록의 논문제목 중 관사, 전치사 및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는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5. 인용 및 참고문헌 기재시 유의사항

가. 본문에서의 참고 및 인용

“연구에서 사용된 저작물들을 저자와 연도별로 인용함으로써 본문 내용 전반에 대한 근거를 남겨야 한다. 이러한 인용 양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출처를 밝히고 논문의 끝부분에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수록된 참고문헌 목록에서 정보의 출처를 찾을 수 있게 한다.”

(1) 본문에서 자료 전체를 인용할 경우 저자와 연도만을 표기한다(예1).

그러나 부분인용의 경우 해당 쪽수를 기재한다(예2).

예1) 박병현(2003)은 사회복지정책을...

예2) McAllister(2002, pp. 439-455)는...

(2) 단독 저자의 연구가 하나만 인용되었을 경우의 표기: 국내 문헌의 경우 자료 출처에 있는 성명과 출판 연도를 그대로 본문 내에 기입한다. 국내 저자의 경우 저자의 이름이 논문 중에 나오면 저자의 성명을 쓰고 출판 연도는 성명 옆에 괄호로 묶어 표기한다. 서양 저자는 영어로 성만 표기하고 동양 저자의 이름이라도 영문으로 표기된 연구를 인용했을 경우 저자의 성만 표기한다.

예) 이남순(2006)은 아동들의 관심이 수업에 반영되었을 때, ...

예) Hoffman(1980)은 남성보다 여성이 도덕적 원리를...

(가) 인용 문헌을 괄호 안에 표기하기: 저자의 이름이 본문 중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인용할 내용의 문장을 끝낸 후 마침표를 찍기 전에 괄호 안에 완전한 저자명(단,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저자의 성(性)만)과 쉼표(.) 그리고 출판 연도를 제시한다.

예) ...라고 주장하였다(이남순, 2006).

예) 민감성은 이타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Damon, 1986).

(3) 여러 저자들이 수행한 연구를 인용했을 때의 표기

(가) 저자 두 명이 함께 수행한 공동연구를 본문에서 인용했을 때는 두 저자명을 ‘와(과)’ 로 연결하여 그 연구가 인용될 때마다 두 저자명을 모두 적는다(예 1). 그러나 본문 중에 저자명이 언급되지 않고 문장 끝에 괄호로 묶어 처리했을 때는 한국 문헌과 동양 문헌의 저자명은 쉼표로 구분하고, 서양 문헌의 경우는 ‘&’ 를 사용한다. 그리고 복수 연구물은 세미콜론(;)으로 서로 다른 연구임을 표기한다(예 2).

예1) 강영숙과 고윤주(1992)는...

Dobson과 White(2006)는...

예2) ...라고 주장하였다(강영숙, 고윤주, 1992; Dobson & White, 2006)

(나) 셋 이상 여섯 명 미만의 저자가 함께 수행한 공동연구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처음 인용할 때에만 모든 연구자의 성명을 표시한다.

예) [첫 인용 때는 저자명을 모두 쓴다]

김상희, 박성연, 이옥경(2006)의 연구에서는...
 ...을 분석한 연구(김상희, 박성연, 이옥경, 2006)에서는...
 Liben, Mandler, Nelson, 와 Norder(1997)등은...
 연구자들(Liben, Mandler, Nelson, & Norder, 1997)은...
 예) [같은 연구일 경우, 두 번째 인용될 때부터는 첫 저자명만 쓴다]
 김상희 등(2006)의 연구 결과...
 Colman 등(1997)은...

(다) 여섯 명 이상 공동 저자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처음 인용 때부터
 저자의 이름을 모두 표기하지 않고 첫 저자명만 쓰는데 첫 저자명 다
 음에 “등” 혹은 “외” 라고 쓴 후 출판 연도를 괄호로 묶어 표기한다.

(4) 저자가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본문 중에 저자명이 없이 기관이나 단체
 에서 행한 연구를 인용했을 때에는 기관명을 저자명으로 취급하고 완전
 한 기관명을 밝힌다.

예) [본문에서 처음 인용할 때]

최근 연구(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기원], 1996)에 의하면...
 외국의 연구(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 1997) 결과는...

[두 번째 인용부터 축약어를 사용할 때]

과기원(1996)의 연구 결과...

NIMH의 연구(1997) 결과에 의하면...

한국 연구(과기원, 1996)와 외국 연구(NIMH, 1997)의 결과를...

(5) 개인 서신: 개인 서신은 편지나 메모, 전화, 전자우편이나 전자 매체를 통
 한 대화가 인용의 출처일 경우를 말한다. 개인적 서신들은 재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서만 인용하고 참고문헌 목록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출처는 개인적 서신을 쓴 사람의 성명(영어
 표기의 경우 이름의 머리글자와 성)과 일시를 예시와 같이 기록한다.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로 보낸 E-mail도 개인 서신으로서 인용되어야 한다.

예) ...하였다(이희성, 1998, 4, 1, 개인서신).

예) ...주장이다(Nelson, 1993, 4, 18, personal communication).

(6) 출처의 특정부분: 출처 자료의 특정 부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적
 절한 부분에 페이지와, 장, 그림, 표 등을 삽입하고, 반드시 인용 출처에

해당하는 쪽수를 명시해야 한다.

예) (Cheek & Buss, 1981, p. 332)

예) (임준혁, 1997, p. 200)

- (7) **재인용:** 재인용은 다른 연구의 인용 방법과 같으나, 본문에 인용할 때는 원전(저자명과 출판년도)과 재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콜론(:)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예1). 저자명이 본문 중에 제시될 경우 원전의 출판 연도 뒤에 콜론을 한 후 재인용 출처의 저자명과 이 자료의 출판 연도를 적고 출판 연도에 이어 “에서 재인용” 이라고 표기한다(예2). 그리고 괄호 안에 원전 저자명과 출판 연도가 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전 저자명과 출판 연도는 생략하고 원전 출판 연도 뒤에 콜론을 하고 재인용 연구의 저자명과 출판 연도를 적고 “에서 재인용” 이라고 적는다(예3). 이를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할 때는 재인용 문헌만을 표기하면 된다.

예1) 이희성(1990: 권양희, 1998에서 재인용)은...

예2) ...을 제시하였다(Hoffman, 1979: 김경혜, 1991에서 재인용).

예3) ...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Maharish, 1951: Gordon, 1989에서 재인용).

- (8) **한 괄호 안에 두 편 이상의 연구를 인용했을 경우의 표기 순서**

- (가) 동일 저자의 연구: 동일인에 의한 연구가 두 편 이상 인용되었을 때는 출판 연도순으로(인쇄중인 것은 맨 끝에) 오래된 것부터 배열한다. 이때 저자명은 한 번만 기입하고 출판 연도까지 동일할 경우 제목의 가나다 순서로(영문의 경우는 알파벳 순서) 출판 연도 뒤에 소문자 a, b, c를 붙여 구분하여 제시한다(예 3). 그리고 참고문헌 목록도 같은 요령으로 수록한다.

예1) 선행 연구들(나영대, 김승기, 1992, 1999, 인쇄중)에서...

예2) 선행 연구들(Hill & Cochran, 1996, 1997, in press)에서...

예3) 최근 연구(천명기, 1999a, 1999b)에서는...

- (나) 동일인이 아닌 경우 : 한 괄호 안에 여러 저자들의 연구가 두 개 이상 표기될 때는 저자명의 가나다 순(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쓰고 연구와 연구 사이에는 세미콜론(;)을 찍어 연구들을 구분한다.

예) 여러 연구(장근영, 1998a, 1998b; 홍성기, 1999; Allen, 1981)에서는...

(9) **국내와 동서양 문헌이 모두 포함될 경우:** 국내 문헌, 동양 문헌(국가명의 알파벳 순서), 서양 문헌의 저자순으로 나열한다.

예) 여러 연구들(장시철, 2000; 한가람, 1994; Elkind, 1991; Mussen, 1995) 등에서...

나. 참고문헌 목록 작성

(1) 일반적인 원칙

- (가)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한국, 중국, 일본, 서양 서적 순으로 열거한다.
- (나) 저자의 이름은 저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어로 된 이름은 성(surname)을 먼저 표기하고, 이름은 첫 글자(initial)만 표기한다.
- (다) 책명은 국문의 경우에는 진하게, 영문의 경우에는 이탤릭(Italic)체로 한다.
예) 이종성(1986). **일반화가능도이론**. 서울: 세광출판사.
예) Kolb, L. C.(1985). *Modern clinical psychiatry*.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라) 영문 참고문헌 작성시, 단행본이나 논문의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쓴다. 단,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 (마) 참고문헌은 저자 및 출판년도, 책이름, 출판 지역 및 출판사 순서로 쓰고, 이들 사이에 마침표(.)를 찍고 1칸씩 댄다.
- (바) 영문 참고문헌 작성시, 저자, 출판 지역 및 출판사는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 (사) 영문 참고문헌 작성시, 출판 지역은 잘 알려진 도시는 도시명만,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는 도시명과 주(또는 국가) 이름을 같이 표기한다.

(2) 단행본의 경우

- (가) 저자가 1인인 경우
예) 김성태(1994). **발달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예) Atkinson. J. W.(1964). *An introduction to motivation*. Princeton. NJ: Van Nostrand.
- (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표기하되, 영문으로 된 참고문헌에서는 가장 마지막 저자 앞에 ‘&’ 기호를 넣는다.

- 예) 한범숙, 윤미란, 이경민(1994).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예)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예) Coltheart, M., Curtis, B., & Lyon, S. (1996). *Obesity* (2nd ed.). New York: McGraw-Hill Companies, Inc.
- (다) 편집한 서적인 경우
- 예) 이정환, 남주성(편) (1996). **질적연구의 이해**. 서울: 미래출판사.
- 예) Schubert, W. H., & Ayers, W. C. (Eds.). (1992). *Minimal brain dysfunction in children*. New York: Longman.
- (라) 재판(再版) 이상인 경우
- 예) 이정환, 남주성(1996). **질적연구의 이해** (2판). 서울: 미래출판사.
- 예) Levine, D. U., & Havighurst, R. J. (1995). *Society and education* (8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마) 번역서인 경우
- 예) Crane, W. C.(1983). **발달의 이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원전은 1963년에 출판).
- 예) Sartre, J. P.(1958). *Being and nothingness*. (H. E. Barnes, Trans.).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Original work published 1943).
- (바) 저자 또는 편집자가 없는 경우
- 예) 백석대학교 교육연구소(1998).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천안: 백석대학교.
- 예)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th ed.). Washington, DC.
- (사) 학술대회 등의 발표 자료용으로 만들어졌으나 출판되지 않았을 경우, 학술발표 연월일과 장소를 기입하고 ‘미간행’임을 표기한다.
- 예) 이건우(2000). 대중가요의 검열과 세대갈등: 세기말의 힙합문화를 중심으로. 심포지움 대중문화의 시대 발표논문. 3월 8일. 서울: 세종 문화회관. 미간행.

(3) 정기간행물인 경우

- (가) 정기 학술지에 나온 논문인 경우
- 1) 학술지 및 권(volume)은 국문의 경우 진하게, 영문의 경우 이탤릭체로 한다.

- 2) 쪽의 범위를 나타낼 때에는 쪽을 나타내는 기호인 ‘pp.’ 를 쓰지 않는다.
 예) 황윤한(1995). 제6차 교육과정과 구성주의적 교육. **교육학 연구**, 33(1), 237-252.

Lapp, D., & Flood, J. (1994). Integrating the curriculum: First steps. *The Reading Teacher*, 47, 416-419.

- (나) 비학술지(잡지)에 실린 기고문, 논평, 논설, 칼럼(column)인 경우: 기고자(寄稿者)가 나타나 있는 경우는 기고자를 먼저 밝히고, 기고자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기고문 제목을 먼저 쓴다.

예) 김미연(2000. 12). 남해 기행. **새 벗**. 43-45.

예) Henry, W. A., III. (1990, April 9). Beyond the melting pot. *Time*, 135, 70-76.

- (다) 주간지, 일간지에 실린 기고문, 논평, 논설, 칼럼(column), 기사(記事)인 경우
 1) 기고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예) 출주는 대학입시. (1996. 3. 6.). **한국교육신문**, p. 2.

- 2) 기고자가 밝혀진 경우

예) 김철수. (2002. 8. 12). 제왕적 대통령은 헌법유린. **동아일보**. p. 6.

예) Henry, W. A., III. (1990, April 9). Beyond the melting pot. *Time*, 135, 70-76.

- ③ 잡지 같은 정기 간행물

예) 공선옥(1997, 가을). 내 생의 알리바이. **창작과 비평**, 82-137.

(4) 학위논문의 경우

예) 이진희(1997).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상황**. 미출판 박사학위 논문. 천안대학교 대학원, 천안.

예) Wiebe, M. J.(1994). *Implications of autistic symptomatology for congenital rubella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abama, Tuscaloosa, AL.

(5) 초록 문헌의 경우

예) 한덕웅, 이경성(1999). 대학생의 신체 질병을 예언하는데 관련된 요인들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초록집, pp. 190-193. 8월 19일.
 서울: 연세 대학교 제 2 인문관.

예) Woolf, N. J., Young, S. L. (1991). MAP-2 expression in cholinceptive

pyramidal cells of rodent cortex and hippocampus is altered by Pavlovian conditioning. *Society for Neuroscience Abstracts*, 17, 480.

(6) 재인용 자료들의 제시

예) [본문에서는]

김혜숙(1990: 김혜숙, 2001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참고문헌에서는 재인용 문헌만을 제시]

김혜숙(2001). 집단범주에 대한 신념과 호감도가 편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성편견, 인종편견과 한국인의 성편견, 지역편견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6.

(7) 전자 매체의 경우

예) Tanner, L. (2005, July 26). Pesticides may be sickening school kids. *The Washington Post*. Retrieved July 27, 2005, from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5/07/26/AR200507260127.html>

동아일보 (2014. 6. 13.). 노인학대 가해자 중 40% 이상이 아들.

<http://www.donga.com> 에서 2014년6월29일 인출.

다. 구두점

- (1) 전체적인 원칙 : 구두점의 주요 목적은 의미를 명료하게 하는데 있다.
- (2) 쉼표(, ; comma) : 세 개 혹은 그 이상의 관련성 있는 단어를 계속 쓸 때에는 “~, 그리고”, “~, 와(과)”, “~, 및”, 및 “~, 혹은” 등 앞의 단어들 사이에 쉼표를 사용한다.
- (3) 대시 기호(- ; dash) : 대시의 앞뒤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 (4) 감탄사(! ; exclamation) : 학술 논문에서는 가능한 한 피한다.
- (5) 콜론(: ; colon) : 콜론은 (:)만을 사용하고 (:)의 세미콜론은 사용하지 않는다. 콜론의 용도는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라. 숫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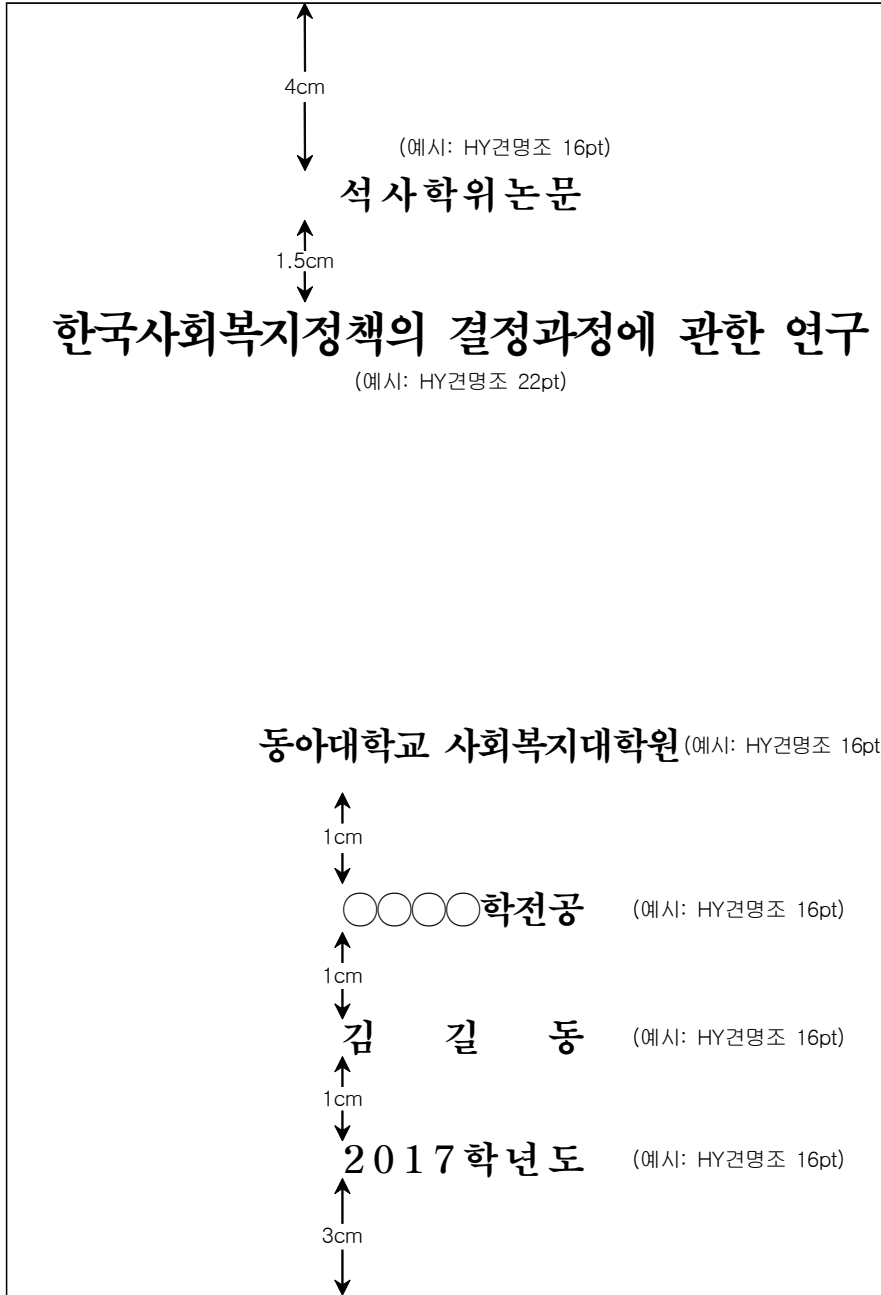
통계상 혹은 기술상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년대 등 그 밖에도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책의 권(卷), 장(章), 막(幕) 그리고 시의 편(篇; canto) 등은 로마 숫자로 표시한다.

마. 각주(脚註; footnote)

- (1) 각주는 본문에 표기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사용하되, 단순히 자료의 출처나 참고 문헌을 밝히는 각주의 사용은 금한다.
- (2) 각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의 위에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6. 논문의 표지 및 초록 작성 예시

별표 1. (국문)학위논문 앞표지 예시 : 4×6배판(190×26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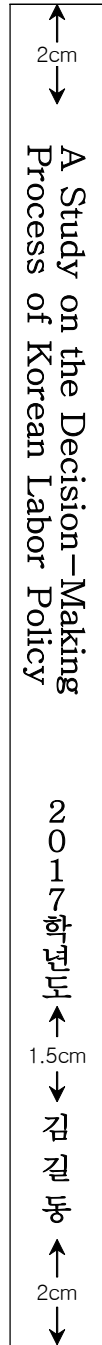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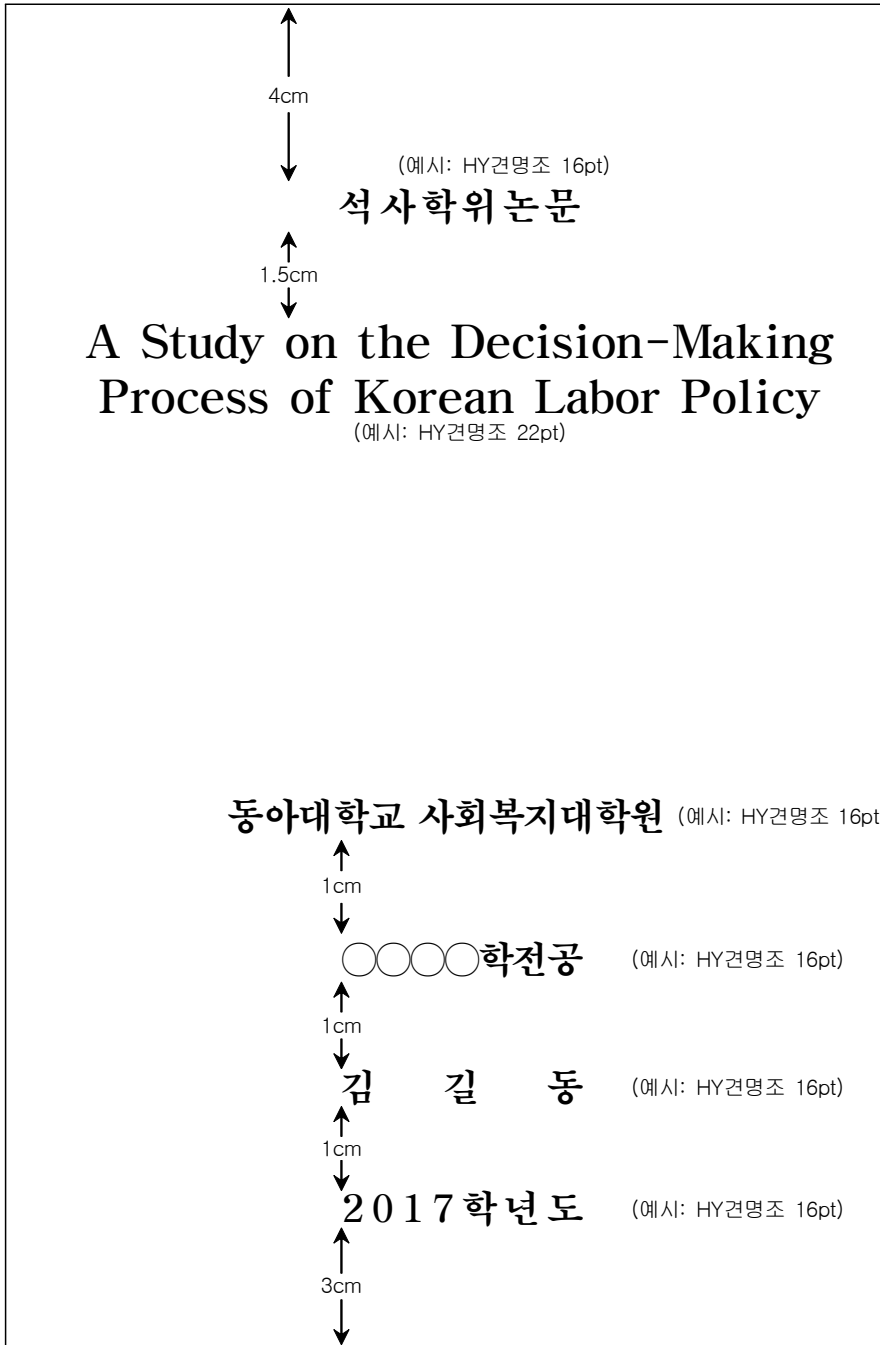
등표지 예시



- ※ 좌우배열은 중앙정렬, 글꼴과 글자크기는 예시 참고하여 적절하게 조정 가능함
- ※ 부제가 있을 경우 논문 제목 밑에 표기하고, 좌우양단에 보탬줄(dash)을 긋는다.
- ※ 소프트카바는 회색 레자크(200g/m²)로 한다.
- ※ A4용지로 편집시 상단의 4cm를 5cm로, 하단의 3cm를 5.7cm로 하여 인쇄시 논문의 규격(190×260mm)에 맞게 재단하여야 함.

별표 2. (영문)학위논문 앞표지 예시 : 4×6배판(190×26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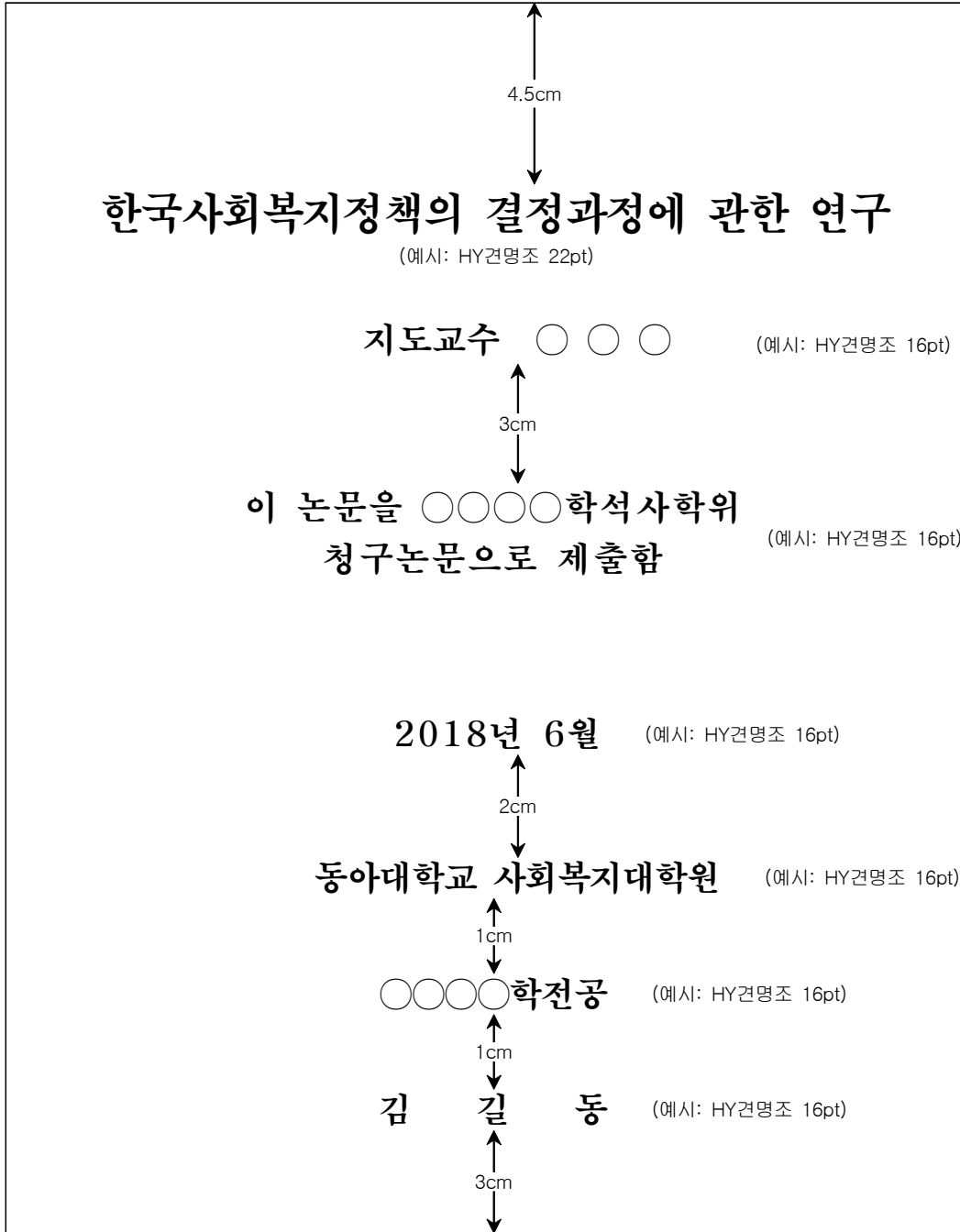
등표지 예시



(※글자크기는 적절하게 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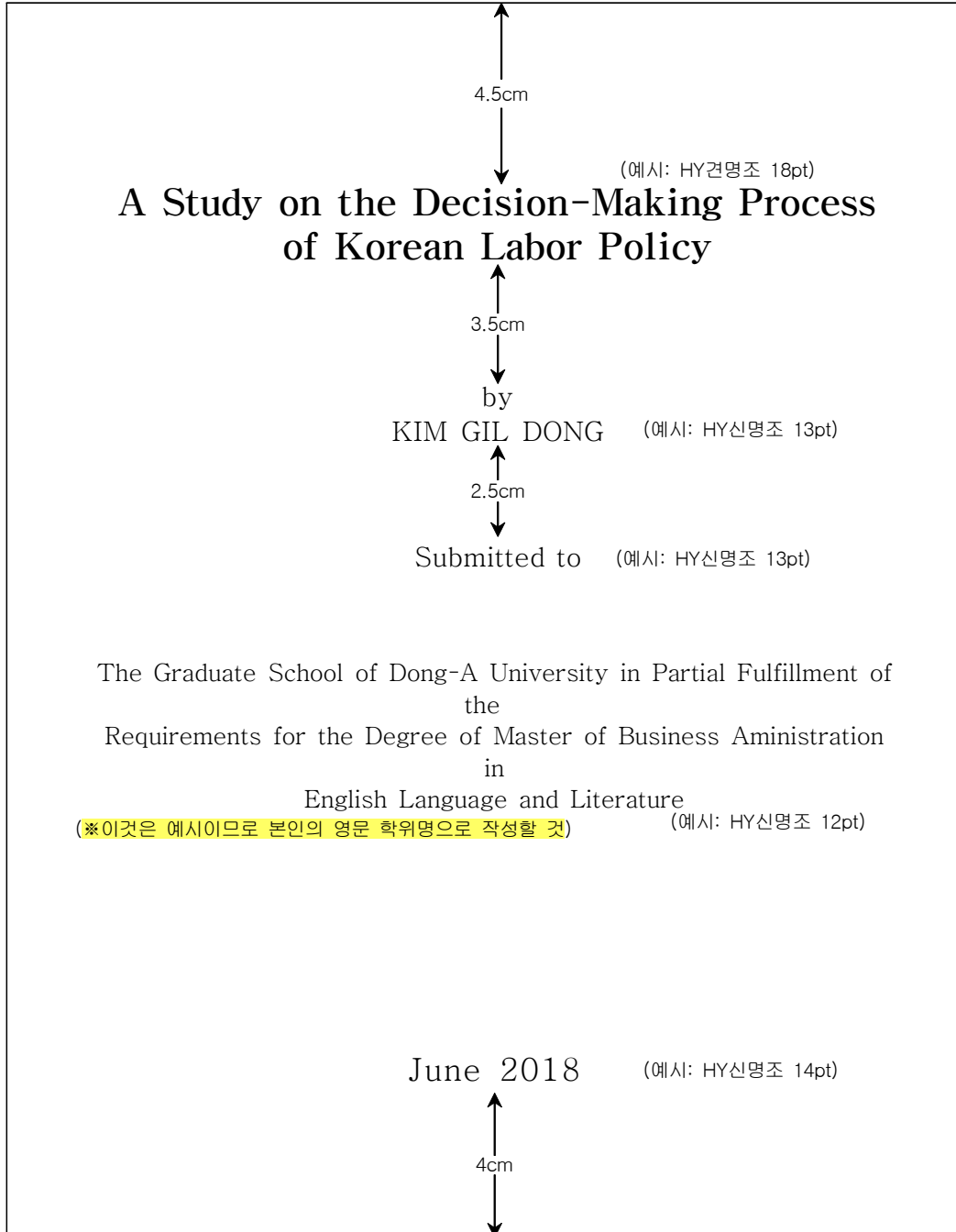
- ※ 좌우배열은 중앙정렬, 글꼴과 글자크기는 예시 참고하여 적절하게 조정 가능함
- ※ 부제가 있을 경우 논문 제목 밑에 표기하고, 좌우양단에 보탬줄(dash)을 긋는다.
- ※ 소프트카바는 회색 레자크(200g/m²)로 한다.
- ※ A4용지로 편집시 상단의 4cm를 5cm로, 하단의 3cm를 5.7cm로 하여 인쇄시 논문의 규격(190×260mm)에 맞게 재단하여야 함.

별표 3. (국문)학위논문 속표지 예시 : 4×6배판(190×26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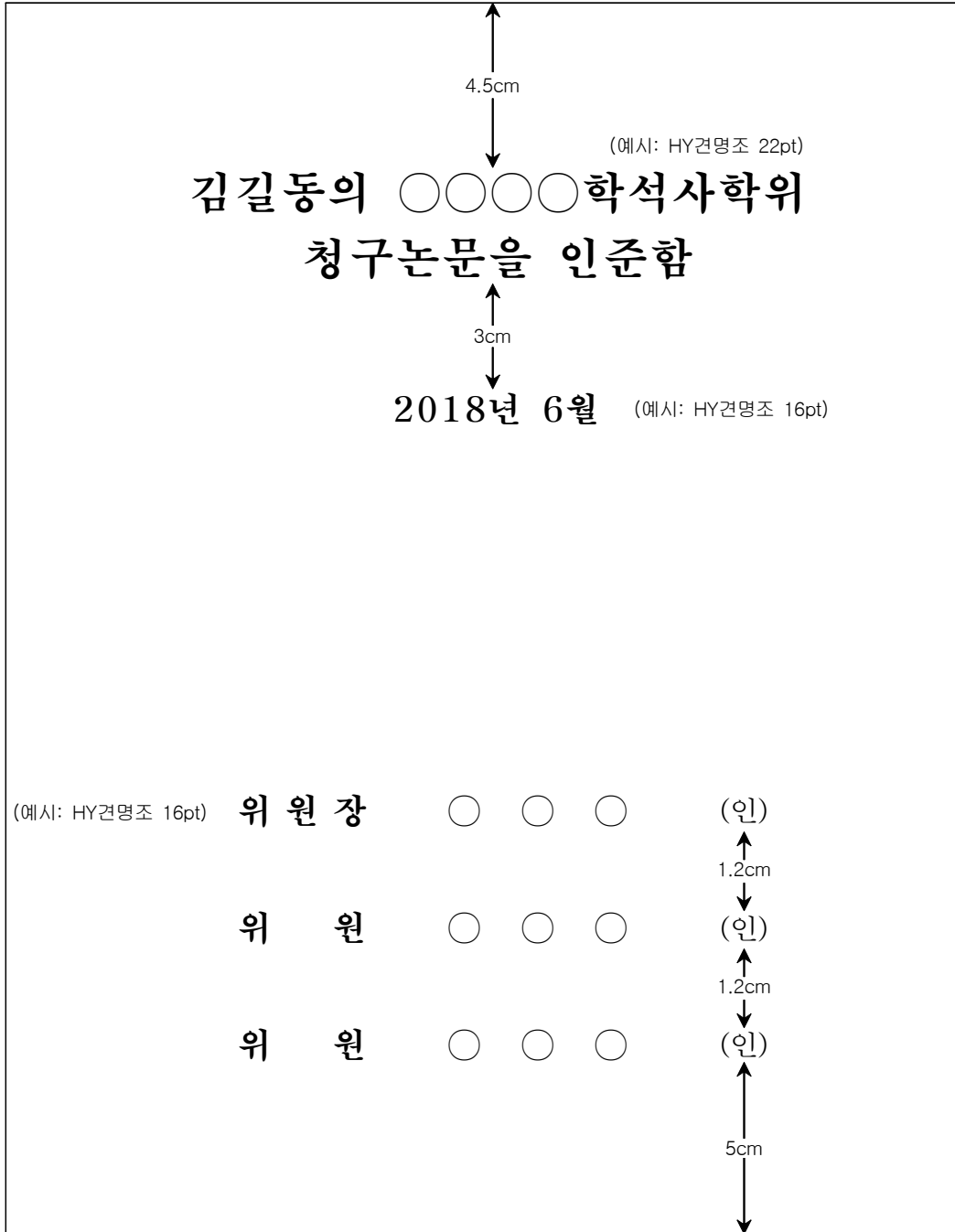
- ※ 좌우배열은 중앙정렬, 글꼴과 글자크기는 예시 참고하여 적절하게 조정 가능함
- ※ 부제가 있을 경우 논문 제목 밑에 표기하고, 좌우양단에 보탬줄(dash)을 긋는다.
- ※ A4용지로 편집시 상단의 4.5cm를 5.5cm로, 하단의 3cm를 5.7cm로 하여 인쇄시 논문의 규격(190×260mm)에 맞게 재단하여야 함.

별표 4. (영문)학위논문 속표지 예시 : 4×6배판(190×260mm)



- ※ 좌우배열은 중앙정렬, 글꼴과 글자크기는 예시 참고하여 적절하게 조정 가능함
- ※ 부제가 있을 경우 논문 제목 밑에 표기하고, 좌우양단에 보탬줄(dash)을 긋는다.
- ※ A4용지로 편집시 상단의 4.5cm를 5.5cm로, 하단의 4cm를 6.7cm로 하여 인쇄시 논문의 규격 (190×260mm)에 맞게 재단하여야 함.

별표 5. (국문)학위논문 인준서 예시 : 4×6배판(190×260mm)



- ※ 좌우배열은 중앙정렬, 글꼴과 글자크기는 예시 참고하여 적절하게 조정 가능함
- ※ A4용지로 편집시 상단의 4.5cm를 5.5cm로, 하단의 5cm를 7.7cm로 하여 인쇄시 논문의 규격 (190×260mm)에 맞게 재단하여야 함.

별표 6. (영문)학위논문 인준서 예시 : 4×6배판(190×260mm)

4.5cm

(예시: HY견명조 18pt)

A Study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Korean Labor Policy

1.5cm

(예시: HY신명조 12pt)

by KIM GIL DONG

I have examined the final copy of this dissertation for format and content and recommend that it be accep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with a major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이것은 예시이므로 본인의 영문 학위명으로 작성할 것)

Committee Chair Dr. ○ ○ ○

2cm

1cm

(예시: HY신명조 12pt)

We have read this dissertation(thesis) and recommend its acceptance :

Committee Member Dr. ○ ○ ○ (예시: HY신명조 12pt)

Committee Member Dr. ○ ○ ○

Committee Member Dr. ○ ○ ○

4cm

(생략가능)

Accepted for Graduate School

Dr. ○ ○ ○ Dean

※ 글꼴과 글자크기는 예시 참고하여 적절하게 조정 가능함

※ A4용지로 편집시 상단의 4.5cm를 5.5cm로, 하단의 4cm를 6.7cm로 하여 인쇄시 논문의 규격(190×260mm)에 맞게 재단하여야 함.

별표 7. 학술지 게재논문의 학위논문 작성 확인서 예시 (국문초록 앞 페이지에 삽입)

(예시: HY신명조 13pt)

본 학위 논문은 학위청구자가 주저자로 참여한 다음의 논문에 기초하여 작성 되었으며, 공동저자의 “학술지 게재 논문의 학위논문 작성 동의서” 를 득하였음.

- 1)
- 2) (두 개 이상인 경우 번호를 부여하여 명시)

- ※ 글꼴과 글자크기는 예시 참고하여 적절하게 조정 가능함
- ※ A4용지 기준 여백 설정: 논문 규격 190×260mm, 본문내용 규격 130×200mm 으로 편집할 경우, 상·하여백 각38mm, 좌·우여백 각40mm, 머리말 11mm, 꼬리말 11mm, 줄간격 175~185%
- ※ ‘학술지 게재논문의 학위논문 작성 동의서’를 논문 제출시 제출

별표 8. 학위논문 국문초록 예시 : 4×6배판(190×260mm)

↑ 3cm ↓ (예시: HY신명조,진하게 15pt)

← 3cm → **국문초록**

↑ 1.5cm ↓

한국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예시: HY신명조,진하게 18pt)

**A Study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Korean Labor Policy**
(예시: HY신명조 14pt)

○○○○학전공 김길동
지도교수 ○○○
(예시: HY중고딕 12pt)

(예시: HY신명조 11pt)
본 연구는.....

(※ 내용의 마지막에서 두 줄(Enter key 두 번) 띄우고, 주요어(Key Words) 10단어 내외 기재)

주요어: ○○○○○, ○○○○○○○, ○○○, ○○○○○, ○○○○○○○, ○○○○○○, ○○○○○, ○○○○, ○○○○○○, ○○○

- ※ 글꼴과 글자크기는 예시 참고하여 적절하게 조정 가능함
- ※ 초록분량 : 2페이지 이내
- ※ 부제가 있을 경우 논문 제목 밑에 표기하고, 좌우양단에 보탬줄(dash)을 긋는다.
- ※ 공동지도교수인 경우 지도교수 2인의 성명이 모두 논문에 있어야 함
- ※ A4용지 기준 여백 설정: 논문 규격 190×260mm, 본문내용 규격 130×200mm 으로 편집할 경우, 상·하여백 각38mm, 좌·우여백 각40mm, 머리말 11mm, 꼬리말 11mm, 줄간격 175~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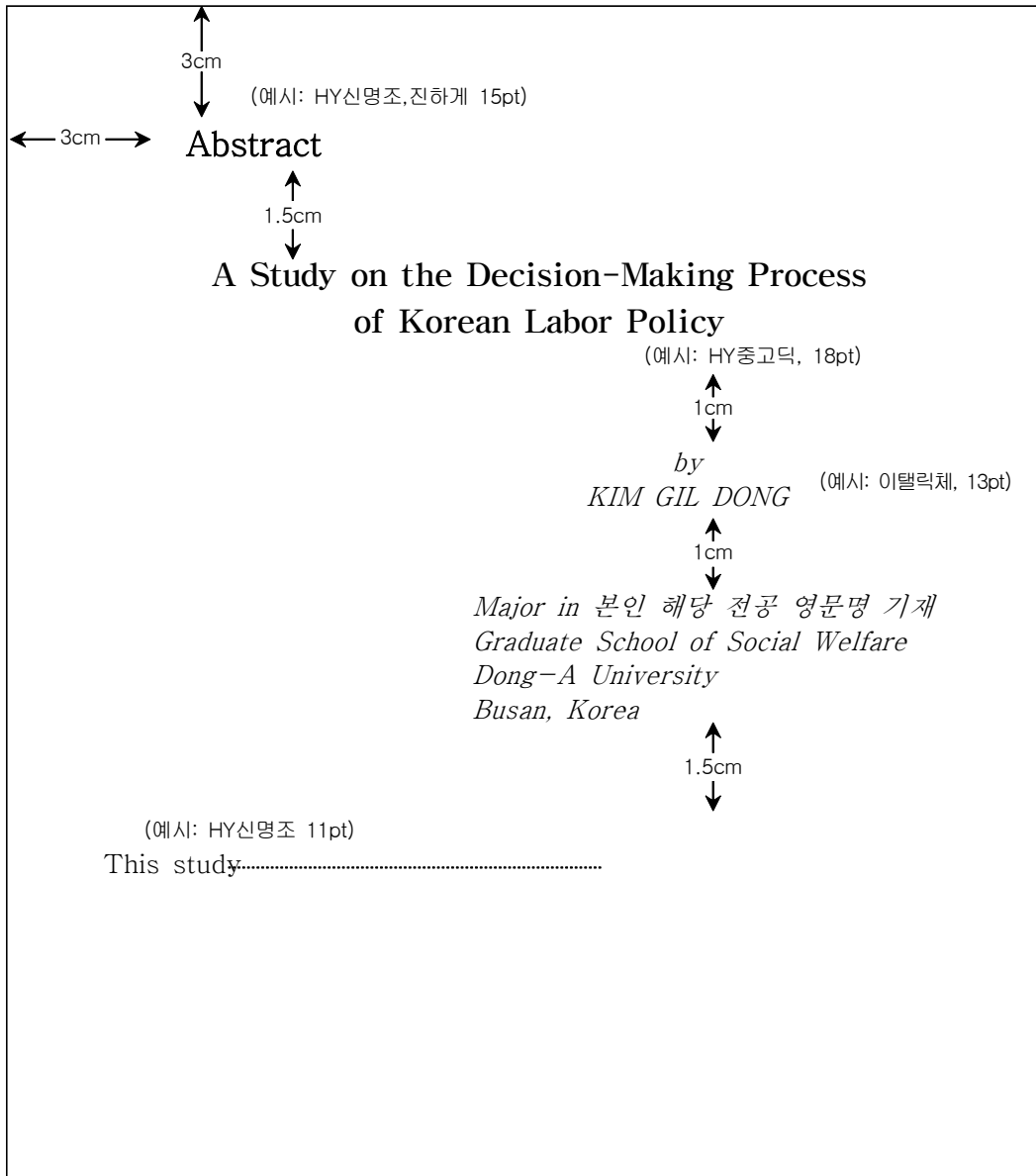
별표 10. 표(Table) 및 그림(Figure) 목차의 예시 : 4×6배판(190×260mm)

인문사회계열이나 자연계열 모두 본문에 사용된 表題나 圖題, Caption, Heading을 순서대로 나열함. 예를 들어, 본문에 Table 1 이라고 썼으면 Table List에도 Table 1 이라고 쓰고, 본문에 <표-1>로 썼으면 표목차에도 <표-1>로 쓴다. 그림(圖)목차에서도 이와 같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 ↑ 4cm ↓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List of Tables (예시: HY중고딕 16pt)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 ↑ 1.5cm ↓ </div> </div>	
Table 1. Distribution of experimental subject	페이지
Table 2. A flowchart of calculation algorithm	페이지
Table 3.	페이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 ↑ 4cm ↓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표 목 차 (예시: HY신명조, 진하게 16pt)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 ↑ 1.5cm ↓ </div> </div>	
<표-1> 피보험자의 분포	페이지
<표-2> 계산절차의 흐름	페이지
<표-3>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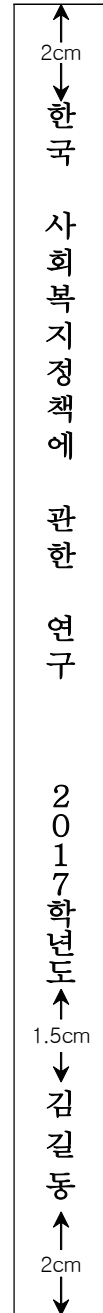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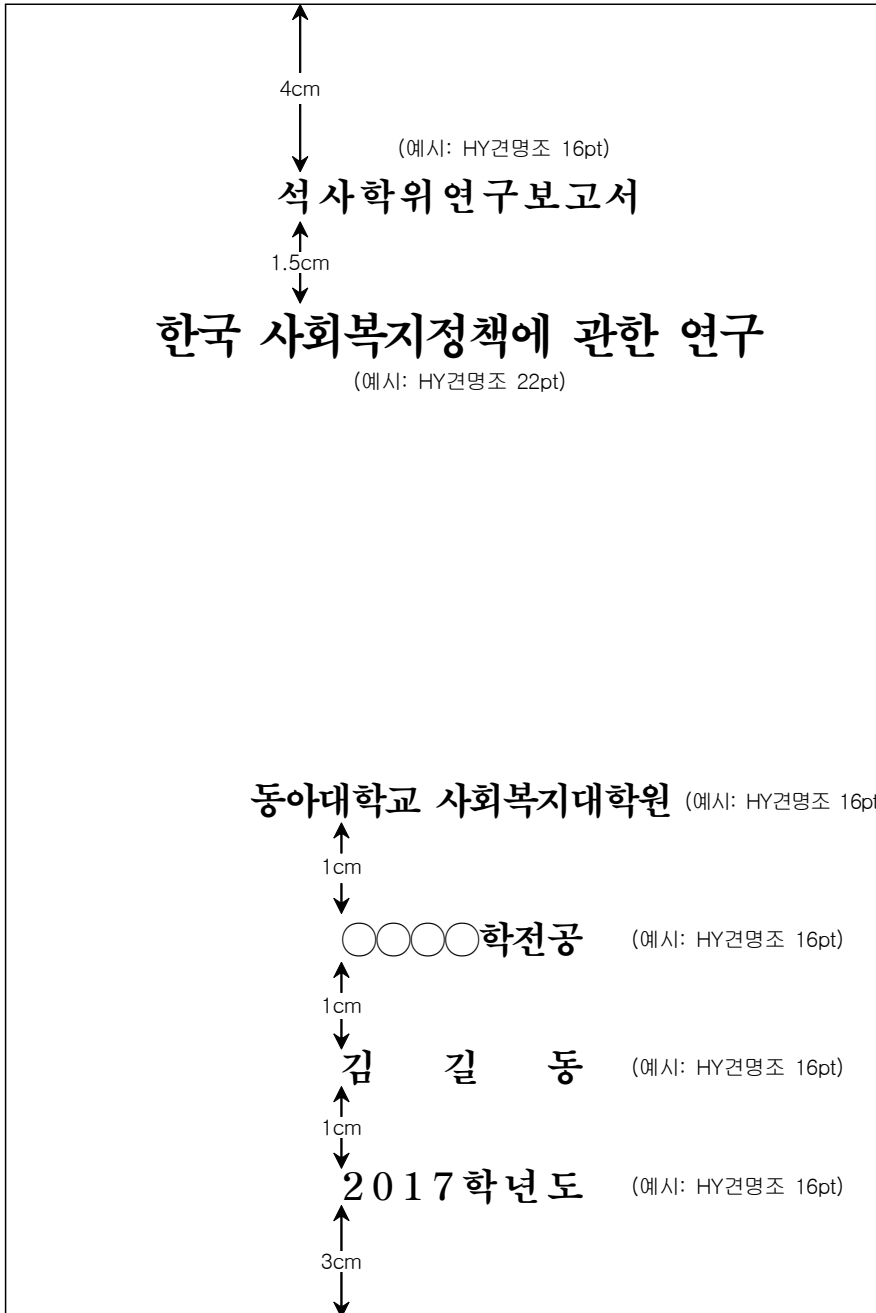
별표 11. 학위논문 영문초록 예시 : 4×6배판(190×260mm)



- ※ 글꼴과 글자크기는 예시 참고하여 적절하게 조정 가능함
- ※ 초록분량 : 2페이지 이내, 주요어는 기재하지 않음
- ※ 영문초록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함
- ※ 영문 성명 : 여권 발급시 사용하는 성명과 일치하도록 작성할 것
- ※ 영문 논문제목 : 관사, 전치사 및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는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 ※ 부제가 있을 경우 논문 제목 밑에 표기하고, 좌우양단에 보탬줄(dash)을 긋는다.
- ※ A4용지 기준 여백 설정: 논문 규격 190×260mm, 본문내용 규격 130×200mm 으로 편집할 경우, 상·하여백 각38mm, 좌·우여백 각40mm, 머리말 11mm, 꼬리말 11mm, 줄간격 175~185%
- ※ 보건행정학전공(Health Administration), 사회복지학전공(Social Welfare), 상담심리치료전공(Counseling & Psychotherapy),

별표 12. 연구보고서 앞표지 예시 : 4×6배판(190×26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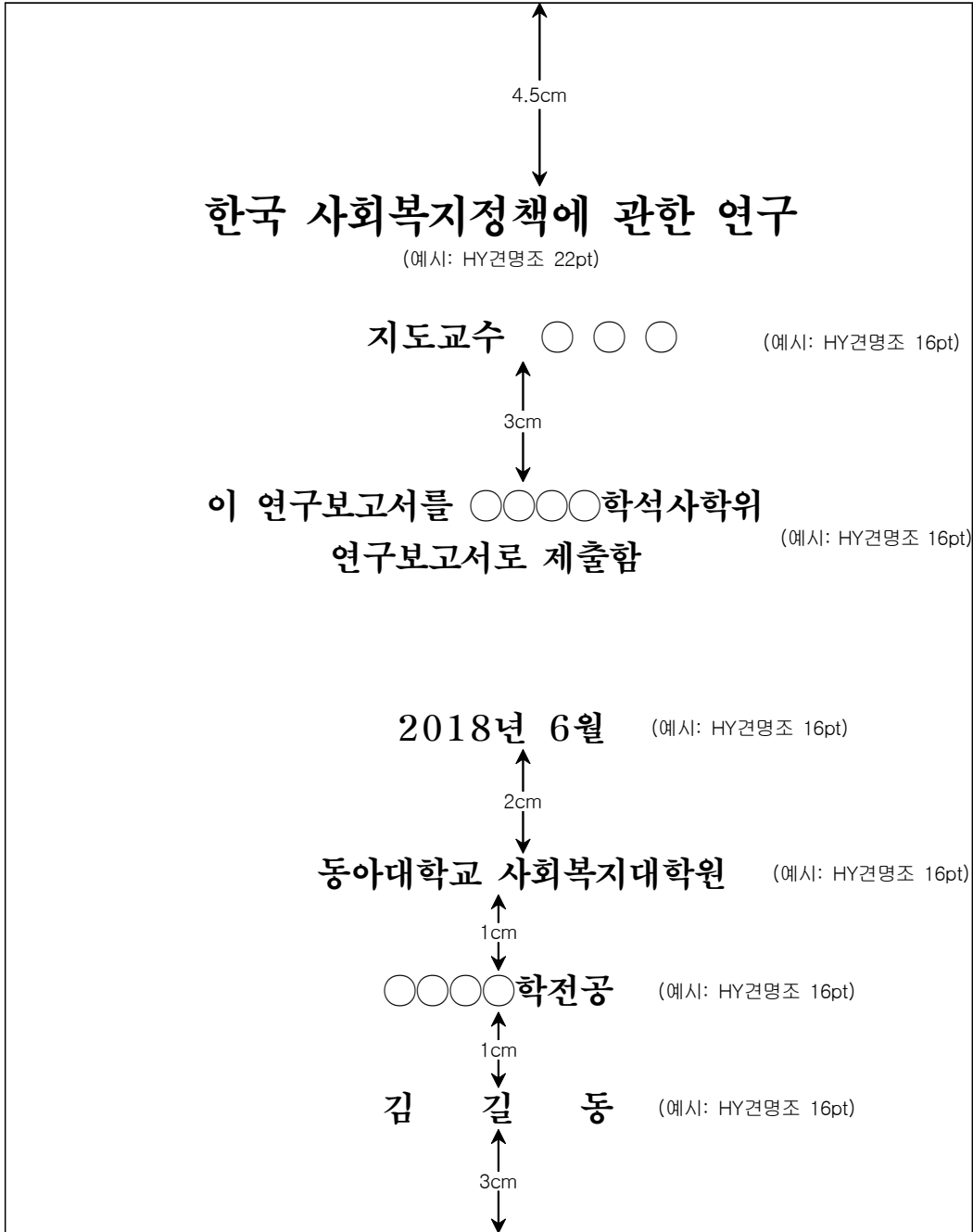
등표지 예시



(※글자크기는 적절하게 조정 가능)

- ※ 좌우배열은 중앙정렬, 글꼴과 글자크기는 예시 참고하여 적절하게 조정 가능함
- ※ 부제가 있을 경우 연구보고서 제목 밑에 표기하고, 좌우양단에 보탬줄(dash)을 긋는다.
- ※ 소프트카바는 회색 레자크(200g/m²)로 한다.
- ※ A4용지로 편집시 상단의 4cm를 5cm로, 하단의 3cm를 5.7cm로 하여 인쇄시 논문의 규격 (190×260mm)에 맞게 재단하여야 함.

별표 13. 연구보고서 속표지 예시 : 4×6배판(190×260mm)



- ※ 좌우배열은 중앙정렬, 글꼴과 글자크기는 예시 참고하여 적절하게 조정 가능함
- ※ 부제가 있을 경우 연구보고서 제목 밑에 표기하고, 좌우양단에 보탬줄(dash)을 긋는다.
- ※ A4용지로 편집시 상단의 4.5cm를 5.5cm로, 하단의 3cm를 5.7cm로 하여 인쇄시 논문의 규격 (190×260mm)에 맞게 재단하여야 함.
- ※ 지도교수 성명 옆에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인쇄본을 제출하여야 함.

Ⅵ. 부 록

1. 학위수여자 현황
2. 학과 및 전공 영문명

1. 학위수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지방 자치 행정	행정학	사회 복지	사회 복지학	사회 복지 학과	보건복지상담학과			계	
						보건 행정학	사회 복지학	상담심리 치료학		
1999년	8월	6	11						17	
2000년	2월	1	8						9	
	8월	2	5						7	
2001년	2월		5						5	
	8월	4		20					24	
2002년	2월	1		5					6	
	8월	4	1	30					35	
2003년	2월	2	1	3					6	
	8월	3		27					30	
2004년	2월			3					3	
	8월	1		30					31	
2005년	2월	1		3					4	
	8월	3		33					36	
2006년	2월			2					2	
	8월			34					34	
2007년	2월			1					1	
	8월				40				40	
2008년	2월				3				3	
	8월				37				37	
2009년	2월				4				4	
	8월				41				41	
2010년	2월				3				3	
	8월				44				44	
2011년	8월				44				44	
2012년	2월				2				2	
	8월				38				38	
2013년	2월				1				1	
	8월				48				48	
2014년	2월				1				1	
	8월				35				35	
2015년	8월				24				24	
2016년	8월					8	19	21	48	
2017년	8월					9	8	28	45	
2018년	2월						3		3	
계		23	5	31	191	365	17	30	49	711

2. 학과 및 전공 영문명

구 분	영 문 명
사 회 복 지 대 학 원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보 건 복 지 상 담 학 과	Department of Health, Social Welfare & Counseling
보 건 행 정 학 전 공	Health Administration
사 회 복 지 행 정 학 전 공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상 담 심 리 치 료 학 전 공	Counseling & Psychotherapy

※ 석사학위 청구논문 Abstract는 위의 영문명으로 정확히 작성해야 함.